

북한 주민 인권 실태 조사

200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8. 12.

수행기관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책임자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연구원	서보혁 (이화여대 평화학연구센터 연구위원)
	김갑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무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Contents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방법	4
II. 북한인권의 특성과 범위	5
1. 북한인권의 특성	5
2. 북한인권의 범위	9
III. 선행 실태조사 평가와 대안적 조사양식	12
1. 국내 문헌 분석	12
2. 해외 문헌 분석	33
3. 대안적 실태조사 양식	45
IV. 최근 북한인권 실태	51
1. 실태 I: 시민적·정치적 권리	54
2. 실태 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86
3. 실태 III: 생존권(식량권)	99
4. 실태 IV: 소수자 권리	105
V. 북한인권의 실태 변화와 그 요인	128
1. 실태 및 변화 추이	128
2. 북한 인권 변화 요인	137

VI. 결론: 최근 북한 인권 변화의 평가 및 전망 · 145

- 참고문헌 150
- 부록
 - [부록 1]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 설문지 153
 - [부록 2]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 설문 결과 161
 - [부록 3]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 178

□ 표목차

[표 3-1] 각 기관별 북한인권 보고서의 특징 46
[표 3-2] 대안적인 북한인권 조사양식 48
[표 4-1] 심층면접 대상자 신상명세 52
[표 4-2] 북한의 곡물 공급량 추이 100
[표 5-1] 최근 북한인권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139

□ 그림목차

[그림 4-1] 송환된 탈북자의 처리 절차 65
[그림 4-2] 온성보위부 구류장 내부 도면도 68
[그림 4-3] 온성보위부 구류장 내 조사실 도면도 69
[그림 5-1] 북한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8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냉전이 붕괴하면서 주권평등, 내정불간섭 등 냉전시대 국제관계의 행위규범이 퇴색하고 인권의 보편성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와 잔존 사회주의 및 권위주의 국가들의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식량난과 그로 인한 탈북자 발생으로 북한인권상황에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급증하는 탈북자 증언 등 북한 인권과 관련된 정보도 점차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확산과 관련 정보의 급증은 북한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촉진하였다. 통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과 좋은벗들,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각종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북한인권 상황이 외부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국제사회의 관심이 제고되었다. 그리고 국내의 각종 북한인권 실태 보고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 Amnesty International 등 국제인권기구들의 북한인권 개선 요구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 관련 실태조사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의 객관성에도 문제가 적지 않으며, 특정 인권 부분에 대한 편향적 연구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인권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연구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절대적 명제라고 할지라도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실태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북한 인권 연구의 진전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발전된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연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실태 보고서의 문제는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존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그 내용의 객관성과 조사내용의 편파성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객관적 사실과 사실 확인이 되지 않거나 직접 경험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어, 북한인권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를 힘들게 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실태보고서의 내용이 북한의 모든 인권 영역 혹은 북한 전역의 인권 실태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실태조사 결과를 북한의 인권상황 전체로 평가할 때 유추해석, 과잉평가의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존 북한인권 실태보고서의 문제의 일차적 원인은 연구대상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탈북자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기인하지만, 연구자(단체)의 인권관, 목적론적 연구 행태, 단순 연구방법의 문제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내용 및 방법을 포함한 기존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방법과 틀을 개선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북한인권 연구나 보고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인권의 변화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북한의 인권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3년 사이 발생한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의 다양한 차원가운데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과대한 관심을 갖거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가 있다는 것도 기존 연구나 보고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인권은 정치범 수용소 문제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북한인권에서 정치적 권리는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는 반면, 사회경제적 권리를 포함하여 여성권 등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한 분석이나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인권 실태 조사나 연구에서 부족한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인권이 발생한 원인이나 인권 상황 변화를 초래한 요인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취지가 실효적인 인권개선 방안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라면, 실태조사가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에 그치는 것은 제한적인 역할에 머물 우

려가 있다. 인권상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인권실태와 결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북한체제에 대한 선형적 판단 혹은 이념적 입장에 따라 북한 인권을 분석함으로써 비생산적 논쟁에 휘말려 북한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의 인권개선 방안을 만드는 것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인권상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은 물론 그에 대한 다층적 요인 분석까지 포함할 때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물론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둘러싼 요인은 시각에 따라 강조점이 다를 수 있으나 단선적 평가를 경계하고, 대내적/대외적 요인, 행위자/구조 요인, 역사적/현실적 요인 등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목적을 갖고 수행될 것이다.

첫째, 대안적 북한인권 실태조사 양식 개발이다.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비판적, 종합적 평가에 근거하여, 연구범위, 연구방법, 실태평가, 개선방안 등 네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연구의 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실태조사의 객관성, 타당성, 활용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최근 북한인권 실태 및 그 요인에 관한 포괄적 분석이다. 최근 북한인권 상황에 대하여 포괄적 관점을 유지하는 가운데 주요 분야에 대한 심층조사와 요인 분석을 결합하여 새로운 상황을 파악하는 의미와 함께 변화 추이를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북한인권 개선체계 수립의 토대 마련이다. 앞의 두 가지 연구목적을 달성하는 전제 하에, 북한인권을 개선하는 합리적, 포괄적 체계를 모색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개선 업무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탐구를 지향하고 있지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포괄적인 북한인권 상황보다는 최근 2~3년 동안의 북한 인권 상황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면접 대상자도 최근 북한을 탈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기존 문헌의 분석이다. 그 동안 이루어진 국내외, 정부·비정부기관, 전문가들의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 및 연구물을 대상으로 연구 범위, 연구 방법, 실태 평가, 개선 방안 등 네 측면으로 나눠 분석한 후 성과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실태 관련 정보의 객관성, 연구범위의 제한성, 연구방법상의 문제 등에 주목하여 대안적 실태조사 양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심층면접 방법이다. 최근 2년 이내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30명을 선정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인권 실태관련 면접을 진행하였다. 가능하면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고, 대상자 선정에서도 인권 침해를 체험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였다.

셋째, 설문조사의 활용이다. 최근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현재 하나원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때 사용한 질문지는 심층면접 시에 활용한 구조화된 질문지이다.

넷째, 전문가의 자문이다. 북한 인권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거나 경험하였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접 등을 시행하고 연구에 활용하였다.

II. 북한인권의 특성과 범위

북한인권의 특성과 범위를 논함에 있어서 이중적 논의 방식을 취할 것이다. 북한인권의 특성은 북한의 인권관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인권 인식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한계를 찾아볼 것이다. 반면에 북한인권의 범위는 국제인권규약을 적용하여 파악할 것이다. 여기에는 자유권, 사회권 규약을 기본으로 하고 생존권, 소수자 권리 등을 포함할 것이다. 북한인권의 특성과 범위를 이중적으로 논하는 것은 ▷행위자별 인권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권 실태는 공통된 객관적(혹은 간주관적) 준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고, ▷실질적 인권개선의 관점에서 볼 때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1. 북한인권의 특성

북한은 인권을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 평등의 권리”¹⁾ 혹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곧 사람의 자주적 권리”²⁾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에서 인권 정의가 주체사상이 확립되기 이전과 그 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1957년 출판물을 인용한 앞의 정의가 인권의 보편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한다면, 1992년 출판물을 인용한 뒤의 정의는 인권=자주적 권리로 하고 있어 주체사상 제일의 인권관인 자주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인권문제’를 “사람의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며 그것을 유린하는 행위와 투쟁할데 대한 문제”³⁾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p. 213.

2)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696.

북한의 인권관이 갖는 특징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 먼저, 계급적 시각이 크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인권의 역사가 계급투쟁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근대 시민혁명기에 유산계급이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은 봉건통치체제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투쟁에 근로인민대중을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강했고, 그렇지만 당시 인권 논의에서 ‘인간’은 “근로인민대중이 아니라 유산계급이었다”고 보고 있다.⁴⁾ 북한은 인권이 완전 보장되려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철폐 및 공적 소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는 자기의 당성을 숨기지 않은 것처럼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계급성을 숨기지 않는다.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 인권이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⁵⁾

둘째, 북한의 인권관은 집단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북한에서 집단주의가 널리 고취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북한에서 사람, 인민대중이라는 용어 자체가 집단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인민대중은 수령과 당과 ‘일심동체’를 이루고 수령과 당의 지도를 따를 때 ‘자주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집단주의가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이익 자체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⁶⁾

셋째, 북한은 기본권과 사회권을 중심으로 인권을 이해하고 있다. 북한은 기본권을 “그 누구도 침해, 유린, 훼손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것”⁷⁾으로 간주하면서,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노동에 대한 권리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 배우며 치료받을 권리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모든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국가에서 사회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가가 의식주, 보건, 교육 등 인민생활의 기본적 필요(basic needs)를 제공하는 것에 일차적 관심을 두고 있는 체제 특성 때문이다. 북한은 이를 인민적 권리와 자유의 실질적 보장, 물질적 조건 충족을 통한 인민의 행복추구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기본권 중에서도 생존권을 강조

3) 『국제법 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p. 582.

4)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인권옹호’의 반동성』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8-9.

5)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

6)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1993년 3월 1일),”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362.

7) 『국제법 사전』, p. 582.

8)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년 5월 5일),”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55.

하고 있는데 식량난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북한이 말하는 기본권은 위의 계급적 성격과 집단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⁹⁾

마지막으로, 북한은 인권을 국가주권과 결부시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국가의 자주권을 떠난 인권이란 있을 수 없다”, “국권을 잃은 나라 인민은 인권도 유린당하게 된다”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 북한의 국권론은 부시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을 배경으로 2003년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인권관과 대외적 긴장상태가 결합되어 나타났다고 하겠다. 소위 국권론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같은 주장은 북한이 유일지도체제, 나아가 사회주의제도의 유지를 전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하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소극적임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냉전시대 자유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 간의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진영은 인권보다는 국가주권을 우선시 해왔다.

이상 네 가지 북한에서 발견되는 인권관은 북한만의 독특한 인권관이 아니라 사회주의진영이 공통적으로 견지해온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주의진영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유기체론에 입각하여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아실현은 공동체의 목표달성 속에서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주의진영은 인권을 계급적 시각을 반영한 집단적 차원에서 파악한다. 인권보호도 “물질적 조건의 보장을 통한 실질적 평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각국의 인권증진에 있어서 대내적 조건과 특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¹¹⁾

한편, 북한의 인권관에서 사회주의진영 일반이 아니라 북한 특유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위계적 사회질서 및 관습이 그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 후반 들어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격상하고 그에 바탕으로 두고 김일성 중심의 유일지도체제가 확립되어 갔고, 그 결과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되고 그에 의해 1974년 ‘유일사상 10대원칙’이 발표되었다. 이로써 북한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사문화되고 획일적 집단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였다.¹²⁾ 이로써 북한 민중은 자신들의 사상은 물론 생활 전분야에 있어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수령과 당이 주는 시혜로 생존과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 왕조체제하의 군

9) 『주체의 사회주의 헌법 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p. 120-122.

10) 2003년 4월 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인권보고서에 대하여 “우리의 국권을 어찌보려는 가소로운 술책”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03년 4월 3일.

11) 장명봉, “북한의 헌법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편, 『북한인권법제연구』, pp. 63-69; 이장희, “Helsinki ‘인권’규정이 분단국가에 주는 의미,” 『통일문제연구』, 제1권 3호(1989), p. 45.

12) 유일사상체제 및 유일지도체제의 확립과정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1995), 3-5장을 참조.

주와 백성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가운데 북한 민중은 다같은 사회주의 인민이 아니라 핵심, 기본, 복잡군중으로 나눠 차별적 대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령에 대한 절대충성의 대가로 수령의 시혜로 받는 인정(認定)과 선물로 북한 민중의 생존과 사회생활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무는 적극적, 일차적 개념이고 권리는 의무에 파생하는 소극적, 이차적 개념이다. 이와 같은 국가-사회관계에서 북한 민중이 ‘인권’, ‘권리’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북한의 인권관에 영향을 준 북한 특유의 현상은 북한의 유일사상, 유일지도 체계만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고방식도 꼽을 수 있다. 이것은 북한에 사회주의적 평등관을 정착시키는데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북한 여성은 가정주부는 물론 아내, 혁명동지, 교양자라는 복수의 역할을 부여받아 왔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많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 노동으로 인식되지 않고, 가정과 사회에서 성적 불평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여성차별의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낳는 것이 가부장적 사고방식이다. 더욱 문제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수령-당-인민대중이라는 위계적 사회질서와 결합하여 북한 민중의 권리의식을 억압한다는 점이다.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경제난 그리고 대외적 고립이 동시 발생한 1990년대 들어 북한에서 등장한 ‘광폭정치(廣幅政治)’, ‘인덕정치(仁德政治)’라는 정치구호 역시 위계적,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김정일이 이민위천 사상을 좌우명으로 삼고 시작한 인덕정치, 광폭정치는 “이 세상에서 인권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 주는 정치”라고 주장하고 있다.¹³⁾ 이에 따라 기존의 계급차별정책이 완화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하였지만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보고는 아직 없다. 이는 북한이 체제위협에 직면하여 대중 통합 혹은 동원을 위해 강제의 방법이 한계에 이름에 따라 동의의 기제를 개발할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배경에서 김정일은 당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확립의 장애요소로 판단하고 그로 인해 이반된 민심을 회복하려는 취지에서 ‘인덕정치’라는 동의 기제를 제시하였다.¹⁴⁾ 이와 같은 인덕정치, 광폭정치 역시 국가 최고지도자가 판단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민중은 자신들의 의사와 참여는 배제된 체시혜의 대상이 되고 있다.

13)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 최의철,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 (서울: 백산자료원, 2001), p. 84에서 재인용.

14)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년 11월 1일),”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481-488.

사회주의 일반의 인권관이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진영의 인권관의 한계 극복을 천명하고 나온 진보적 측면이 있다면, 가부장적 사고를 포함한 위계적 성격의 인권관은 반동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일반의 인권관이 현실사회주의국가에서의 적용과정에서 왜곡과 일탈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북한에 잔존하는 반봉건적 측면의 인권관은 그 자체가 인권증진의 장애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 북한이 사회주의 인권관을 갖고 있고 국제인권규범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유용한 측면이다. 그것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구할 때 북한이 부정할 수 없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북한인권의 범위

본 조사에 포함할 북한인권의 범위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생존권, ▷소수자 인권 등 네 범주이다. 이는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연관성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북한인권 실태조사 중 부분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북한은 현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B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A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 비준한 상태이다.

첫째, 자유권은 오늘날 많은 서구사회에서 인권으로 등치될 정도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본권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자유권 규약은 생명권, 신체의 자유, 노예상태 및 강제노동 금지, 자의적 체포 및 구금 금지, 거주이전 및 주거 선택의 자유, 법앞의 평등한 대우, 형법의 소급 적용 금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그리고 사상·양심·종교·표현·집회·결사의 자유, 공무 참여와 선거 및 피선거권과 같은 참정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자유권은 사회권과 함께 국제인권의 양대축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자유권규약에 가입하였으나 동규약 제1, 2 선택의정서(개인통보제, 사형제 폐지)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조사에서는 이런 분야와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인권침해 분야(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 강제송환 등)에 주목할 것이다.

둘째, 자유권이 국가의 축소를 지향한다면, 사회권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국제관계에서 사회권은 주로 사회주의진영에 의해 강조되었지만 국제법적 장치는 자유권보다 약한 상태이다.¹⁵⁾ 사회권규약은 근로권, 노조 결성 및 가입의 권리, 사

회보장권, 건강권, 교육의 권리, 문화생활 영위 권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사회권도 북한이 관련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였으나, 저발전 상태와 편향된 정책적 관심 등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셋째, 본 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네 가지 북한인권 분야 중 생존권은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생존권은 북한 인권 중 가장 심각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전반을 악화시킨 주요 요소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생존권은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거나 그것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로 광의적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인간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할 권리로 좁혀 정의할 수도 있다. 북한과 같은 인권현실에서 생존권은 협의의 정의가 적절해보이고, 본문에서 다루는 식량권은 북한주민의 생존권을 대표할 수 있는 권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식량권은 북한주민의 전반적 인권에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시할 필요가 있다. 식량권 실태조사에는 북한당국의 주민통제, 식량 수급 및 분배 현황, 경제정책 등을 변수로 다루고, 시기별 비교를 통한 추이 분석과 생존권 실태가 자유권 및 사회권에 미친 영향 평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소수자 인권이란 여성, 아동, 이주노동자, 장애인, 소수민족 등 자유권이나 사회권 분야를 포함하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보는 집단적 성격의 인권을 말한다. 본 조사에서는 북한이 관련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아동권리, 여성차별 분야는 물론 장애인 등 기존 실태조사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소수자 인권도 포함할 것이다. 북한은 2003년 장애인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장애인권리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 북한은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아동의 무장분쟁 관여, 매춘 및 포르노그래피 관련 선택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에는 가입하였으나 동협약상의 통보제 관련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밖에도 자결권, 발전권, 문화적 유산의 존중, 환경권, 그리고 평화권 등 소위 3세대 인권 범주가 존재한다. 3세대 인권은 제3세계 약소국을 주요 행위자로 하는 집단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연대권이라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인권 논의에서도 3세대 인권을 포함하여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12월 밝힌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주민들

15) 물론 자유권과 사회권은 둘 다 세계인권규약 및 선택의정서(사회권은 의정서 초안)로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을 담고 있는 관련 국제법과 국제기구는 자유권쪽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태이다. 특히, 국제인권법이 국가, 계급 같은 집단보다는 개인 중심의 접근이 지배적이라는 점도 국제사회에서 서방의 개인주의적 자유권의 우세를 말해주고 있다.

의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의 저발전 상태, 군사적 긴장상태와 같이 북한인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발전권, 평화권을 논의하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두 권리는 각각 1986년, 1984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바 있다.

그러나 3세대 인권은 그 국제적 지위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무엇보다 3세대 인권 대부분이 기존의 자유권, 사회권 규약에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인권 분야로 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권리 영역이 추상적이고 권리의 주체와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 이들 권리가 현재 국제인권규약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현실도 권리로서 이들 인권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논의에서 3세대 인권은 별도의 인권 분야로 다루지 않고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Ⅲ. 선행 실태조사 평가와 대안적 조사양식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그동안 국내외 각 기관 혹은 연구자별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그 중 많은 조사결과가 공개되었다. 아래에서는 북한인권 실태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성을 갖고 조사해온 연구 및 활동 기관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연구 범위, ▷연구방법, ▷실태평가, ▷개선방안 등 네 측면에서 살펴보고 가능한 평가를 시도해볼 것이다. 이 작업은 대안적 북한인권 실태조사 양식을 개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국내 문헌 분석

1)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보고서¹⁶⁾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북한인권에 관한 최초의 실태조사를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바 있다. 『탈북자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라는 제하의 보고서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조사 내용이 거의 탈북자 증언에 의존한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조사라는 점에서 국회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탈북자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4).

(1) 연구범위

국가인권위의 위 보고서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범위를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 ▷경제적·사회적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 등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영역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다루고 있다.

탈북 과정에서의 인권에는 제3국(중국 등)에서의 인권,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이후의 인권, 정착국(한국)에서의 인권 등을 다루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권리에는 생존권, 경제활동권,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으로 나눈 후 ▷생존권에는 식량부족의 현황, 대량 아사자 실태, 아동의 생존권, 의료현황, ▷경제활동권에는 이동권, 경제활동 보장권, 생산물 소유권,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에는 신분차별, 직장 및 사회에서의 양성 평등, 가정에서의 여성 인권, 아동보호권 등을 각각 다루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는 개인의 신변안전권,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등 세 분야로 나눈 후, 구체적으로 ▷개인의 신변안전권에는 공권력 남용 및 공권력 빙자 폭력, 공권력 기관의 개인 인권 침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에는 수감자 인권 및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여부, 공개처형 사례, ▷사상 및 표현의 자유에는 정보접근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각각 다루고 있다.

(2) 연구방법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는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를 연구방법으로 취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50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면접은 '하나원'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 생활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집단면접으로 이루어졌는데 2004년 12월 18일, 12월 22일, 12월 26일 세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고, 인터뷰는 탈북자 1인당 1~2시간 소요되었다. 설문조사는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탈북자 1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3) 실태평가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 북한인권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경제적·사회적 권리 실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생존권 측면에서는 설문에 응했던 탈북자들의 응답을 살펴볼 때 1995년에서 1999년까지의 시기가 82%로 가장 식량난이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생활할 때 겪었던 가장 힘든 일로 “먹을 문제”를 꼽을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함경북도의 경우가 가장 식량난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있을 때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설문 응답자 중 64%가 직접 보았다고 응답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안전부나 보위부, 당 간부의 가정에서는 굶어죽는 일이 없지만 농민, 힘없는 사람, 밑천 없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식량난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연령대는 노인과 함께 아동층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자랑하는 무상치료의 의료체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약이 모자라 병원에서 약을 주지 못하며 개인이 약을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뇌물을 주고서야 약을 받을 수 있는 등 국가가 치료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돈이 없는 경우는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음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제활동권의 면에서는 식량난 악화로 주민 이동이 두드러졌다. 경제난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식량을 구하고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이동에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국가의 배급체계가 와해됨에 따라 주민들의 장마당 의존도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장마당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이 점차 완화되어 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 안전원들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이 부패현상들을 비판하기 보다는 적응하고 있으며, 생존에 기반한 물질주의에 급속하게 노출됨에 따라 앞으로 심각한 가치관의 혼동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주민들의 심각한 식량부족에 대응하여 북한당국은 텃밭을 이용한 최소한의 개인의 생산권을 허용해왔다.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의 측면에서는 응답자 중 89%가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을 진술했다. 직장과 학교 등 사회에서의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여성들은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심각한 불평등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에서 아동들은 식량난이 심화됨에 따라 학교에 가는 대신에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한다든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과 양육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영역에서도 북한인권은 심각한 상태임이 밝혀졌는데 식량난의 영향이 그것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신변안전 측면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 간부들의 공권력 남용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권력 남용이 심화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권력의 대리인들 역시 식량난과 경제적 곤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원과 주민의 관계가 상보적 관계가 아닌 상호 분리의 과정으로 급격히 변질되었다. 일상생활에서 경찰 기능을 갖고 있는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 안전원들과 국가보위부 소속 관리들에 의한 개인의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측면에 볼 때 북한의 식량난 이후 대부분의 범죄는 생계형 범죄였고, 이들은 노동단련대나 교화소에 수감되어 교도관들의 고문이나 폭행 등 인권 침해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위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생활에 대해 면접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구타와 강제노동)만을 전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주민들의 사회적 이완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극약처방으로 공개처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계형 범법자들에게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일반 주민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실시되는 공개처형 과정에서의 주민동원 사례는 강제동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과 강제적이지 않다는 증언이 엇갈렸다.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북한체제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외부국가에 대한 정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남한 소식을 들은 경우가 응답자 중 절반이 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불교, 기독교 등을 탈북 후 들었다고 할 정도로 종교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 종교는 자본주의가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것과 똑같이 간주되어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체제에서 주민들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은 불가능하다. 가까운 친구들과 남한사회에 대한 이야기나 정세를 논의하는 경우는 있다고 한다.

(4) 개선방안

국가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은 실태보고와 함께 인권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역별, 행위자별, 단계별로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영역별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탈북과정상의 개선방안으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오기까지 탈북 과정에서 겪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생존권 보장 측면에서는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이 시급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행위자별 개선방안으로는 남한 정부 및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역할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남한 정부 및 시민사회의 역할로는 북한인권문제가 정치적으로 접근되는 것을 경계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도록 유도하고 대화하고 지원하는 노력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제시되었다. 한편 국제사회는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의 지속 ▷북한에 차별 없는 식량분배와 투명성 제고 노력 촉구 등을 제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남한은 북한 내부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모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 실태 보고서는 단계별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장기적 접근의 필요성이 그 중 하나인데, 남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면 남북관계의 경색은 물론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남한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때를 염두에 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덧붙이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먼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환경을 조성해서 경제난 해소와 민주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렇게 되면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개선도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은 외부압력보다는 북한 주민의 자각 등 내부 동력이 뒷받침되어야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2)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08』 17)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발행해 오고 있다. 同백서는 비교적 객관적인 조사와 정기적 발간으로 현재 가장 권위 있는 북한인권 실태보고서로 평가받고 있으나 백서가 연간임을 고려할 때 연도별 구별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17)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8』, (서울: 통일연구원, 2008).

(1) 연구범위

백서의 연구범위는 ▷시민적·정치적 인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 ▷소수자 인권, ▷주요 사안별 인권 실태 등 네 분야로 나누워 설정하고 각각의 영역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다루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 자유권, 종교의 자유, 참정권 등을 각각 다루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 영역에서는 식량권, 사회보장권, 근로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다루었다.

소수자 인권 실태에서는 여성권, 아동권으로 나누워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안별 인권의 실태는 납북억류자, 국군포로의 인권, 탈북자의 인권 등을 각각 다루고 있다.

(2) 연구방법

통일연구원의 백서는 2007년과 2008년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와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들을 비교 검증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3) 실태평가

통일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북한 인권은 2000년대 이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으로는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관심사에 따라 ▷시민적·정치적 인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 ▷소수자 인권을 중심으로 백서의 조사 결과를 요약한다.

생명권 측면에서 공개처형 변화의 양태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공개처형 빈도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개처형을 시행하는 범죄행위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지역별 공개처형 빈도에 편차가 있으나 정확한 편차 실태를 평가하기는 어렵고, 살인죄, 인신매매, 정보유통, 밀수행위 등에 대한 공개처형은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체의 자유면에서는 교화소 내 고문과 구타 등 반인간적 처우가 일상화 되어 있어 인권유린 실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단련대에서는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영양부족과 강도 높은 노동 등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치사상범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우선 공민증을 압류 당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이다.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류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변호사의 변호를 받지 못한 경우와 재판을 거친 경우에도 변호사가 배석하지 않았다는 증언, 그리고 재판과정에 변호사가 배석하는 경우에도 북한주민들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증언들이 제기되고 있다.

평등권의 측면에서 보면 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이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부분에서는 난쟁이를 대상으로 강제 정관수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을 격리시키기 위한 격리시설의 운영과 함께 거주 지역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여행증 제도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여행을 통제하고 평양, 국경지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은 실제 여행 형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출판, 결사·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약은 본질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비밀리에 방송, 출판물, 동영상 등을 이용해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 접근을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여성조직, 종교단체, 노조, 정당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과 결사는 북한당국에 의해 통제되며, 독립적인 기관이나 결사의 존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북한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대표적 사례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도청으로서, 해외에 친척이 있는 사람들과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실시한다.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북한체제는 인가된 종교시설과 종교의식, 중앙 종교단체 이외에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등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의 경우 종교인과의 접촉이 발각될 경우 경제적 동기에 의한 탈북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고 새터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참정권 영역에서 선거는 보위부원과 안전원들의 철저한 감독과 통제 하에 치뤄지며, 투표를 안 한다거나 거부할 경우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고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새터민들은 증언하고 있다.

백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권 실태를 식량권, 사회보장권, 근로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식량권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근 북한의 농업생산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절대 부족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배급이 중단되고 식량 가격이 높아지자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식량난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자력 생존의 길에 떨어졌다.

사회보장권리 면에서는 의약품, 수술기구, 의료장비 등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물과 전기 부족으로 인해 수술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근로권의 측면에서 북한 공업노동자의 다수는 실업상태에 놓여있다. 경제난으로 말미암아 공장 가동률이 20~30%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할 직장이 없는 셈이다.

직업선택의 자유 면에서 북한의 직장배치는 당이 독점하고 있으나 직장배치에서 뇌물이 오가고 있으며 직장이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소수자 인권 실태는 여성권과 아동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여성권의 측면에서 보면 북한사회는 남존여비관념과 가부장제 의식이 팽배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일상화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성폭력은 1990년대 이래 식량난을 겪는 과정에서 보다 심화되었으며, 특히 여성 인신매매와 강제 성매매 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기근으로 인한 북한여성들의 영양실조가 초래한 가장 심각한 결과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한 건강 악화이다.

아동권의 측면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아동들은 기본적인 식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다. 최근 북한당국은 시·군 단위로 꽃제비 구제소를 설치, 운영하고는 있으나 엄격한 규율생활에 대한 부담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구제소를 몰래 빠져나오는 아동들이 많다고 한다.

(4) 개선방안: 언급 없음

3)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통계백서 2007』¹⁸⁾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연구진이 발간한 『북한인권통계백서 2007』는 동센터가 꾸준히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해온 인권침해사건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실태를 정리 분석하였는데, 인권 영역을 균형적으로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18) 윤여상 외 7인, 『북한인권통계백서 2007』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1) 연구범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위 백서는 연구범위를 생명권, 자유권,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 이주 및 거주권,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재생산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 > 집회 및 결사권, 재산권, 정치적 참여권, 노동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등 16개 분야로 나누어 인권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들 분야는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실태조사가 진행되었다.

(2) 연구방법

백서는 문헌자료 분석과 면담조사를 연구방법으로 취하였다. 문헌자료 분석은 단행본 총 154권을 비롯한 2006년 신문자료, 2005~2006년 인터넷 기사자료, 2006년 자체 수집한 잡지 등을 바탕으로 분석되었으며, 면담조사는 540명에 대한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3) 실태평가

센터의 북한인권 실태는 사건별 실태와 인물별 실태로 나뉘어 분석되었는데, 먼저 사건별 실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전체 사건의 규모는 3,903건으로 그중 목격과 경험은 3,004건(73%)으로 나타났으며, 사안별로 살펴보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59.3%)과 생명권(16.0%)의 발생 비율이 7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생명권>이주 및 주거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노동권, 생존권의 순서로 나타났다.

인물별 실태는 전체 인물 규모로 보면 전체 2,975명 중 피해자 비율이 81.9%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의 증언이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인권침해사건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실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생명권과 관련된 사건의 규모는 624건으로 나타났다. 생명권은 공개처형과 비밀처형을 의미하는 사법적 집행이 8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즉결처형으로 인한 임의처형도 5.9%로 나타났다. 1990년대와 2000년 이후 발생한 생명권 사건의 90%는 사법적 집행이 차지하고 있어 이 시기에 공개처형이 집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명권의 지역별 발생건수를 보면 전체 발생 건수의 54.6%가 함경북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사건 장소별 발생 건수를 보면 공공장소의 비율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공개처형이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은 2,315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중 발생빈도가 높은 것은 불법구금(62.1%), 고문 및 폭행(11.7%), 납치/억류/유괴(11.3%)의 순서로 나타나 불법구금이 최대 발생 사건으로 보고되었다. 결국 북한인권 피해의 절대적 부분은 불법구금과 그 이후 구금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사건발생은 1990년대의 발생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지속적으로 사건 보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 사건발생 건수를 보면 정치범수용소(39.1%)와 보위부 및 안전부 조사 및 구류시설(20%)의 빈도가 가장 높다.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의 세부분석을 보면 성적폭행이 34건, 강간 38.2%, 성폭행 32.4%, 성추행 및 성희롱 23.5%, 강간미수 5.9%로 나타났다. 성적폭행이 발생한 장소는 정치범수용소 44.1%, 보위부 및 안전부조사 및 구금시설 20.6%로 나타났다. 고문 및 폭행관련 사건은 272건이 발생하였다.

생존권 침해유형인 식량권은 전체 127건 중 아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3건(89%)으로 가장 높았다. 아사의 경우는 전체 113건 중 90건이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아사자에 관한보고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아사자의 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함경도에서 발생한 비율이 71.7%로 매우 높다.

건강권 관련 인권침해 사건은 11건으로 적정치료 거부 및 미비가 7건(63.6%), 적정치료 시설 및 인력 미비가 4건(36.5%)으로 나타났다.

교육권 침해 사건은 20건으로 고등교육 기회박탈이 13건(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주 및 거주권 침해는 전체 290건 중 국내추방(강제이주)이 190건(62.1%)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강제송환이 90건(31%)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내추방(강제이주)의 경우 1990년대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으나,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일정 비율로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제송환은 1990년대 24건으로 급증하고 2000년대 이후에는 53건으로 전체 절반을 넘게 차지하였다. 이주 및 주거권 침해가 높게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국경관리범죄 78건(26.9%), 연좌제 72건(24.8%), 정치범 64건(22.1%)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침해 사건은 총 21건으로 나타났으며, 재산권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은 총 19건으로 보고되었다.

신념 및 표현의 권리침해 사건은 총 60건으로 종교박해 31건(51.7%), 통신 및 정

보 이용의 제한 13건(21.7%),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비판 박해 9건(15%)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박해의 경우 31건 모두 정치범에 해당되었고, 통신 및 정보이용의 제한은 13건 중 12건이 정치범에 해당된다.

집회 및 결사권과 관련된 인권침해 사건은 총 1건으로 보고되었다.

재산권의 권리침해와 관련 사례는 59건으로 보고되었으며, 국가기관원에 의한 강탈이 49.2%(29건), 금품강요가 35.6%(21건)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권 침해 사례를 사건 원인별로 보면, 경제범이 84.7%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었는데, 여기서 '경제범'의 의미는 국경지대에서의 밀무역과 관련된 일, 평양지역에서의 경우 비공식적 경제부문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자를 말한다.

정치적 참여권의 권리침해는 총 8건으로 보고되었다.

노동권과 관련된 피해사례로는 총 129건이 보고되었는데, '강제노동'이 27.1%(35건), '직위해제 및 강등'이 24.8%(32건), '직업선택의 자유침해'가 19.4%(25건) 등으로 분석되었다.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침해 사건은 176건으로 '적절한 음식권 침해'가 34.7%(61건), '적절한 의료서비스 침해'가 19.9%(35건), '구금시설 내 새로운 구금시설(독방감금)'이 16.5%(29건), '적정한 수용시설권 침해'가 15.9%(28건) 등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사건원인별로 살펴보면 생활사범이 67%(118건), 형사범이 9.7%(17건), 국경관리 범죄 7.4%(13건), 정치범 5.7%(1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개선방안: 언급 없음

4) 좋은벗들의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 (2004)¹⁹⁾

북한인권·난민단체인 '좋은벗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이후부터 북-중 국경지대에서 현지조사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전개해 오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위 단체가 2004년 펴낸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난을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내외 언론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 좋은벗들, 『북한식량난과 인권』 (서울: 좋은벗들, 2004).

(1) 연구범위

좋은벗들의 위 보고서는 연구범위를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북한주민의 권리 보장 및 개선을 위한 제언 등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영역 내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다루고 있다.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크게 식량난과 생존권, 개인의 경제활동권,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으로 나눈 후 ▷식량난과 생존권에는 식량부족과 대량아사 실태, 어린이 성장 장애 및 교육권 침해, ▷개인의 경제활동권에는 이동의 자유 제한, 장마당 생계활동 제한, 개인영농의 권리 제한,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에는 출신성분제와 연좌제, 여성과 아동권 등을 각각 다루고 있다.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는 개인의 신변안전권, 법적 보호받을 권리,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등 세 분야로 나눈 후, 구체적으로 ▷개인의 신변안전권에는 주민상호간 폭력, 공권력 및 공권력 빙자 폭력,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에는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및 행위, 공개처형, ▷사상 및 표현의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다루고 있다.

(2) 연구방법

좋은벗들의 실태조사는 인터뷰와 문헌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취하였다. 면접조사 자료는 1996~2001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중국 활동 당시 수집한 증언 자료와 2003년 이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중 제3국 체류기간이 짧은 이들의 증언을 사용하였다. 또한 증언의 사실성과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권보고서 및 북한 관련 국내외 문헌자료들을 비교 검증하였다.

(3) 실태평가

좋은벗들의 실태평가 결과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인권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실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식량난과 생존권측면에서 북한은 식량난 이후 전체 인구 중 사망자 수를 추정해 본 결과 약 300만 명 이상이 굶주림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치는 북

한 전체 인구의 약 13%에 이른다. 조사대상 어린이 중 발육을 하지 못하는 만성적인 영양실조의 수치는 62.3%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영양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는 급성 영양실조도 전체 평균의 16%를 차지하였다.

개인의 경제활동권의 면에는 식량난의 악화로 인해 무엇이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이동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증명서 제도를 계속 고수하였으며 낙후한 교통수단을 그대로 방치하였다. 1997년과 1998년, 북한 내부에서 아사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던 시기 북한주민들은 강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불법월경자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중국의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당국의 묵인 속에 장마당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으나 문제는 ‘묵인’이 곧 ‘합법적 허가’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식량난의 어려움을 떼기발 개간을 통해 이어보려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떼기발 분쟁 중 폭행으로 사망하고”, “강도의 피살을 당하고”, “곡식을 훔치다가 모진 매를 맞는” 등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다.

평등권과 소수자 인권의 면에서는 식량난이 시작되면서 기존의 차별체계는 더욱 공고해진 반면 차별에 기반을 둔 통제는 식량난 덕분에 느슨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차별체계 자체가 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기본권 보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아울러 사회적 소수자라 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는 더욱 취약해졌다.

식량난과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측면의 인권실태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개인의 신변안전권에서 북한 주민은 식량난 이후 상시적으로 도둑, 강도 등에 노출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인명과 식량 및 재산피해도 막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지역에 파견되어 나와 있는 군인들에 의한 폭행이나 시비도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면에서 식량난은 ▷수많은 생존형 범죄자들을 양산하였고,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고문이 행해졌으며, ▷감옥에 가는 자체만으로 먹을 것이 없어 죽음을 재촉하는 결과를 빚어내었다. 식량난 이후 사회이탈행위가 급증하고 체제를 뒤흔들만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자 북한당국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공개처형을 급속히 확산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사상 및 표현의 자유 권리 측면에서 볼 때 식량난으로 굶주림의 고통이 극심해지면서 상호감시제로 인한 피해는 심각해졌다. 이는 체제유지가 불안해지면서 민심이 동요하자 당국에서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던 까닭이다. 식량난 이후 주민

의 의사표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대응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식량난과 극심한 기아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신세한탄을 한 것이 빌미가 되어 정치범으로 몰려 문책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북한에서는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를 접할 때에도 제약을 받는다. 중국방송이나 한국방송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 당국은 기기의 부속품을 빼거나 채널을 국내 방송에만 고정시킨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외부 정보를 접할 수도 있다. 한편 북한에서의 종교는 자본주의 체제가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되어 경전 유입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4) 개선방안

좋은벗들의 실태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은 실태보고와 함께 인권개선 방안을 행위자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행위자별 개선방안으로는 북한 및 남한, 그리고 UN 및 국제사회의 역할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인권대화, ▷식량난 실태 공개 및 분배의 투명성 보장, ▷주민의 경제사회권 보장,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향상, ▷인도주의적 차원의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남한정부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의지 표명, ▷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 확대, ▷남북경협 확대, ▷남북 군비축소 회담, ▷대북지원 및 북한인권단체와의 정보 공유 및 탈정치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UN 및 국제사회의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인권상황에 대한 차이 인정과 대량의 인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대량의 인도적 지원 및 대북 경제제재 조치 해제, ▷불가침 협정 후 북미수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 등을 모색할 수 있다. 일본은 ▷납치자 송환문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 분리, ▷대북 경제제재 법안 철회, ▷북한 비방 및 조총련 탄압 중지, ▷북일 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중국에게는 ▷북한난민에 대한 수색·연행·강제송환 중지, ▷임시 거류증 부여,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 보호, ▷국제결혼 인정 등이 제시되었다.

5) 좋은벗들의 『2006-2007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 (2007)²⁰⁾

좋은벗들의 『2006-2007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 보고서는 2006년과 2007년 북한의 연이은 수해로 인한 식량 위기와 아사자 발생, 그리고 대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 처벌과 감시가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사회의 당면 인권문제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를 앞의 2004년 보고서와 비교분석 할 경우 북한인권 실태 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 연구범위

좋은벗들의 위 보고서는 연구 범위를 ▷식량권, ▷생계활동권, ▷보건권, ▷사상의 자유권, ▷신체의 자유권, ▷여성권, ▷아동권 등 크게 일곱 개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다루고 있다.

각 영역별 구체적 실태는 ▷식량권에는 식량의 절대적 부족, 배급순위에 따른 식량배분, 평양중심의 식량공급, ▷생계활동권에는 시장통제와 개인고용 금지, 개인농사에 대한 권리, 강제노동과 과도한 세외부담, ▷보건권에는 무상치료 시스템의 붕괴와 차별 진료, 위생관리의 부재, 재난관리 체계의 미비, ▷사상의 자유권에는 일상화된 검열과 단속강화, 정보소통의 통제, ▷신체의 자유권에는 공개재판과 처형, 구금시설에서의 인권 유린, 연좌제 처벌, 탈북 방지와 국경 봉쇄, ▷여성권에는 가족 해체 및 모성 보호권, 자원화, 권력화된 성적 거래, 여성의 이중 노동, 탈북 난민 여성, ▷아동권에는 아동의 생존권, 파행적 교육현실 등을 다루고 있다.

(2) 연구방법

위 연구는 2006년부터 2007년 11월까지 좋은벗들의 북한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오늘의 북한 소식>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해당 기간 내에 북한에서 일어났던 각종 사건과 사고,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바탕으로 북한당국이 각종 지침과 검열, 단속을 통해 보여주었던 생생한 현실을 자료로 삼았다. 이런 연구방법은 그동안 탈북자 증언에 의존한 실태조사에 비해 현장 접근이 높아 조사 내용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20) 좋은벗들, 『2006-2007 북한사회변화와 인권』 (서울: 좋은벗들, 2007).

(3) 실태평가

2006~7년 북한사회의 인권실태 조사 결과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인권은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7개 영역별 북한인권실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식량권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식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의 수확량은 수해와 외부 지원 중단으로 2005년도 수확량의 1/3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으며, 2007년도 2월이 되면 식량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기도 했다. 실제 2006년도 각 도별 생산량은 200만 톤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국내 곡물 보유량이 약 280만 톤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수치의 국내 곡물 보유량이면 일부 계층에서 심각한 영양실조가 나타나며 취약계층에서는 아사자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식량의 절대적 부족 상황에서 배급 순위에 따른 식량 배분체계가 일반 주민의 식량권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급 1순위는 당, 정 기관 공무원들이며, 2순위는 군부와 보위부, 보안서, 사법 검찰부문, 3순위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공장 및 기업소 순이다. 배급 1순위 및 2순위에서는 굶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나, 도시 빈민 계층과 농민 빈곤층의 식량권은 매우 취약하며, 사실상 식량 접근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식량난이 10년 넘게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평양 시민들은 식량 배급에 있어 최우선적인 대우를 받아오고 있다. 2007년 평양시를 제외하고 배급되고 있는 지역은 회령시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그 외 지역들에 대한 배급은 대부분 끊긴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배급이 중단된 지역에서 장사나 다른 생계수단을 갖지 못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노약자와 빈민계층에서 오랜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생계활동권 측면에서 볼 때, 북한주민에게 시장에서의 장사활동은 일반주민들이 가장 쉽게 먹을 것을 구하는 생계활동 중 하나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는 2007년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장 운영은 여름철에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겨울철에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농촌 전투기간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월요일에는 휴식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으며, 장사 연령은 45세 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장사 물품은 20만원 미만으로 규제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단속의 강화로 장사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나, 길거리나 시장 밖에서 단속원의 눈을 피해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운전수, 개인 소토지 농사일꾼, 배 일꾼 등 삶벌이 개념의 개인 고용은 이미 북한사회에 널리 퍼져 있으

나,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대표적인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개인 농사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 각 공장단위, 기업소들에게 자체별이 지령이 떨어지면서 개인농사를 짓도록 하는 소위 6개월 농사가 합법화되었으나, 2007년에는 6개월 농사의 해당 받을 회수하라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불법적 6개월 농사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권의 측면에서 보면 무상치료 시스템의 붕괴와 차별 진료로 인해 국민의 80% 이상이 무상치료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무상치료를 받고 있는 대상은 군복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50만 명, 중앙급 기관의 관리 100만 명을 포함해 총 350만 명 규모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는 병원에 가서 유상 치료를 받고 있다. 이는 지위와 계층, 소득 정도에 따라 진료 접근도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을 말해준다. 식량권과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의 보건체제로 인해 진료를 받을 권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가장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북한에서 질병예방에 필수적인 식수문제와 청결, 영양섭취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충족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북한 병원은 주사기 하나로 100대의 침을 같이 끼우거나, 끓는 물에 소독해서 다시 사용해야 하는 열악한 위생 상태에 놓여있다고 한다. 더구나 전염병 발병 시 취약계층은 더욱 심각한 인권유린 상태에 놓이게 된다. 예컨대 성홍열 발병 시, 당국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며 걸인 생활을 하는 꽃제비와 방랑자들을 가장 먼저 위험 대상으로 지목하고 집결소에 격리시키고, 배고픔에 떨도록 하기도 하였다. 재난관리 체계의 미비 또한 북한주민들의 보건권을 침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데, 북한에서는 재해재난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여름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의 경우, 자력으로 복구하거나 사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이때 외부로부터의 긴급구호가 이루어져야 하나, 북한 당국은 내부동요를 막는다는 이유로 모든 상황을 비밀에 부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상의 자유권 측면에서 북한정부는 2006-2007년에 들어서서 대대적인 단속과 검열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 예컨대, 6월과 7월의 도 보위부 검열은 한국 영상물 CD 판매와 전화사용 등을 포함해 간첩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5.35 교시 총화사업을 이유로 시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의 단속은 일상생활 전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여성의 장마당 거래 금지, 주민의 이동통제 등으로 인해 식량을 구하기 위한 주민들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또한 간부들의 사상적 동

요를 막기 위해서는 일벌백계식 공개처형 방식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정부는 내부적 동요를 막기 위해 정보소통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북-중 국경지대에서 중국쪽의 전화가 수신이 가능하기에 북한 주민들은 다양한 이유(중국과의 무역거래, 중국 및 남한 친척과의 연락, 인신매매 등)로 중국 휴대전화기를 사용해왔다. 이에 북한 정부는 한동안 묵인해왔던 중국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부작용을 인식하고 집중단속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 10월에 들어서는 휴대전화 뿐 아니라 유선전화까지도 단속하고 있다.

또한 핸드폰 113 도청기는 국경 연선 각 지역들에서 하루 24시간동안 가동되고 있고 요즘 강연회마다 전화사용을 말라고 하는데, 이미 133에 걸려든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고 한다. 함경북도 회령에서만만도 133 전화를 2달 동안 430대를 몰수했는데 그 중에서 한국과 거래한 자들 170명이 통화 중에 잡혀 나왔다. 국가 기밀 누설 방지와 체제유지라는 명목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진행되는 정보 소통의 단속은 주민들의 불편과 반발을 무릅쓰고 계속되고 있다.

신체의 자유권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판적 여론에 부딪혀 2000년 이후 한동안 공개처형을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빈번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2007년 8월 평안남도 순천의 비날론 공장 사장이 공개처형을 당했는데, 죄목은 전쟁 시기 치안대 경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식량부족으로 굶어 죽어가는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공장기물을 팔아 식량을 구입한 것으로 인해 90발의 총살을 당하였다고 하였다. 또 다른 탈북자는 2007년 7월 강원도 원산의 시내 경기장에서 전체 군중을 모아 놓고 공개재판을 한 후, 남녀 간부 2명을 공개처형했다고 진술하였다. 6명의 군인이 각각 총 30발씩 쏘았으며, 이들의 죄목은 도박과 마약, 성인 동영상 시청, 그리고 공금횡령 등이었다고 한다. 이런 공개처형은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극형의 현장을 직접 보게 함으로써 강제와 억압에 의해 사회질서를 잡으려는 공포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유린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시설에 수감되기 전 범죄인을 조사하고 재판하고 구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가 존재하였다. 예컨대, 심한 폭언과 구타, 고문이 동반되며, 외인들은 굶기면서 음식으로 유혹해 죄를 자백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시설에 수감되고 난 이후에도 죄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며, 구금시설에서 공개처형보다 과로사, 아사, 병사가 더 널리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가족들이 지은 사회적 과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좌제를 적용하여 계급사회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탈북했다가 강제 송환되거나 가족 중

한국으로 간 사실이 알려진 가족들에게는 연좌제가 적용되어 강제추방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중 탈북자가 생기면 간부의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해임되거나 철직을 당하고 가족들은 추방되는 것이 현재 북한에서 횡행하는 연좌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식량난으로 국경을 넘는 주민들의 숫자가 날로 증가하자 북한 정부는 탈북 방지와 국경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 탈북 문제를 막고 국경변을 철저히 단속하라는 지시도 예년에 비해 부쩍 증가하였다. 국경변 봉쇄정책은 국경변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만들고 있으며, 국경변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가는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몰라 숨을 죽이며 살얼음판을 걷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탈북자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감시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죄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죄인 취급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여성권 측면에서 보면 식량난이 지속되면서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 해체를 경험하게 된다. 예컨대, 남성의 경제적 무능력, 가정 폭력 등의 이유로 혼인관계가 약화되고 있다. 이혼이 급증하고 있으며,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부부도 어렵지 않게 발견될 뿐 아니라 심지어 '생활형 중혼'이 다수 목격되고 있다. 모성보호권의 침해상황을 보면 북한의 모성 사망률은 출생아 10만 명 당 67명으로 세계 60위 수준이며, 생활고가 심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키울 환경과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불법 낙태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인해 성적 거래가 만연되고 있다. 식량난의 심화로 인해 여성들 스스로 몸을 자원화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여성들은 공식적 배급이 중단되면서 가정의 가장 역할은 물론 가사노동까지 모두 책임지는 이삼중의 노동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는 배급, 임금 지불 능력이 없어지자 여성을 사적 영역으로 돌려보낸 뒤 무임금으로 언제나 공적영역에서 소환 가능한 유희노동력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여성들의 인신매매는 심각하게 여성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좋은벗들의 조사에 의하면, 1999년 당시 30만 탈북자 중 여성이 75%였고, 그 여성의 절반 이상이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신매매 등을 통해 중국 내에 체류하게 된 북한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성폭행을 비롯해 물리적인 폭력, 강제 임신 및 낙태, 강제 유희가 종사, 노동착취, 강제 결혼 등에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량난이 극심해지면서 아동의 식량 접근이 원활하지 않다. 음식 섭취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체력 저하로 인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거나 조퇴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거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 풀뿌리나 약초

등을 캐러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더욱이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의 경우는 전염병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북한은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이 고갈된 상태여서 감기같이 가벼운 병에 걸린 아이들조차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꽃제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해의 여파로 어린 꽃제비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아동들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식량난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출석률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으며, 학교에서조차 학생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오전에만 수업을 하고, 오후 시간을 사회과제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있다. 더욱이 교원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윤리의식이 약화되어 학부모의 성분과 가계 형편에 따라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4) 개선방안

좋은벗들의 위 보고서에서는 인민생활 경제와 사상문제를 분리할 것을 북한에게 제안하는 것 이외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6) 대한변호사협회의 『2008 북한인권백서』 (2008)²¹⁾

대한변호사협회도 북한인권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2005년 북한인권소위원회를 만들어 북한인권 법령 및 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이듬해 『북한인권백서』를 처음 발간한 바 있다. 이어 2008년 두 번째 백서를 발간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협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1) 연구범위

백서는 북한의 인권정책과 법률 적용 실태 외에 북한인권 실태를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식량권,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종교 및 신념의 자유, ▷자의적 구금,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비자발적 실종,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정치범 수용소, ▷탈북자, ▷북송 재일교

21)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08).

포,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인권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2) 연구방법

대한변호사협회의 실태조사는 심층면접과 문헌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취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2000년 이후 탈북자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2006년 백서 발간시 증언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문헌분석은 기존 문헌과 보고서, 그리고 인터뷰 결과 등을 활용하였다.

(3) 실태평가

대한변호사협회 실태조사의 결과를 연구영역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식량권의 측면에서 북한의 대량 아사사태는 식량의 절대부족만이 아니라 불평등한 분배구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북한정권은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당·군 간부, 군수산업 종사자와 평양시민들에게만 식량을 배급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계급, 지역, 직종별로 차별하여 배급제도 밖에 방치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고문과 기타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은 고문이나 비인격적인 학대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드물었다. 최근 인권 관련 법규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것이 선전용인지 실제 인권향상을 목적으로 하는지는 불확실하다.

종교 및 신념의 자유 측면에서 보면 신정국가(神政國家)인 북한에서 수령유일사상을 위협할 종교 및 신념의 자유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견 및 표현의 자유 면에서도 북한은 김일성·김정일의 사생활 및 가계에 대한 비방 등 수령독재체제에 위협이 되는 언동은 정치범으로 분류하였다. 수령독재체제에 위협이 되는 언동을 제외한 부분은 다소 통제가 완화된 듯 한 변화가 엿보이나, 그것은 배급제도의 붕괴로 인한 사회통제기능의 부분적 마비현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인권 면에서 북한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멸시와 폄박을 받는 전근대적 의식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의 경제적 활동의 증가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높아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탈북자의 인권 측면에서 보면 강제송환된 탈북자 중 미성년자는 처벌되지 않으나, 성인의 경우 단순 탈북자는 재판 없이 노동단련대에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수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국행을 시도하거나 남한 사람 혹은 기독교인과 접촉한 사실이 발각된 탈북자들은 '조국반역죄'로 교화소에 수감된다.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 실태를 살펴보면, 수용소에 수감된 수감자는 우선 굶주림과 영양실조, 열악한 의료실태와 질병, 강제노동 등으로 생명권이 침해받고, 폭력과 고문, 각종 비인간적 대우 등 제도적 폭력에도 노출되며, 보위부원들에 의한 즉결처형, 공개처형, 비밀처형 등 반인륜적 범죄를 당하는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된다.

(4) 개선방안

대한변호사협회는 위와 같은 실태보고를 바탕으로 인권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식량권과 자유권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인권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식량권 측면에서 제시한 방안은 ▷농업생산 기반 재건을 위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 ▷식량 배분의 검증 빈도와 강도 제고를 바탕으로 한 인도적 지원 등이다. 또한 자유권과 관련된 방안으로 ▷국제사회의 감시와 비판, ▷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권침해자에 대한 형사소추를 전제로 구체적인 인권침해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보존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해외 문헌 분석

1)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보고서(2008)²²⁾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비딧 문타폰(V. Muntarbhorn)이 2008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출한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비딧 문타폰의 보고서'는 북한 현지 방문조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본 보고서의

22)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r. Vitit Muntarbhorn," A/HRC/7/20, 15 February 2008.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범위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위 보고서는 연구범위를 ▷인권과 개발 과정, ▷식량 및 기타 생필품에 대한 접근, ▷권리와 자유, ▷탈북과 피난, ▷취약집단에 대한 관심, ▷폭력과 인권침해 등 여섯 개의 영역으로 설정하여 북한인권 실태를 다루고 있다.

(2) 연구방법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실태조사는 현장조사와 선행연구 분석의 방법을 취하였다. 현장조사는 2007년 12월~2008년 1월 사이 실시되었으며, 문태폰 특별보고관은 몽골, 일본, 한국을 방문해 정부 당국자와 인권운동가들과 면담을 갖고 탈북자,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하였다. 특히 한국 방문 시에는 하나원을 방문하여 탈북자를 직접 면담하였다. 선행연구 분석은 북한인권 관련 국내의 연구기관과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3) 실태평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파악한 각 영역별 인권실태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인권과 개발 과정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매우 점진적인 소득증대와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나타나는 가운데, 대중의 참여 없는 비민주적 구조와 고립된 국가 위상으로 개발의 성과가 불평등하게 제공되었다. 만성적인 식량 및 생필품 부족은 북한의 경제위기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는 '선군정치'와 과도한 군사비 등에 연유한다.

식량 및 기타 생필품에 대한 접근 면에서 볼 때 북한은 식량, 의료품, 전기 등 전반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외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엘리트층과 일반 주민들 사이에 식량 및 생필품 접근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분배 투명성이 증대하여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량 안보인데 이것은 대중의 참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권리와 자유의 면에서 보면 북한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정권의 억압과 광범위한 정보기관의 활동으로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으며, 민주적 정치참여가 부재한

가운데 노동당이 지배적인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공개처형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처형은 계속되고 있으며 교정시설의 여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탈북과 피난 면에서 보면 탈북 행렬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 복잡한 이유에 의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는 그 유형(생계형과 비생계형)에 따라 다르고, 탈북자들은 국경 통제, 제3국에서 낳은 자녀의 지위, 이산가족 발생 등의 이유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

취약집단에 대한 관심 면에서는 남녀평등을 명시한 헌법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성, 특히 엘리트 계층이 아닌 여성들은 처벌과 소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탈북 여성들은 인신매매와 매춘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아동, 특히 엘리트 계층의 자녀가 아닌 아동들은 차별을 더 많이 받고, 아동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식량 부족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폭력과 인권침해 면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관리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이 문제로 꼽혔는데, 이들에 대한 훈련과 감시를 위한 국내외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폭로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개선방안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상과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정부와 국제사회로 나누어 행위자별 인권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정부의 역할로는 ▷보다 균등한 개발을 추진하고, 인권을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행하고, 자원을 군사 분야에서 사회개발 영역으로 전환하고, ▷식량 및 기타 생필품에 대한 대중의 불균등한 접근을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을 통해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 및 교정 제도를 현대화하고, 납치 및 실종자 문제 해결을 위해 신빙성 있는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피고인 보호, 공정재판, 사법부 독립 등과 같이 법치를 준수하고, ▷정부의 허가 없이 출국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그와 관련한 법률 개정과 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여 그 규정을 이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국제사회의 역할로는 ▷북한에 대중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는 동시에 인간안보 전략을 강조하며, ▷

난민의 권리, 특히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이주자의 권리를 준수하고, 이주와 피난을 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며, ▷북한정부와의 대화를 활성화 해 분쟁해결을 증진하고 인권 담론 형성 및 구체적인 실천위해 노력할 것을 제시하였다.

2)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2004)²³⁾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의 식량난과 북한인권 상황이 주고받은 상호 영향에 주목한 “Starved of Rights”라는 보고서를 발표해 이목을 끈 바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북한 내의 인권상황을 전면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1) 연구범위

국제사면위원회의 위 보고서는 연구 범위를 ▷식량 접근에 대한 불평등성,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원조단체에 대한 제한, ▷식량난으로 중국에 도주한 북한주민의 상황, ▷식량난으로 인한 수용소의 열악한 실태 등을 다루고 있다.

(2) 연구방법

국제사면위원회의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방법을 취하였다. 인터뷰는 주로 탈북자와 북한 인권관련 단체, 국제기구, 그 외 북한 인권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3) 실태평가

국제사면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각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식량 접근에의 불평등 실태를 보면, 도시 인구는 식량 부족을 경험하면서 식량조달의 취약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농촌 가구는 수입의 3분의 1을 식량조달에 사용하면 되나, 도시 가구는 수입의 대부분을 식량 수급을 위해 소비해야 하는 실

23) Amnesty International, “North Korea,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January 2004.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SA24/003/2004> (검색일: 2008년 10월 13일).

정이다. 배급제의 중단은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관계로 지방이 평양 중심에 비해 심각한 식량부족을 경험해왔다. 이와 같이 식량 접근은 정치사회적 계급에 의해 차등화가 만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가정에서의 역할과 더불어 생계유지를 위한 고된 생활을 강요받고 있다.

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 실태는, 일반적으로 북한주민들은 여행 및 이동을 위해 당국의 허가를 받는데 15일이 필요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동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전의 자유가 당국에 의해 강력하게 제한됨으로 인해 북한의 식량난은 더욱 심각해져왔다. 한 인터뷰에 의하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허가서 없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동 과정에서 화장실에 숨는 방법으로 감시관을 피해야 했으며, 만약 발각될 경우에는 벌금을 물거나, 버스나 기차에서 쫓겨난다고 증언하였다. 외부원조 단체들의 이동의 자유는 당국에 의해 강력하게 제한되어왔으며, 이 또한 북한의 식량난을 심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원조단체에 대한 제한 실태는 1995년 이후,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였으나, 북한 당국의 지나친 모니터링 제한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예컨대, 북한은 기본적인 모니터링 장비 반입을 엄격히 금지했으며 영양조사, 시장조사 등 대부분의 조사를 거부해 왔다. 결국, 2003년 대부분의 국제지원기구들은 북한에서 철수하였다.

재중(在中) 탈북자의 경우는 대부분 가뭄과 식량난으로부터 도망한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니라 경제적 이주자로 정의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송환된 탈북자의 인권 실태는 폭력적인 공권력에 노출되어 있다. 탈북자들의 탈북 사실이 알려질 경우,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이 가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경찰은 가혹한 폭력을 사용하여 탈북자를 체포하는데, 폭력으로 인한 진압 이후에도 각종 고문이 이어지게 된다. 폭력적인 공권력 사용을 국제자유권 규약(ICCPR) 제7조에 위배된 행위이다. 탈북자가 송환될 경우 탈북 횡수, 신분, 정치적 위협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상이하다고 하였다. 탈북자 인터뷰에 의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있는 후 약 40% 가량이 다시 중국으로 월경하게 된다고 한다.

식량난으로 인해 수용소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수용소는 일반적으로 15평 규모의 한 방에 평균 12명을 수용하고 있어, 매우 비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장기화된 식량난으로 수용소 내의 식량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어떤 경우에는 서너 스푼의 옥수수과 물만이 제공된다고 한

다. 수용소 내부에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되어있다. 한 탈북자 증언에 의하면, 요덕관리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매우 적은 양의 옥수수만을 배급받았으며, 너무 배가 고파 잔디 풀을 먹기도 했었다고 한다. 영양실조로 서너 명은 죽어나갔으며, 이러한 사건이 보고될 경우 아침식사를 제공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4) 개선방안

국제사면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실태보고와 함께 인권개선 방안을 행위자별로 제시하고 있다. 행위자별 개선방안으로는 북한정부와 남한정부, 그리고 중국정부와 국제사회의 역할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북한정부의 역할은 ▷식량부족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인도지원 기구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야 하며, ▷식량 접근에 있어 모든 주민이 평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식량권에 대한 법적 기반을 공고화해야 하며,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모든 고문과 학대가 법적으로 제거되어야 하며, ▷여성, 아동,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양한 국제인권법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하였다.

한국정부의 역할로는 남한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탈북자들의 권리 보호를 제시하였다.

중국정부의 역할은 ▷국제 인권법과 난민법에 입각하여 그 의무를 다해야 하고, ▷강압적 처우를 받게 될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되었다.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식량과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하고, ▷북한 정부에 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하며, ▷북한정부와의 모든 대화절차에서 인권보장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켜야 하고, ▷인권의 제반 원칙에 근거하여 개발과 인도적 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하며, ▷공정한 식량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북한정부에 계속적으로 촉구해야 하고, ▷중국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하다고 제시하였다.

3) 인권감시협회의 보고서(2007)²⁴⁾

인권감시협회(Human Rights Watch)도 2000년대 들어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고 관련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는데, 아래 내용은 2007년의 한 보고서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면위원회의 위 보고서와 같은 한계와 함께 북한인권 침해 원인을 북한정부의 계급정책으로 환원하고 있는 문제를 보이고 있다.

(1) 연구범위

인권감시협회의 2007년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는 연구범위를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현황, ▷국경에서 한국인 혹은 선교사와 접촉한 탈북자 처벌 실태, ▷탈북자 구금과정에서의 인권 현황 등으로 나누어 다루고 있다.

(2) 연구방법

인권감시협회의 실태조사는 2006년 7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에 북한을 빠져나온 탈북자 16명을 같은 해 11-12월 인터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3) 실태평가

위 보고서에 나타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실태를 보면, 2000년대 초 탈북과정에서 발각되었을 때 훈계조치가 취해졌었던 것과 달리, 2004년 이후 탈북과정 중에 체포될 경우 바로 수용소로 가게 되는 등 그 처벌이 매우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전의 경우, 탈북이 발각되더라도 중국에서 문제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큰 탈이 없었던 반면, 이번 정책은 중국에서 무슨 사건과 연류 되었었는지, 과거 어떤 신분이었었는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처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인민재판에 회부될 경우 탈북 시도가 처음이었다 할지라도 5년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가족까지도 함께 처벌된다. 또 다른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탈북과정을 돕다가 발각된 군인의 경우,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강화되었다고 한다.

24) Human Rights Watch, "North Korea: Harsher Policies against Border-Crossers," March 2007. <http://www.hrw.org/en/reports/2007/03/05/north-korea-harsher-policies-against-border-crossers> (검색일: 2008년 10월 13일).

국경에서 한국인 혹은 선교사와의 접촉과 관련한 북한 주민의 처벌 실태를 보면, 중국 국경 또는 중국에서 선교사와 접촉하거나, 기독교인이 되는 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형벌은 더욱 무겁다. 첫 번째 발각될 경우 1년의 형량이, 두 번째일 경우 3년, 중국에서 교회에 갔을 경우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년의 형량을 받게 된다.

탈북자 구금과정에서의 인권 현황 실태는, 현재 국가의 허가 없이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구금과정에서 신체 및 언어상의 폭력 뿐 아니라 고문과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 탈북자 인터뷰에 의하면, 한 수용소에 5천에서 1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함께 수용되어 있으며, 거의 매일 시체가 실려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4) 개선방안

인권감시협회의 위 보고서는 북한인권 개선방안으로 북한과 중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모든 주민들의 자유로운 국외여행을, 특히 굶주림 해결을 위한 여행일 경우 그 여행의 자유를 허가해야 하고, ▷연좌제를 통한 처벌을 중단해야 하며, ▷범죄자 및 죄수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중단해야 하고, ▷국제 인권 사찰을 허용해야 하며, ▷원조 지원국의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중국은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해야 하고,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해 난민고등판무관과 협의에 착수해야 하고, ▷중국인과 결혼한 북한 여성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한 역할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식량지원을 지속해야 하고, ▷경제지원과 함께 국제수준의 모니터링을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식량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해야 하며, ▷중국으로 하여금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경에서의 접촉을 승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4) 미 국무부의 연례 세계 각국의 인권 보고서(2008)²⁵⁾

미 국무부가 매년 펴내는 「세계인권실태 보고서」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인권실태를 조사·기술하는 보고서로 시민적·정치적 권리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2008년 보고서에서 서술되고 있는 북한인권도 자유권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1) 연구범위

미 국무부의 연례 세계인권 보고서의 연구범위는 ▷인간 존엄성, ▷시민적 자유의 존중, ▷정치적 권리의 존중,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노동권 등 크게 다섯 개의 영역으로 설정하고 노동권을 제외한 각각의 영역 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다루고 있다.

인간 존엄성과 관련하여서는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 ▷실종,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형무소 및 수용소 상황, ▷체포 또는 구금, ▷인신과 주택, 서신의 비밀 침해 등을 다루고 있다.

시민적 자유의 존중과 관련된 권리에서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인터넷 자유, ▷학문의 자유 및 문화행사,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회적 학대 및 차별 등을 다루었다.

정치적 권리의 존중 면에서는 ▷국민의 정부 교체권,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여성, 아동,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기타 사회적 학대 및 차별 등을 다루었다.

(2) 연구방법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는 면접조사와 문헌분석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북한인권의 경우 면접조사는 주재국 미 대사관이 실시한 선교사·탈북 난민·망명자들의 증언이 바탕이 되었고, 문헌분석에는 언론보도와 관련 비정부기구의 보고서가 활용되었다. 그러다보니 이 보고서에는 국내의 주요 북한인권단체의 보고서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3) 실태평가

25) 「2007 인권현황보고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2008년 12월 11일), http://korean.seoul.usembassy.gov/special_reports.html (검색일: 2008년 12월 11일).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 북한 인권은 “극히 열악한 수준이며”, “심각한 인권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래는 보고서의 일부이다.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실태 평가를 살펴보면, 북한에서는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이 수없이 보도되고 있다. 예컨대, 평안남도에 소재한 공장의 공장장이 자신이 공장 지하에 설치한 13대 전화기를 사용해 국제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15만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기장에서 총살집행단에 의하여 처형되었다고 남한의 한 비정부기구가 전하였다. 외국인 피랍사건과 관련하여 북한 정부는 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일본인 이외, 루마니아, 태국, 그리고 그 외 다른 국가의 국민들도 해외에서 북한에 의해 피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와 관련하여서는 고문 및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이 다수 보고되었다. 북한 내부에서 보원요원들은 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주민들을 재판도 거치지 않고 체포, 이송하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 명이 범죄 용의자로 지목될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구속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적 자유 존중의 실태 결과를 보면, 북한 헌법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사실상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 엄격한 국내 언론 검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정부방침에 벗어난 보도는 용인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사용의 자유는 고위 관리와 특별히 선별된 소수의 대학생 등 기타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학문의 자유 또한 엄격히 제한되어 왔으며, 예술작품 및 학술 문헌에 대한 접근도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헌법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의 사전승인 없는 모든 집회 및 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앙의 자유 또한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정부는 정부와 연계된 관인단체가 감독하는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종교의 자유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정치적 권리 존중의 실태를 보면,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정부나 지도부를 평화적으로 교체할 권리가 없다. 정권 내 정치구도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는 거의 전무하며,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수일간의 회기를 통해 당 지도부가 제출한 결의안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거수기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해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학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들에 대한 강간과 강제 낙태의 자행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동들은 출신성분 및 가족 구성원의 범

죄로 인해 연좌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전통적인 사회규범에 따라 신체적 장애를 지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실태를 보면, 헌법은 단결권을 보장해주고 있으나, 실제로 정부에서 설립한 노동단체를 제외하면 그 밖의 다른 단체는 알려진 바가 없다. 북한의 노동자들에게는 단체 행동권 및 교섭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등의 경우,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공단의 노무관리와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북한의 법률은 강제노동 및 의무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방학 기간 중에 모내기 등 무급노력봉사에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을 투입할 뿐 아니라, 거리의 젊은이들을 차출하여 강제로 농장노동을 시키기도 한다. 북한 기업의 직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북한 정부와 외국 기업 간의 약정 하에 해외에 파견된 경우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겪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계약노동자들의 고용주는 북한 정부에 임금을 지급하며,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의 임금을 수령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며, 해당 계약 노동자들은 북한 정부 관리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 숙소와 근무지를 제외한 다른 장소로의 이동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4) 개선방안: 언급 없음

5) 미 국무부의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²⁶⁾

미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해 매년 「연례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한을 매년 ‘특별 우려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1) 연구범위

미 국무부의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는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실태에 한정하여 논

26) 「2008국제종교자유보고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2008년 9월 19일), http://korean.seoul.usembassy.gov/special_reports.html (검색일: 2008년 12월 11일).

의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종교인의 분포, ▷종교의 자유 상황, ▷사회적 박해와 차별 등을 다루고 있다.

(2) 연구방법

미 국무부의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는 지난 10년 간 수집된 인터뷰, 언론보도, 비정부기구의 보고서, 선교사·탈북 난민·망명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종교 자유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가능한 경우 최근 북한을 방문한 이들의 증언과 북중 국경에서 활동 중인 비정부기구 대표들의 보고가 추가된다. 2008년 보고서의 연구대상 기간은 2007년 7월 1일~2008년 6월 30일까지이다.

(3) 실태평가

미 국무부의 위 보고서는 북한을 “진정한 종교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먼저, 북한 헌법은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또한 종교자유에 대한 제한 및 박해 면에서 북한 정부는 정부의 공식승인을 얻은 집단을 통제하는 것 이외에도 조직적 종교 활동을 억제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종교적 자유는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종교적 신념에 대한 박해는 매우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보고서의 조사기간 중 2003년 망명한 사람의 증언을 포함한 남한의 언론은 중국내 교회에서 도움을 받은 북한 주민은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투옥, 기소 없이 장기간 억류, 고문, 또는 처형 등의 가혹한 처분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으로 인해 사회적 박해나 차별을 받는다는 보고는 없으나, 실제 그런 사례가 없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4) 개선방안: 언급 없음

3. 대안적 실태조사 양식

1) 선행 실태조사 평가

이상 살펴본 9개 기관의 11개 북한인권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았다. [표 3-1]은 이들 보고서를 연구범위, 연구방법, 실태평가, 개선방안 등 네 영역별로 요약한 것이다. 이상 살펴본 보고서들을 네 측면으로 간단한 평가를 해보도록 하자.

연구범위는 국제인권규약상의 인권 분류와 북한인권의 현실을 감안하여 설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국제인권규약에는 각 분야별 세부 내용도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의 범위 및 논의 순서를 통일할 수 있어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통일연구원의 연구범위 분류가 가장 적절해 보인다.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는 현재 북한의 국제인권규약 가입 현황과 북한의 주요 인권실태를 반영하여 자유권, 사회권, 여성 및 아동의 권리를 북한 내 인권 범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수자 권리에 장애인 권리를 추가하여 논의하고 있고, 사회권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생존권을 별도로 다루어 북한의 긴급한 인권 실태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탈북자들에 대한 면접 및 설문조사와 선행연구 분석이 기본적인 연구방법이자 실제 대부분의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북한인권 실태조사는 현지 접근이 어렵다는 점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보고서 내용이 편향, 중복, 과장, 무시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연구범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것 외에도 연구방법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간접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탈북자 증언에 대한 교차분석과 북한 현지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노력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차분석을 통해 간접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위 많은 보고서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북한 현지상황을 직접 파악하려는 ‘좋은벗들’의 시도이다. 북한 사람이나 북한 사정에 밝은 사람을 통한 북한 내의 실태는 좋은벗들의 국영문 기관지 <오늘의 북한소식, North Korea Today>에 의해 외부에 전달되고 있다. 다만, 이런 조사 방법도 사실 전달 과정이나 정보원의 신뢰성이 전달 내용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3-1] 각 기관별 북한인권 보고서의 특징

구분	연구범위	연구방법	실태평가	개선방안
국가인권위 보고서	사회권, 자유권	면접조사 설문조사		분야, 행위자, 단계별 제안
통일연구원 백서	사회권, 자유권, 여성, 아동	면접조사 비교분석		언급 없음
북한인권정보센터 보고서	생명권, 생존권 등 16개 분야	면접조사 통계분석 문헌분석	자유권 중심	언급 없음
좋은벗들 보고서	사회권, 자유권	현지(간접)조사 면접조사 비교분석	생존권 중심 ('04)	행위자별 제안 ('04)
대한변협 백서	사회권, 자유권	면접조사 문헌분석	자유권 중심	일부 분야 제안
유엔 보고관 보고서	사회권, 자유권, 여성, 아동 등	현장조사 면접조사		행위자별 제안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	시민적 권리, 정치적 자유 등	관련국 주재 대사관의 보고서	자유권 중심	언급 없음
미 국무부의 종교자유 보고서	종교의 자유	자체 입수 정보와 비정부기구 보고	종교의 자유	언급 없음
인권감시협회 보고서	탈북자 인권	면접조사	자유권 중심	행위자별 제안
국제사면위원회 보고서	식량권, 탈북자 인권	면접조사	생존권 중심	행위자별 제안

전 반 적 으 로 열 약 함

북한인권 실태에 관해서는 모든 보고서가 열악하거나 심각하다가 평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 영역의 차이 혹은 연구방법의 차이를 초월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하다. 그럼에도 특정 영역의 인권(가령, 종교의 자유, 생존권 등)에 치중하여 실태를 논하는 경우, 그 영역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의미가 있는 반면 북한 인권 전반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가져다 줄 수 있

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 실태보고는 객관성이 가장 큰 가치라고 할 때 객관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보고서가 취한 지역별, 시기별, 기관별 인권침해 실태 분석은 객관성을 기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인권 실태 분석이 북한인권이 열악하다는 사전 판단을 입증하거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는 일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 실태분석의 두 번째 가치로 공정성 혹은 균형성을 꼽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일부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실태 조사 범위가 자유권에 치중해있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모든 보고서가 인권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위 기관들의 조사결과의 일부가 ‘백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인권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논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조사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가급적 그 둘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럴 경우 인권개선 방안은 원칙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행위자, 분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더 좋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용역보고서와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일부 비정부기구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각각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참고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2) 대안적 실태조사 양식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인권 조사를 위한 대안적 양식은 기존 연구 결과의 성과를 반영하고 그 한계를 보완하면서 개발할 수 있다. 아래 [표 3-2]에서 보듯이 북한인권에 관한 대안적인 조사 양식은 연구범위, 연구방법, 실태평가, 원인 분석, 개선방안 등 다섯 가지를 구성요소로 하고, 각 측면별로 세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표 3-2] 대안적인 북한인권 조사양식

구성 요소	내 용
연구범위	자유권, 사회권, 생존권, 소수자 인권, 3세대 인권 등
연구방법	현지조사, 면접조사, 비교분석, 구술연구 등
실태평가	포괄성과 구체성의 결합
원인분석	구조-행위자, 대내-대외 요인, 정치-경제적 요인 등 각 차원별
개선방안	종합적 개선전략 하의 영역, 단계, 차원, 행위자별 과제

먼저, 북한인권 연구범위는 특정 분야에 관한 연구목적에 따른 실태조사를 제외한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의 실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 범위에 있어서 특정 분야의 인권에 치우침 없이 북한인권의 전 분야를 다룸으로써 인권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그리고 상호연관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북한 인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도 가능해져 원인 규명과 개선방안 논의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자유권, 사회권을 두 축으로 하여, ▷북한이 가입한 분야는 물론, ▷가입 및 비준이 요구되는 분야, ▷북한인권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분야, ▷존재하지만 그동안 소홀히 다뤄진 인권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생존권, 장애인 및 노인 인권, 평화권, 발전권, 환경권, 자결권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인권영역의 분류는 통일연구원의 백서와 같이 각 분야의 국제인권규약이 제시하고 있는 바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연구방법 문제는 객관성과 균형성을 보장함으로써 인권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연구방법상의 우열은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목적 달성에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측면에서 선택,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탈북자 면접 및 설문 대상의 적정 규모 설정과 조사 기법의 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 응답 내용을 선행 조사 결과와 교차 분석함으로써 신빙성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인권 실태파악조사가 불가피하게 탈북자 증언에 크게 의존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동안 누적된 정보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고려해 보다 개선된 연구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현지조사, 교차분석, 추이분석, 구술연구 등이다. 특히 ‘좋은벗들’의 예에서 보듯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관련 실태를 파악하려는

노력과 그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사례처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 침해 유형과 추이를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 탈북자와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깊이 있고 진솔한 증언을 끌어내는 구술연구도 대안적 연구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런 방법들을 보다 널리 활용할 수 있다면 실태의 정확성과 함께 실태의 범위와 시간, 성, 연령별 비교 분석 등 심층적인 실태파악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북한인권 실태평가는 기본적으로 포괄성과 구체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타당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포괄성이란 실태 평가가 북한인권 전체를 파악할 정도의 범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뜻하고, 구체성이란 실태 평가가 시기, 지역, 성, 세대, 계층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부 특징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북한인권 실태평가는 넓이와 깊이를 동시에 갖출 때 가장 의미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실태평가는 실태조사에 비해 조사자의 시각 혹은 견해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인권 실태 평가는 주로 인권침해의 정도와 규모 등 형태적인 측면에 치우친 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평가 작업은 포괄성과 구체성을 조화시켜 수행하고 그동안 소홀히 다뤄진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넷째, 그동안 북한인권 조사연구에서 원인분석이 누락되거나 선택적으로 다뤄진 것이 사실이다. 이런 평가는 위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보고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간의 작업이 인권 '실태' 파악에 주안점이 있었던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제 북한인권 조사연구가 실질적 해결에 이바지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다면, 체계적인 원인분석이 필수적이다. 사실 원인분석 작업은 북한인권 실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도 유용하다. 물론 그동안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원인분석이 없지 않았지만 대개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선택적으로 다뤄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원인분석의 결과이지 체계적인 원인분석의 가치를 무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앞으로 원인분석은 편향적, 현상적 수준을 넘어서 구조-행위자, 대내-대외적 요인, 정치-경제적 요인 등 체계적인 논의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모든 북한인권 조사연구가 궁극적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권 개선방안이 실태조사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는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실태조사의 궁극적 목적을 고려할 때 그에 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 앞에서 살펴본 11개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의 절반이 나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그런 점을 말해주고 있다. 특정 연구목적과 연구 여건의 제한

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논의가 개선방안으로 수렴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개선방안 논의에는 논자의 시각과 편견이 개입할 소지가 적지 않으므로 균형성과 현실성을 갖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 개선방안은 종합적 개선전략으로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접근 원칙과 정책 방향에 대한 합의 혹은 전반적인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개선정책, 즉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인권 영역별로 다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단계, 차원, 행위자별 방안을 살려내 보다 입체적으로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IV. 최근 북한인권 실태

앞서 설명한대로 본 연구는 북한인권의 범위를 ① 시민적·정치적 권리(1세대 인권, 자유권), ②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2세대 인권, 사회권), ③ 생존권(식량권), ④ 소수자 인권 등 네 범주로 설정하여 각 범주에서의 인권 실태와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²⁷⁾ 이는 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연관성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북한인권 실태조사 중 부분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 범주 설정은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각각의 고유 영역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인권 실태 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북한인권 개선방안 모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유권은 사회권과 함께 국제인권의 양대 축으로서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가입하고 있다.²⁸⁾ 여기서는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인권침해 분야(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 공개처형, 송환된 탈북자의 처리실태 등)에 주목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에 가입하였으나 사회권은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분야다. 본 연구는 현재 북한의 저발전, 편향된 정책적 관심 등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북한의 사회권을 인권의 총체성과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셋째, 생존권은 북한주민의 전반적 인권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27)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행해 오고 있다. 이 백서는 인권개념의 객관성 도모를 위하여 북한이 가입한 4대 국제인권협약(자유권, 사회권, 아동권, 여성차별철폐 협약)을 인권 실태 분석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인권문제를 소수자 인권으로 다루지 않고 자유권 내에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 인권 문제를 소수자 인권 가운데 하나로 다루면서 자유권뿐만 아니라 사회권을 포괄하여 분석한다.

28) B규약과 관련, 북한은 1997년 8월 제49차 유엔 인권소위원회가 북한인권 관련 결의를 채택하자, 동 규약 탈퇴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유엔 기구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의 규약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도 1999년 12월 2차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성호,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의무이행 현황,”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서울: 2008, 대한변호사협회), pp. 47~52.

서 중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수자 인권으로서 북한이 관련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아동권리, 여성차별철폐 분야와 함께 장애인 인권 실태와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최근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가운데 가장 최근에 북을 탈북한 사람들 위주로 30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과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 탈북자 93명(2009년 1월 9일 현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²⁹⁾ 하나원에서 여성 탈북자 9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자 가운데 출신지역은 함경북도가 55명, 평안북도 3명, 함경남도 8명, 평안남도 3명, 량강도 14명 등으로 국경지역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³⁰⁾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와 남한 사회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자 30명 가운데 함경북도(20명)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 10명, 40대 12명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탈북년도는 2008년 탈북자가 8명, 2007년 탈북자가 6명, 2006년 6명 등이다. 그리고 남성 14명, 여성 16명이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신상명세는 다음의 [표 4-1]와 같다.

[표 4-1] 심층면접 대상자 신상명세

구분	나이	성별	직업	당원유무	탈북일	입국일	출신지역
HR01-081001	40대	남	노동자	○	2008.04	2008.05	함북
HR02-081001	40대	여	사무원	×	2004.10	2006.09	함북
HR03-081016	40대	남	작가	×	2006.08	2006.12	량강도
HR04-081017	40대	남	보안원	○	2007.04	2007.04	황남
HR05-081017	40대	여	농장원	×	2000.02	2006.06	함북
HR06-081023	40대	여	부기원	×	2007.03	2008.01	함남
HR07-081024	30대	남	지배인	○	2008.01	2008.05	함북
HR08-081024	30대	여	노동자	×	2008.02	2008.05	함북

29) 심층면접자의 설문조사 29명(1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음), 하나원 여성 탈북자의 설문조사가 93명으로 전체 122명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30) 이밖에 황해북도 1명, 황해남도 1명, 강원도 1명, 개성 2명, 평양 4명, 무응답 1명 등이다.

구분	나이	성별	직업	당원유무	탈북일	입국일	출신지역
HR09-081030	40대	남	번역가	○	2008.01	2008.04	함남
HR10-081031	30대	남	노동자	×	2008.01	2008.03	함북
HR11-081112	40대	여	초급당비서	○	2006.10	2007.03	평양
HR12-081112	40대	남	보위부 외화벌이	출당	2008.02	2008.06	함북
HR13-081114	60대	남	의사	○	2007.06	2007.11	함북
HR14-081122	30대	남	의료기수리공	×	2001.05	2003.08	함남
HR15-081126	20대	여	선반공	×	2006.10	2007.03	함북
HR16-081126	40대	여	발효기사/ 단고기국집운영	○	2007.10	2008.01	함북
HR17-081127	40대	남	교원	×	2004.05	2007.03	함북
HR18-081128	40대	여	교원	×	2007.10	2008.07	함북
HR19-081208	30대	여	노동자/장사	×	2006.01	2007.03	함북
HR20-081212	40대	여	교원	○	2005.05	2005.05	함남
HR21-081217	20대	여	학생	×	2003.05	2008.01	함북
HR22-081223	30대	여	노동자	×	1998.07	2007.03	함남
HR23-081224	30대	남	노동자	×	2006.01	2006.04	함북
HR24-081224	30대	남	미술가	×	2006.07	2006.11	함북
HR25-081226	30대	여	주부(부양)	×	2008.02	2008.05	함북
HR26-081227	60대	여	사무원	×	2008.04	2008.05	함북
HR27-081230	20대	여	사무원	×	2007.09	2008.03	함북
HR29-090116	50대	여	노동자	×	2004.02	2004.07	함북
HR30-090119	30대	남		×	2004.07	2008.02	평양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 가운데 함경북도 출신은 75명, 함경남도 출신 12명, 량강도 15명, 평안북도 4명, 평안남도 3명, 황해북도 1명, 황해남도 3명, 강원도 1명, 평양 5명, 개성 2명, 무응답 1명 순이다. 연령별로는 20대 30명, 30대 55명, 40대 26명, 50대 5명, 60대 3명, 무응답 3명 등이다.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자의 출신지역이 특정 지역(함경북도)에 편중되어 있어, 본 조사결과는 북한의 인권상황 전반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현 시점에서 본 조사결과를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이해한다면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실태 I: 시민적·정치적 권리

북한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실태와 변화 추이 분석의 기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으로 한다. 북한은 1981년 9월 이 조약에 가입하였고, 1983년 10월 24일과 1984년 4월 2일에 각각 최초 보고서(CCPR/C/22ADD3)와 보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규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1999년 12월 25일 제2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북한의 자유권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여러 보고서 및 연구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³¹⁾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최근 변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자유권 실태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1) 생명권(사형제도)

국제인권규약(B규약)에는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제6조 1항)고 규정하고 있고,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과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 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해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해서만 집행”(제6조 2항)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형법에서는 5가지 범죄행위(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 등 반국가범죄와 반민족범죄, 그리고 고의적 중살인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9년 개정된 형법에서는 사형선고 제한연령을 1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리고 2004년 개정된 형법에서는 사형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³²⁾

북한은 법·제도적 측면에서 사형 조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국내 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에 의하기 보다는 여전히 포고문, 지시문 등을 통해 사형이 집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31) 최근의 연구로는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2008□□, 대한변호사협회의 □□2008 북한인권백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1999년 북한의 제2차 보고서 내용과 기존 논의를 토대로 북한의 자유권 상황을 평가한 연구로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 (서울: 한울, 2007), pp. 99~109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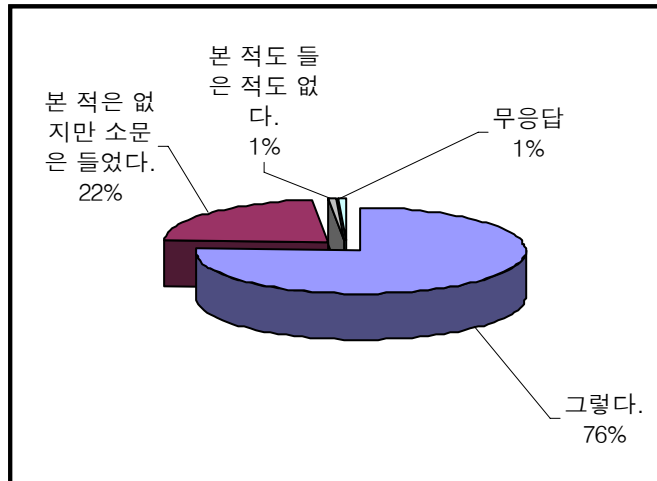
32)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8□□ pp. 40~42.

2008년 1월 5일, 중앙당 조직부에서 ‘올해를 인신매매가 없는 해로 만드는 것’에 대한 지시문을 국경지역에 내려 보냈다고 한다. 새해부터는 인신매매를 무조건 엄벌 하도록 했는데, 단 한번이라도 인신매매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되면 무조건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한다.³³⁾

북한에서 생명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는 공개처형이다. 유엔에 제출된 문타본 보고서에서도 공개처형을 가장 염려하는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³⁴⁾ 일반적으로 공개처형은 미리 각 단체에 통보하여 참가를 유도하고, 통보한 일시에 많은 대중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실시된다. 공개처형 과정은 군중이 모인 자리에서 죄인의 경력과 죄명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처형한다. 처형방법은 총살형이 사용되고 있다.³⁵⁾

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개처형을 직접 본 경우가 93명(76%)이나 됐다. 공개 처형의 죄목을 보면, 반체제 행위, 외부정보 유통, 국가기물 절취 및 밀매 행위, 소나 염소 등의 절도 행위, 인신매매, 살인죄 등이다.

20. 공개처형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33)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107호(2008. 1.30).

34) Vitit Muntarbhorn,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 people’s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Situation that Require the Council’s Attentio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HRC/7/20, 15, February 2008. p. 10.

35) 교수형이 사용되었다는 증언도 있었지만 최근 탈북자들은 한결 같이 모두 총살형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수형은 과거에 총살형과 함께 사용되었던 방식인 것 같고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러한 북한의 공개처형과 관련해 국내외의 주요 비판은 우선 공개처형은 북한 형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형법에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경제난에 의해 발생한 범죄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형집행 절차에서도 북한 당국은 형사소송법과 판결판정집행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³⁶⁾

그런데 심층면접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비해 2000년대 들어 공개처형 빈도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층인터뷰를 한 탈북자들은 대체로 2000년대 들어서도 공개처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빈도수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심층면접 대상자들 대부분이 국경지대에 거주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증언을 일반화할 수 없겠지만 통일연구원의 □□백서□□에서도 그 빈도수가 줄어들었음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해 공개처형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개처형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우리 온성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에는 없었다.”(HR23-081224)

“90년대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총성을 많이 울렸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에는 적어졌다. 2년에 한번 정도로 이루어진 것 같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07년 9월이었다.”(HR16-081126)

다른 한편으로는 공개처형의 빈도수가 감소했지만 대신에 비공개 처형 형태로 사형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산에서 생활하던 한 여성 탈북자는 2000년대 들어 자기 지역에서 공개처형을 보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 처형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³⁷⁾

공개처형을 시행하는 범죄행위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36) 2004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보면, 사형은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이 검사의 참가 하에 집행하되(제421조, 제422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19조). 1998년 개정된 판결판정집행법에는 사형의 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을 받은 기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24조).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8□□, pp. 43~44.

37) HR 06-081023, 2007년 3월 탈북, 면접일: 2008년 10월 23일. 이러한 비공개처형이 법제도적 조건을 충족시켜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서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들이 증언한 최근 시행된 공개처형의 사례를 보면, 정치범보다는 간부들의 부정부패, 살인, 인신매매, 마약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사형한 거는 기본 인신매매다. 그 다음에 마약. 이 2개는 기본적으로 총살이다. 2008년 2월에도 이 죄목으로 총살했다.”(HR01-081001)

“북한에서 제일 무거운 형기는 중국에 여자를 팔아넘기는 인신매매이다. 지금은 세 명 이상이면 무조건 총살이다.”(HR12-081112)

인신매매에 대한 공개처형은 국경지역에서의 탈북이 급증하면서 특히 여성 탈북이 증가하면서 이를 단속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대부분의 심층면접자들은 과거에는 여성들을 속여 중국에 팔아넘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여성들이 원하고 있다면서 중국내에서의 인신매매와 북한 내에서의 인신매매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 해주에서 보안원으로 근무했던 한 탈북자에 의하면, 처형에는 ‘형법적 처형’, ‘방침적 처형’, ‘포고문에 의한 처형’, ‘방침에 의거한 6.4 그룹빠, 1092 그룹빠 등 방침에 의해 특정 사례(외부정보 유통) 단속과 처형’ 등이 있다고 한다.³⁸⁾ 여기서 방침적 처형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형법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중앙검찰소를 거쳐 중앙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는 법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증언에 의하면 공개처형의 경우에도 북한사회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령체제의 특성상 수령의 지시는 범위에 균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2000년대 들어서도 포고문이나 방침, 지시 등에 의해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의식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그 빈도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국제인권규약(B규약)에는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

38) HR 04-081017, 2007년 4월 탈북, 면접일: 2008년 10월 17일.

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 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9조 2항에서는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 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개정된 헌법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제79조)고 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2004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1999년 형사소송법과 달리 ‘수사(제6장)’와 ‘예심(제7장)’을 독립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예심의 임무와 기간, 피의자의 심문, 체포와 구속처분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사과정과 예심과정에서 범죄혐의자의 인신 구속과 그 기간을 엄밀하게 하는 조치를 보완하였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는 체포와 구속절차를 법률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체포는 수사원과 예심원이 집행하되 체포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도록 하고(제180조), 구금과 관련해 “체포, 구속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체포, 구속의 사유와 구속 장소를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알리도록(제183조) 하고 있다. 이밖에 여러 조항에 걸쳐 고문과 다른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 개정된 헌법에서 체포, 구인, 압수, 수색시의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권 침해적 요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수색·압수할 때에는 각각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속처분결정서나 수색·압수결정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수사관과 예심원들의 증거조사, 구속처분, 수색·압수 등의 강제처분 시 재판소가 발부하는 사전영장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범죄수사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와 신체자유 침해 방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전히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⁴⁰⁾

여기서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구금시설에서의 고문이나 가혹 행위, 정치범 수용소, 재중 탈북자의 강제 송환 이후의 인권문제로 나누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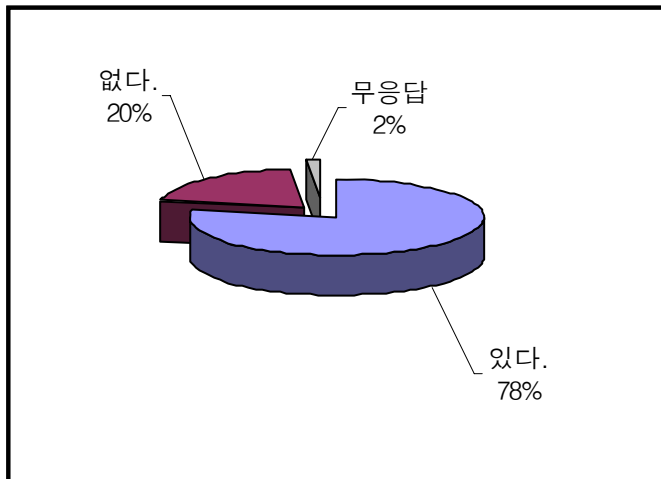
3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평양: 법률출판사, 2004), pp. 841~920. 형법은 위의 책, pp. 784~840 참조.

40)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8□□, pp. 59~60.

(1) 구금시설에서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본 연구에서 심층 면접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북한에서 정당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각종 구금시설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구금시설에서의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5명(78%)이나 됐다.

23. 북한에 있을 당시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북한에서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교화소'에 수감되어 노동을 통한 교정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범이나 강력범 중 교화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인민보안성 교화국에서 관리하는 교화소에 수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밖에 북한에는 법률로 명시된 공식적인 교정 시설 이외에도 관리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의 구금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정치범들은 관리소에 수용되는데, 이 관리소는 정치범수용소로서 통상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구역'으로 불린다.⁴¹⁾ 노동단련대는 경미한 범죄로

41) 지금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한 탈북자들은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안의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대체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으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수용하는 구금시설이다. 형법 제31조에서 노동단련형을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⁴²⁾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은 6개월부터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노동단련형 2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⁴³⁾

집결소는 교화소와 유사한 형태이다. 이곳은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불량아, 사건 계류자 및 탈북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을 재판과정 없이 6개월 내지 1년 동안 공민권을 박탈하지 않고 수용한다. 도 집결소에서는 사건계류자로부터 범행을 시인받기 위해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청진에서 생활하다가 2008년 1월에 탈북한 한 남성은 교화소에서 집단구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당시 교도관이 직접 때리지 않고 수감자 가운데 반장을 시켜 집단구타를 시킨다고 한다.⁴⁴⁾ 중국으로 탈북 했다가 2003년 8월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2004년 6월에 북으로 송환된 한 여성 탈북자는 온성 보위부 구류장⁴⁵⁾에서 한국행을 의심받아 취급(조사)을 받는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 내가 질식했다. 한번 씩 구두 발로 머리를 찰 때마다 작은 방에 피가 분수처럼 뿜어나갔다. 너무 때리니까 단번에 얼굴이 두 배로 불었다. 얼굴이 불고 턱이 찢어지고 갈비에 금이 갔다.”(HR05-081017)

2006년 청진에 있는 도 집결소에서 조사를 받고 한 달 동안 있었던 여성은 집결소에서의 구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릎 꿇고 앉아서 엉덩이 얻어맞고, 잔등 얻어맞고 온 몸을 맞아 시퍼렇게 멍들었다. 그리고 보름 동안이나 씹지도 못하고 입을 벌리지도 못했다.”(HR16-081126)

42)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장소’란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집결소와 노동단련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p. 790.

44) HR 10-081031. 탈북일: 2008년 1월 탈북, 면접일: 2008년 10월 31일.

45) 구류장은 수사와 예심과정에서 인신을 구속하는 곳이다. 구류장은 심문 중인 피소자와 확정 판결을 받은 피의자를 교화소에 보내기 전에 임시 수용하는 시설이다. 이곳에서의 구타와 고문, 굶주림, 여성에 대한 성적 인권 유린 등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탈북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2008년 4월에 탈북한 한 탈북자는 2005년 7월 다섯 명을 도강시킨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체포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의해 체포되지 않았다고 한다.⁴⁶⁾ 그런데 보안원이었던 탈북자는 2000년 이후에는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덜 하고, 체포와 구인 구속, 수사과정, 예심 등을 진행할 때 법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말한다.⁴⁷⁾

이렇게 엇갈린 증언이 나오는 것은 북한에서 정치범과 경제범죄를 비롯한 일반 사범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이원체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정치범은 국가안전보위부가, 일반 사범은 인민보안성이 담당하고 있다. 최근 탈북한 사람들의 경험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탈북 했다가 잡혀 온 사람들로, 이들을 처음 조사하는 곳이 보위부라는 점에서 보안원이었던 탈북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⁴⁸⁾ 물론 일반사범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2000년 이후 일반사범으로 체포 구금되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보안원의 말대로 형식적이거나 법과 제도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보위부 내의 고문이나 가혹행위와 인민보안성에서의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북한당국이 법적, 제도적 절차에 따라 수사와 예심, 체포와 구속, 그리고 재판 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류장이나 형을 확정 받고 수용되는 구금시설의 열악한 생활조건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증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 정치범 수용소

북한에서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는 관리소는 통상 ‘통제구역’ 또는 ‘특별독재대상 구역’으로 불린다.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심의와 재판절차를 거쳐서 교화소에 보내고 있으나, 정치사상범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인 검찰소나 재판소에서의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가 비공개, 단심제로 형벌을 결정하고 관리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거나 수용소 관리자 및 그 가족으로 생활한 경험이 있는 탈북

46) HR 01-081001, 2008년 3월 탈북, 면접일: 2008년 10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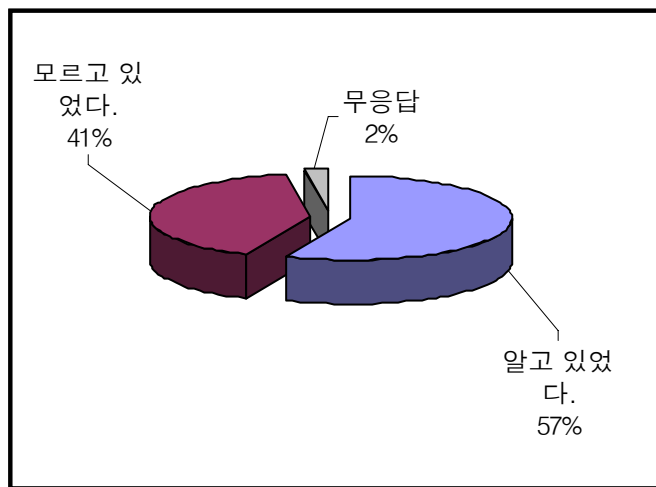
47) HR 04-081017. 그는 체포, 구인, 수사, 예심 과정, 그리고 구금시설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중앙검찰소가 검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가혹행위가 줄었다고는 하나 차디찬 방에 가두고 있는 것부터 가혹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48) 또한 탈북과 관련한 보위부 조사의 강도도 단순 도강인가 아니면 남한행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자들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AI 등 권위 있는 국제인권단체들의 추적으로 그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다.⁴⁹⁾

본 설문조사에서도 북한에 있을 당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69명(57%)이 알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모르고 있었다라는 사람도 50명(41%)이나 되었다.

22. 북한에 있을 당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치사상범으로 몰리면 일체의 재산을 몰수당한 후 야간에 전 가족과 함께 혹은 당사자만을 수용소로 이송하고, 이때 아무런 사전 통보나 재판절차 없이 끌려가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웃 혹은 친척까지도 이들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심층면접을 실시한 탈북자들의 경우에도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안의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대체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으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한편, 과거에는 말 한마디 잘못해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1990년대 식량난 이후 불평불만의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말을 잘못해 체포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남한사람 및 기독교인과 접촉하거나 외부의

49) 강철환, □□수용소의 노래□□ (서울: 시대정신, 2005);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안명철, □□완전통제구역□□ (서울: 시대정신, 2007) 등을 참조.

정보를 유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 인신매매에 가담한 자들이 정치범으로 체포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형부가 중국에서 한국행을 기도하다가 체포되어 송환되었는데, 도보위부에서의 취급과정에서 기독교인을 통한 한국행이 밝혀져 온 집안 식구들이 조사를 받았고, 형부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형부가 어느 수용소에 수감되었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HR25-081226)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완전통제구역’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화 구역’이다. 완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로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한다.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결국은 수용소내에서 죽게 된다. 혁명화 구역은 ‘가족구역’과 ‘독신자구역’으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수감되는 정치사상범은 일정기간(1년에서 10년 정도) 경과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출소 시에는 수용소내의 생활상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나온다.⁵⁰⁾ 안명철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중 함남 요덕의 ‘15호 관리소’만이 혁명화 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이분화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완전통제구역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⁵¹⁾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치사상범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우선 공민증이 압류 당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의 기본권을 박탈당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배급이나 의료혜택 등도 중지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 등의 면회나 서신연락도 금지되며, 외부와의 접촉도 철저히 차단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힘든 노동과 굶주림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채 희망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송환된 탈북자 처리 실태

본 심층면접 결과 1990년대 이후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자 이들의 처벌규정이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적 규정에 있어서도 1999년 형법에서는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117조)고 규정하였고, “공화국전복 목적의 탈출행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

50) 1988년부터 1992년까지 15호 관리소(요덕 관리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탈북자(HR28-081230)의 증언.

51) 안명철, □□완전통제구역□□, p.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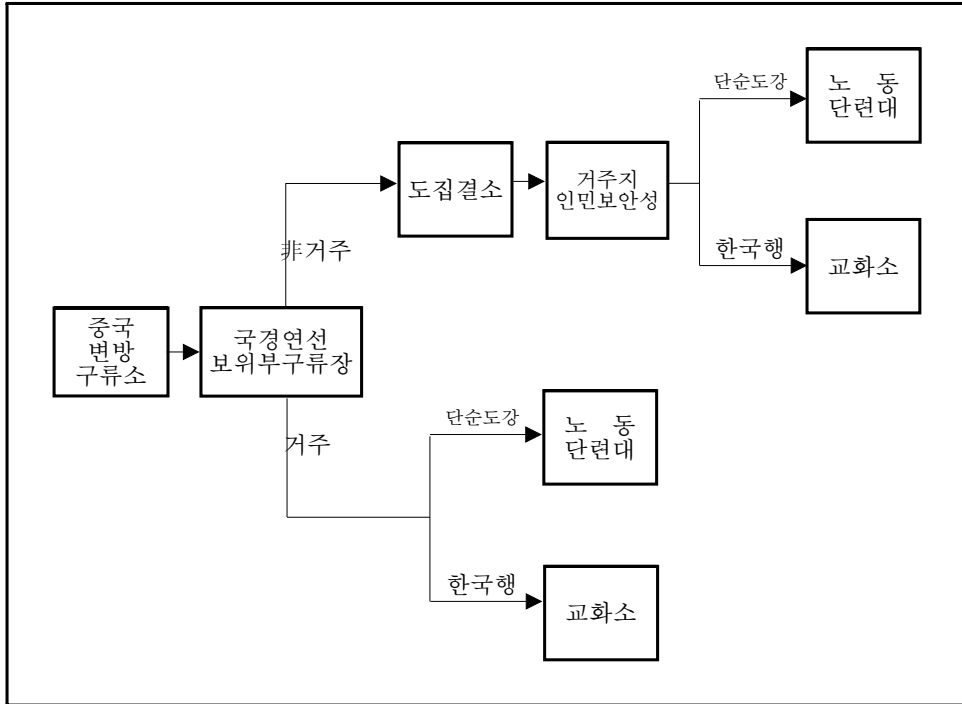
정하고 있었다.⁵²⁾ 그런데 개정된 2004년 형법에서는 단순월경행위에서 규정한 국경을 '넘는 자'의 규정을 국경을 '넘나드는 자'로 규정하고(제233조),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완화하였다. 그리고 제62조에서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조는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경관리부문 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 준 국경출입협조죄의 경우에도 기존의 '2년 이상 7년 이하 노동교화형'에서 2004년 개정된 형법에서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제234조)'으로 대폭 완화하였다.⁵³⁾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된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조사를 받고 송환지역 국가보위부 구류장에서 기본적인 조사와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의 거주 지역으로 이관된다. 그 지역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송환지역 도 집결소를 거쳐 거주 지역 기관(인민보안성)으로 넘겨지고, 그 지역 출신들은 곧바로 지역기관으로 이송된다. 지역기관으로 넘겨지게 되면 재조사 이후 곧바로 석방하거나 노동단련대에 수감되어 노동단련형, 혹은 교화소로 간다. 처벌의 수위는 법의 규정에 따라 단순 도강의 경우에는 1~6개월 정도의 노동단련형을 받고 노동단련대에서 생활하게 된다. 남한행 혹은 기독교인과의 접촉 사실이 밝혀지면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되어 재판과정을 거쳐서 교화소나, 보위부 차원에서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다고 한다([그림 4-1] 참조).

52) 통일연구원, □□2008 북한인권백서□□, p. 287.

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pp. 841~920. 형법은 위의 책, pp. 784~840 참조.

[그림 4-1] 송환된 탈북자의 처리 절차



※ 유의사항: 시기나 사건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음.

심층면접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송환지역에 따라 온성, 회령, 무산, 신의주(단동으로부터 송환)지역의 보위부 구류장에 수용되어 1차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를 받기 전에 우선 알몸 수색, 소지품 검사, 위생 검사를 거친 후 수용하게 된다. 구류장에서 남녀는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송환규모에 따라 분리 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은 몸 수색과정에서 중국에서 가져온 돈을 압수당하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하고 있었다. 이에 북한 조사기관은 돈을 찾아내기 위해 여성의 경우, 자궁 검사를 하거나 발가벗긴 채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시키거나, 용변 검사를 하기도 한다고 한다. 여기서의 조사를 통해 단순도강인가 남한행인가(그리고 기독교인과 접촉 여부)를 확인 한 후 그 지역의 '도 집결소'(남한행인 경우에는 보위부 도 집결소)로 보내진다. 여기서 그 지역 혹은 근거리 지역의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거주지 인민보안성으로 단기간에 이관되어 다시 조사를 받고 형을 받게 되지만, 거리가 먼 지역 출신의 경우에는 신변 인수 기간이 길어져 도 집결소 수감이 장기화되면서 불

결한 수감시설과 고된 노동, 부족한 배급량 등으로 인한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심층면접 대상자 가운데 송환되어 첫 조사를 받은 곳이 온성 보위부 구류장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증언을 통해 온성 보위부 구류장 내부와 조사실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2]와 [그림 4-3] 참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몸수색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고, 조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제송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탈북자들은 사안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두 송환된 이후 1차 조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 행위를 당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옷을 다 벗긴 후 벽을 향해 무릎을 꿇고 뒷짐을 지고 앉아 있게 한다. 간수 두 명이 와서 옷을 다 뜯는다. 돈 감춘 게 있는가 해서, 혁띠 빼고, 그 다음에 팬티 고무줄도 다 빼다. 목을 감을 수 있는 끈이라는 건 다 빼는 모양이다... 조사와 수감 과정에서 초절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때린다. 사람이 맞아서 완전히 녹초가 된다.”(HR09-081030)

“구류장에서 봤는데 임신부 열여섯 살짜리 애가 임신해서 들어왔다. 거기서 ‘너 왜 중국새끼를 데리고 왔어’ 하면서 발로 막 차고 그랬다. 그래서 그 애가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 갔다.”(HR 29-091016)

심층면접에 의하면 2000년대 이후 단순 도강인 경우에 조사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 행위가 덜하지만, 구류장 내에서의 생활 과정에서 엄격할 규율 속에서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구타나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도강한 경우, 남한행이나 기독교인과의 접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심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타본 보고서에서도 대체로 관대한 처우를 받지만 반복적으로 월경한 사람, 북한 당국이 적대적으로 간주하는 정치적 관계를 가진 사람, 또는 선교사에게 도움을 청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재교육, 강제노동, 감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⁵⁴⁾ 북한 당국이 단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있지만, 2007년 이후 탈

54) Vitit Muntarbhorn,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 people's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Situation that Require the Council's Attentio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HRC/7/20, 15, February 2008. pp. 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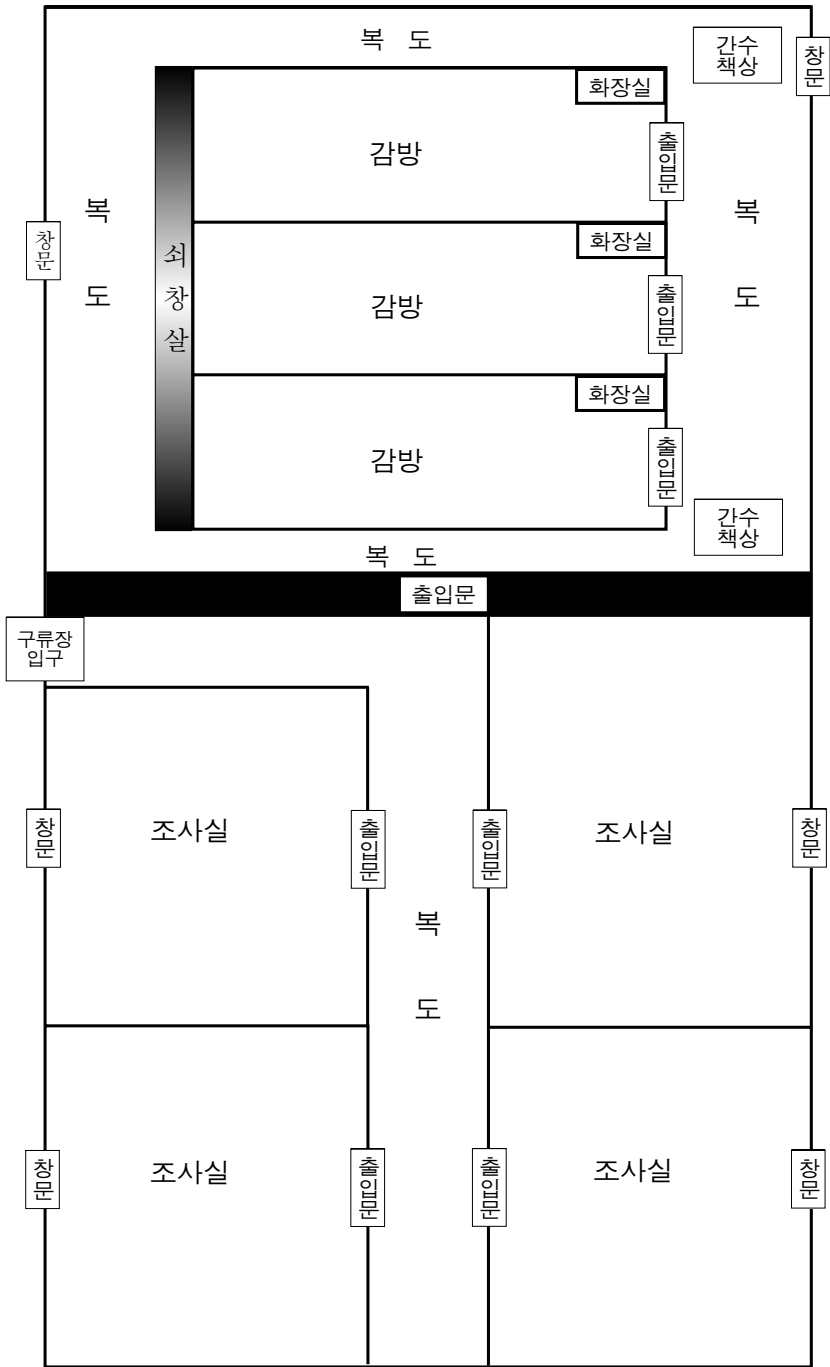
북자에 대한 처벌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⁵⁵⁾ 그런데 본 조사에서 2007년 이후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잡혀 북으로 송환되었던 한 탈북자의 경우(HR 09-081030)에는 2007년 이전처럼 노동단련형 6개월을 받았다.⁵⁶⁾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차후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5) 좋은 벗들은 2007년 3월부터 송환된 탈북자의 형기가 최고 5~7년까지 높아졌다고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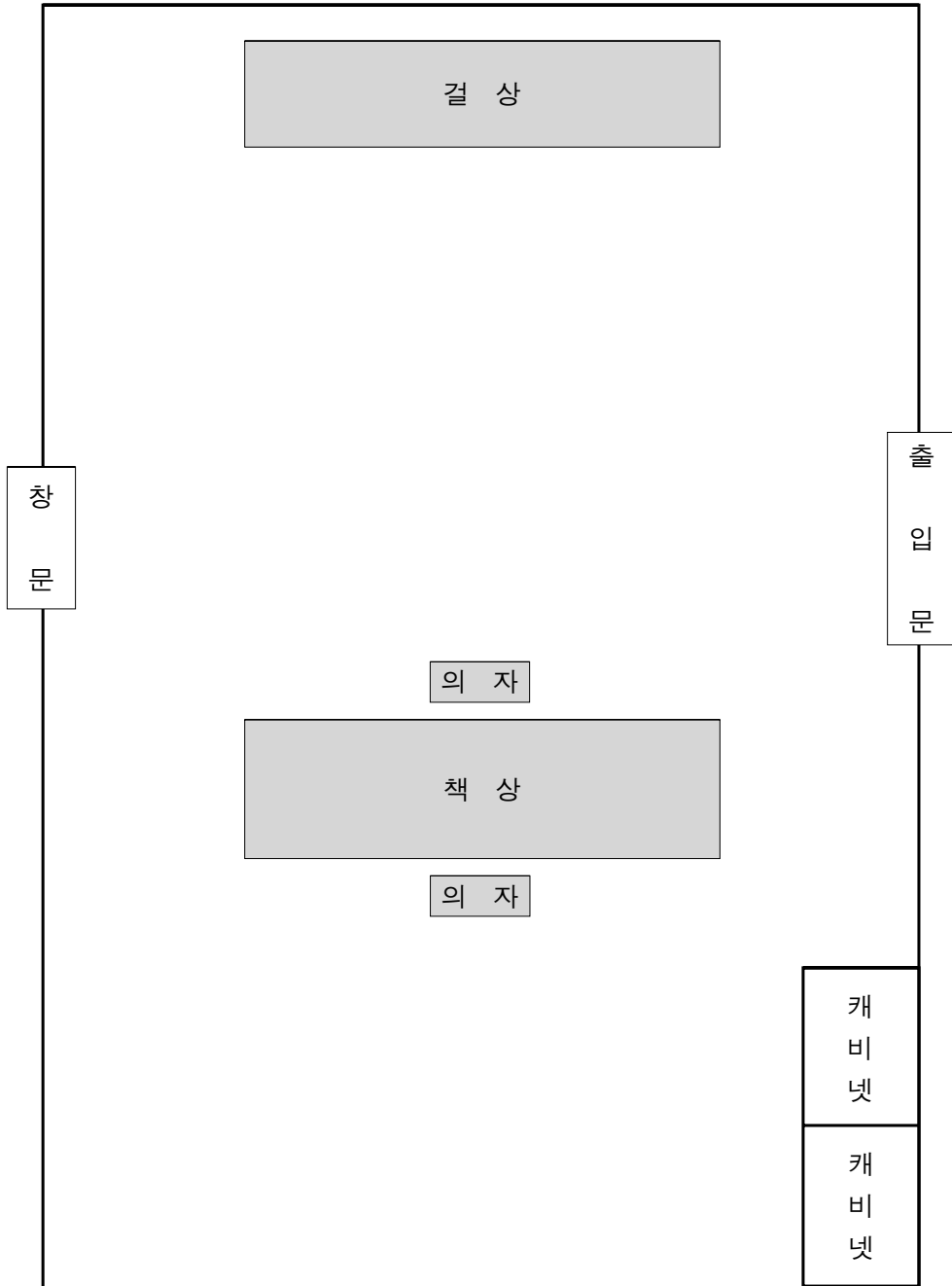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 114호(2008. 03. 05).

56) 이 탈북자는 2007년 5월에 탈북했다가 일주일 만에 중국 연길에서 체포되어 6월에 송환되었다.

[그림 4-2] 온성보위부 구류장 내부 도면도



[그림 4-3] 온정보위부 구류장 내 조사실 도면도



3)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국제인권규약(B규약)은 제14조에서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재판소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공개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피소자와 피심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불공정한 재판절차와 판결에 대해서는 신소(민원)와 청원제도를 두어 법 적용이 공정하게 심의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당국도 제도적으로는 이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과정에서 법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은 평가하고 있다.

우선 근대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아 왔다. 이에 북한은 2004년 개정된 형법에서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제6조)”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수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동시에 형법 조문 내에서 자의적인 법률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은’ 등의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명확화를 도모하였다. 그런데 심층면접을 했던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형법을 비롯한 각종 법적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으며, 법의 존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거의 모든 탈북자들은 법의 규정보다는 수령과 당의 결정과 지시, 방침이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정된 형법을 비롯한 각종 법들의 실제 적용과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고 재판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 5월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하였지만 형사소송법에서 계급노선의 관철을 명시하고 있는 한편,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대학의 법학과 출신 중에서 국가가 지명한다는 증언이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재판절차 과정에서 인권이 보호되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 규탄하는 현지공개재판제도나 노동당의 사법적 통제를 받고 있는 인민참심원제도, 그리고 소위 반국가 범죄를 정치범죄로 간주하여 사건의 관할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법철차⁵⁷⁾ 등은 정당하고 공정한 법집행 절차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교양처분권이 검사와 재판소에 동시에 있는 점과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같은 유사사법기관이 위법 행위

57) 형사소송법(제122조, 제124조, 제127조)에 따르면 정치범의 경우 수사와 예심은 국가안전보위가 관할하고, 재판은 재판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안전보위부 검찰국이 재판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다고 한다. 통일연구원, □□2008 북한인권백서□□, pp. 112~113.

자에 대한 처벌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⁵⁸⁾

이밖에도 변호사 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변호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데서 비롯된다 하겠다. 즉, 변호인은 피소자의 대리자가 아니며 피소자를 변호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국가나 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⁹⁾

변호사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국민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법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제1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는 인민들 속에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해설하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제11조)”고 변호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⁶⁰⁾ 그렇지만 심층면접자 가운데 재판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자신의 변호보다는 범죄혐의 사실을 인정하도록 설득하거나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한 탈북자는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주장을 정당화할 뿐 자신을 위한 변호를 하지 않으며, 인민참심원들의 경우에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⁶¹⁾ 이번에 실시한 설문 문항 가운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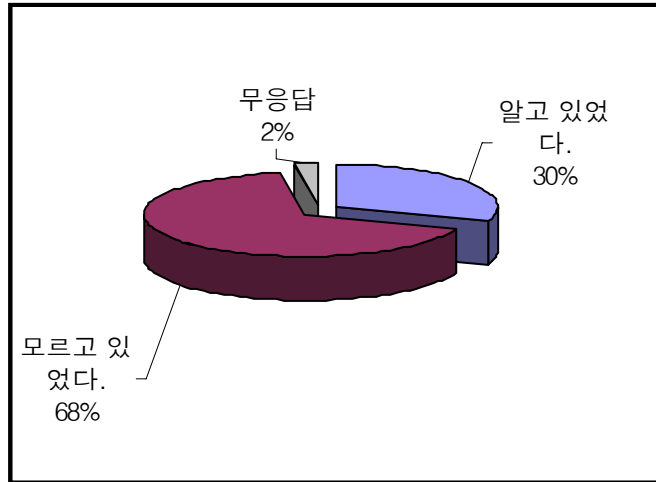
58) 서보혁, 앞의 책, p. 104.

59) 통일연구원, □□2008 북한인권백서□□, p.118.

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pp. 841~920. 형법은 위의 책, pp. 441~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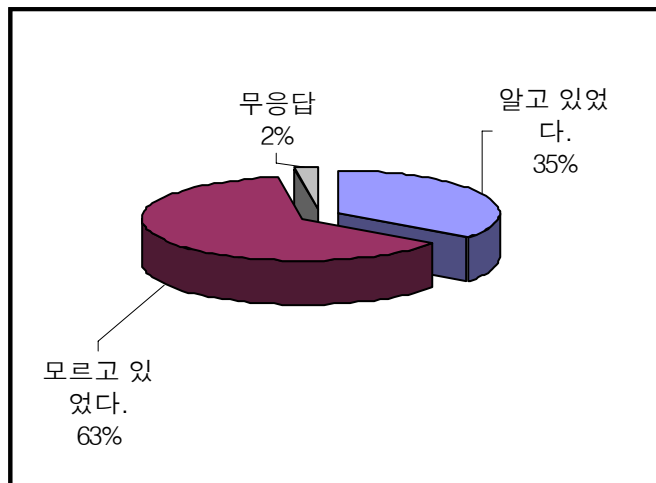
61) HR 01-081001, 2008년 3월 탈북, 면접일: 2008년 10월 1일. 이 탈북자는 재판 1심에서 수사와 예심에서 조사한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시인하지 않아 2심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

19. 북한에 있을 당시 재판받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북한에 있을 당시 범법자에 대한 재판 절차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모르고 있었다가 76명(62%)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는 경우에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거나 주위 친척이나 이웃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17. 북한에 있을 당시 범법자에 대한 재판 절차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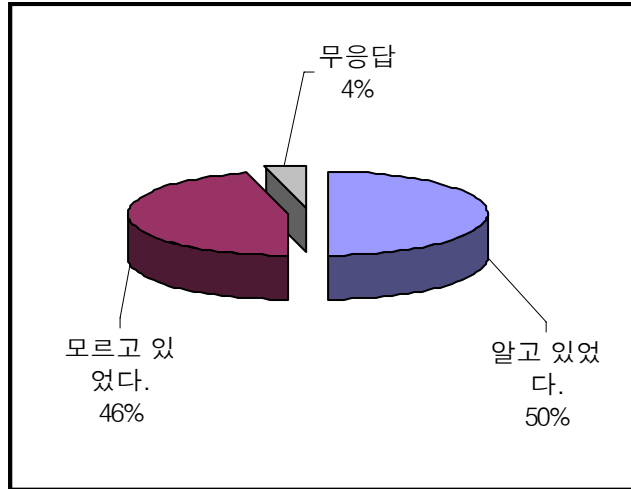
북한에도 상소 및 신소, 청원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항소나 상고를 할 경우에 예심 기간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 첫 수사와 예심에서 겪었던 고통을 또 다시 겪는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형이 확정 된 후에 뇌물을 통해 병보석으로 풀려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집행유예제도가 있다(형법 제51조, 제52조).⁶²⁾ 집행유예는 판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형 집행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형집행정지 사유로 “일시적인 정신병 또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 병이 나을 때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⁶³⁾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판결을 받은 후 돈을 써서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한다. 이 증언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북한에서의 뇌물을 통한 비리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부와 권력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한편, 북한에도 사면제도가 존재하고 이를 ‘대사’라고 한다. 보통 대사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 또는 당 창건일이나 국가수립 기념일에 대체로 5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는 알고 있었다와 모르고 있었다가 비슷하게 나왔다. 이와 같은 이유로는 특별히 북한 당국이 이를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점, 대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무관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p. 794.

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p. 918.

18. 북한에 있을 당시 대사(사면)가 실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탈북자들과의 심층 면접 결과, 일반범죄의 경우 대체로 법조문에 규정된 절차가 준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위에서 지적했듯이 재판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삼권분립원칙에 의한 사법부의 독립성은 보장되기 어려우며, 변호인은 피소자의 권익보다 당의 정책을 옹호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범의 경우(특히 탈북해서 남한 행을 시도하거나 기독교인과 접촉하다가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송환된 경우를 포함)에는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일반범죄의 경우에도 재판절차 없이 노동단련형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증언이 제기되기도 했고, 중국에서 송환 이후 노동단련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도 재판 없이 노동단련대에 갔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의 행정처벌법은 검찰, 재판, 중재, 인민보안기관, 검열감독기관 등이 비교적 경미한 범위반 행위에 대하여 무보수 노동, 노동교양 등의 행정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⁶⁴⁾ 이렇게 볼 때 경미한 범죄나 단순도강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행정 처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64) 양영희, “북한의 사법제도와 인권보장문제,” □□법을 통해 본 북한 인권문제□□ (2008 ‘북한 인권과 법’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2008. 5. 22), p. 117.

4)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권리

국제인권규약(B규약)은 거주이전의 자유(제12조)를 보장하고 있다. 거주이전의 자유라 함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거나 그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으며,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강제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B규약은 모든 사람은 국가의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떤 국가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공공질서와 공중보건 및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헌법에서 거주, 여행의 자유를 보장한다(제75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허가 없이 자의로 주거지를 옮길 수 없다. 주거지를 허가 없이 옮기면 공민증을 받을 수 없고 취직 등 모든 사회활동에서 극심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사적 경제영역이 확대되면서 돈과 권력을 배경으로 음성적으로 주택매매가 이루어짐으로써 간접적으로 거주이전이 묵인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강제추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다. 정치범들이나 체제 불만자들에게 행하는 강제이주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자강도와 양강도 등 새로 신설된 공업지대나 탄광지대, 그리고 최근 라진·선봉경제특구와 같은 지역에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주민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행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여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여행증 제도로 인해 여행의 자유가 사실상 제약되고 있는 점은 여행 질서를 위반할 경우 집결소라는 수용시설에 구금된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실제 여행의 행태가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법 규정과 달리 여행에 대한 규제가 이완되고 있는 것이다. 여행증 발급은 원칙상 무료발급이나 최근 연줄을 활용해 돈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지 않고 여행 목적이 불명확하더라도 연줄과 돈을 활용해 여행증을 발급받고 있다는 것이다.⁶⁵⁾

65) 한 탈북자는 자신이 거주했던 청진시에서 여행을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평양의 경우에도 3만원(북한원)이면 여행증을 발급해 주었다고 한다. HR 07-081024, 2008년 1월 탈북, 면접일: 2008년 10월 24일.

그리고 한 탈북자에 의하면, 과거에는 도내 군에서 다른 군으로 이동할 때에도 여행증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도내 이동 시에는 여행증이 필요 없고, 도 간 이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주민의 이동이 기차보다는 버스나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여행증 발급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행증 발급절차도 어렵고 시간이 소요되며, 사사로운 이동이 공개되기 때문에 여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단속 시 뇌물을 써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 주민들의 국외이동은 크게 취업 및 공무를 위한 장기 해외체류를 위한 이동과 단기 여행 및 친척방문을 위한 단기체류를 위한 것이 허용된다. 별목, 건설, 봉제, 요식업 등 해외취업이 확대되면서 장기체류 국외이동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의 기회는 사상적으로 인정 받은 일부 계층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일반적인 주민들의 국외이동은 중국의 친척방문 및 장사를 위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외이동의 경우에는 국경지역여행증명서나 여권을 발급받아야 가능하다.⁶⁶⁾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 상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는 것은 배급제와 국가에 의한 직장배치 및 무상 주택 공급으로 인해 주민의 거주 및 이동사항이 당국의 허가사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직장 출근율이 낮아지고 식량구입과 장사를 위한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주민들의 비법적인 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신에 뇌물을 받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5)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그리고 사회적 차별

(1)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국제인권규약(B규약)은 제17조에서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은 그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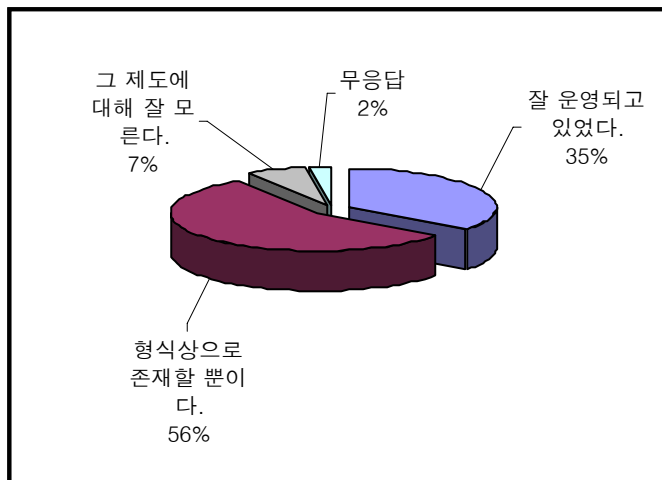
66)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8□□, p. 153.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서도 사생활의 보호(제79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도청이라고 한다. 특히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의 경우에는 주택 및 자동차에도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라 한다.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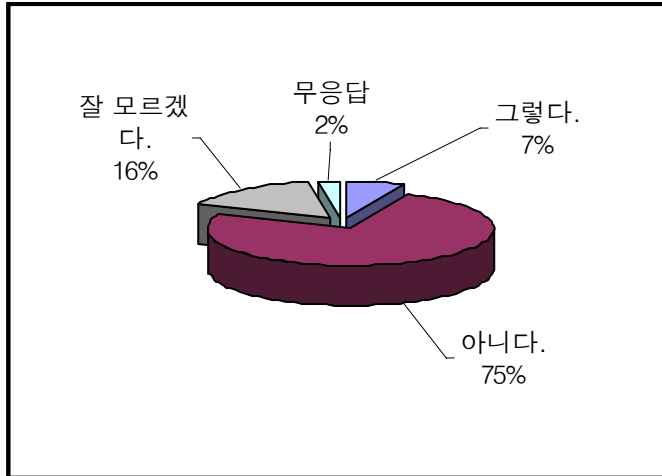
일반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조직적인 통제를 통해 당 정책을 관철하고 주민들을 감시하는 인민반 제도와 ‘생활총화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생활총화는 주 1회 정도 실시하며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그런데 경제난 이후 형식적으로 생활총화는 하지만 상호비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15~25여 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은 인민반장에 의해 통제되고 인민반장은 인민보안성 보안원과 함께 숙박검열 등을 통해 각 가정을 항시 방문한다고 한다. 또한 사상동향이나 가정 사정을 감시, 통제할 뿐만 아니라 노력동원, 생활총화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감시는 인민반장으로 시작되나 인민반에 이미 보위부, 보안원, 당 비서 등의 꼬나풀이 이중 삼중으로 인민반장과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 설문조사에서 인민반이 잘 운영되고 있었다는 43명(35%), 형식상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68명(5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여부와 관련해서는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91명(75%)이나 되었다.

10. 북한에 있을 당시 ‘인민반 제도’나 ‘5호 담당제’ 등은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67) 위의 책, pp. 173~174. 위와 관련해서 본 심층면접 대상자 가운데 당정군의 고위간부나 이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11. 북한에 있을 당시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민반 제도와 관련해서는 탈북자들이 속한 지역과 상황에 따라 이 제도의 운영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의 거주 지역의 인민반장이 주민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고 노력동원이나 생활총화 등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높을 경우, 주위에서 인민반 제도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보거나 직접 경험한 경우에는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편, 식량 구입이나 장사를 위한 이동이 많아 노력동원이나 생활총화 등의 주민 참여가 저조한 경우 형식상 존재할 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질문의 결과는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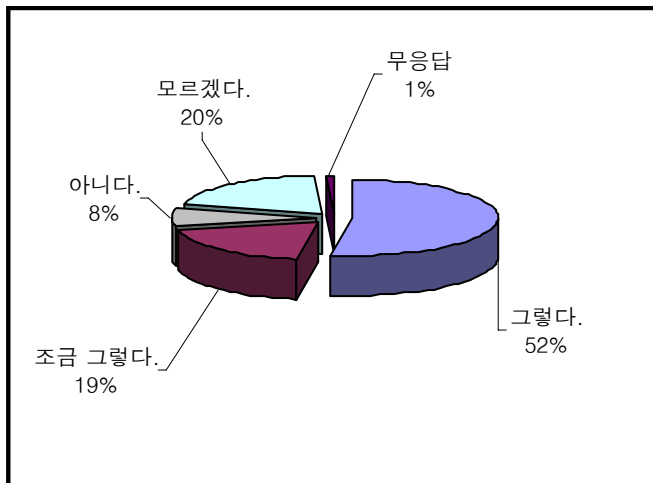
국제인권규약(B규약)은 제14조와 제26조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에서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제65조)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는 모든 주민이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B규약 2차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공민은 국제협약에 규정된 대로 인종이나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 성분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이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하고 있다. 북한은 전 주민을 크게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 3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북한은 출신성분에 따라 배급, 진학, 출세 등에 있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은(과거 지주 및 자본가 가족, 친일분자 가족, 종교인, 월남가족자 등)은 직접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번 조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36. 북한에 있을 당시 월남자 가족이나 해외교포 가족 등이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북한에서 사회적 차별을 가장 대표적 사례로 연좌제의 적용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통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연좌제를 활용하고 있다. 연좌제는 정치적, 이념적 범죄 관련 가족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수평적으로 직계가족에 대한 처벌과 수직적인 후세대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연좌제는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국제인권규약(B규약)은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권리를 포함한다”(18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주체사상 이외의 그 어떤 사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종교의 경우에도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제68조)고 명시하고 있지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건국 이래 종교탄압을 꾸준히 실시해 왔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종교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종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 다만 최근 탈북자들의 급증과 중국을 통한 유입 등으로 기독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성경책을 보다가 처벌을 받은 경우를 직접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이 있었다.

“우리 옆집 사람의 부인 친구가 중국에 갔다 오다가 잡혔다. 그것도 고발해서 잡힌 것인데 그 사람은 중국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다가 두만강에서 잡혔다.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살 수 있는데 말을 잘못된 거다. ‘하나님!’ 이런 소리를 해서 잡혔다.”(HR 24-081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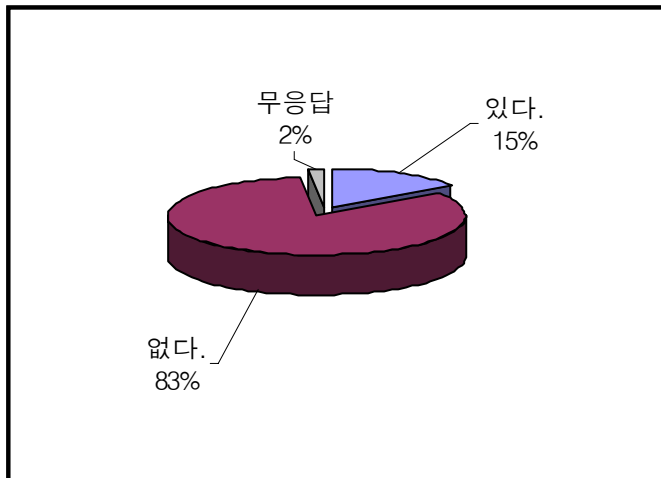
“중국으로 탈북 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송환되어 북에 와서도 그 신념을 꺾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옹호하다가 정치범수용소에 갔다”(HR 03-081016)

“보위부 집결소에서 교회에 나갔다고 해서 잡힌 사람이 많다. 북한에서 엄하게 보는 것이 종교문제다. 그 사람들은 개 취급한다. 우리도 개 취급이지만 그 이상으로 거기서 학대를 받는다. ‘하나님이 밥 줬냐, 하나님이 무슨 밥을 줬냐’면서 심하게 구타를 한다.”(HR 09-081030)

그렇지만 “북한에 있을 당시 주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 활동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02명(84%)이 없다고 답했다. 위의 심층면접자의 증언은 탈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진술로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제한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직접 성경책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심층면접자들은 국경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종교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내륙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종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심층면접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평양 이외의 지역에 교회와 성당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종교시설의 존재를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평양 주민의 경우에도 종교시설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제한구역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사찰의 경우에도 종교시설이라기보다는 관광지로 인지하고 있었다.

16. 북한에 있을 당시 주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 활동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탈북자 가운데 중국에서 남한 종교인과 접촉한 탈북자들은 정치범으로 규정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밖에 점쟁이 등 미신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종교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처벌은 한 탈북자의 증언에서도 암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에 와서 책을 읽어보니까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존재하는지 저는 의심하게 된다. 성경책만 있어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데 그것이 들키는 날에 아마 다 공개처형일텐데.”(HR 10-081031)

7)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국제인권규약(B규약)은 표현의 자유(제19조), 집회의 권리(제21조), 결사의 자유(제22조)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도 헌법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제67조)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언론은 비판이나 정보 제공 등 본래의 기능을 도외시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체제전선과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일반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도 극도의 제약을 받고 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유인물, 책자, 비디오(CD), TV나 라디오를 통한 외부 방송의 시청 및 청취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국경지대에서는 비밀리에 TV를 시청하거나 비디오(CD)를 보고, 라디오를 듣고 있다고 한다. 국경지대에서는 중국 TV 전파가 강하기 때문에 채널을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안테나를 중국 쪽으로 돌리지만 하면 중국 채널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탈북자들은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들을 몰래 보는 것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CD를 몰래 파는 사람들이 많고,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빌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보위부에 발각될 경우에는 돈을 주어 무마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절친한 주위 사람들, 친구, 가족들과는 체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서로 토로하기도 한다고 한다. 최근 들어 ‘말반동은 반동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했다. 또 누구의 밀고로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한 적 없다고 서로 주장하면 큰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체로 보면 정치적 발언이 아닌 이상 사회경제적 불만 표출은 현재 북한 사정상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TV 채널을 고정시켜도 그걸 뽑지 않는 이상에는. 채널에 종잇장 같은 것을 붙인다. 종잇장 같은 것을 붙이고, 채널을 뽑는다 해도 우리 회령 같은 경우는 중국 전파가 너무 세 가지고 빼도 그걸 본다.”(HR 25-081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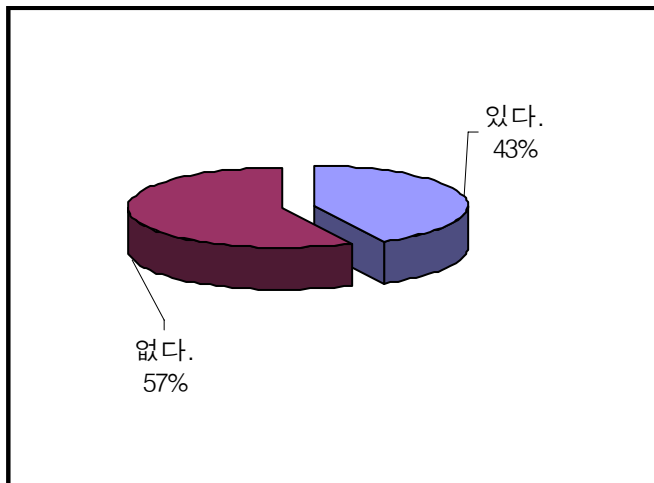
“요즘 TV는 다 리모컨을 하지 않나! 그래서 리모컨을 두 개를 준비한다. 하나는 고장 난 것으로 해서 검열 나올 때 보여주고, 진짜는 숨겨 놓다가 몰래 TV 시청을 할 때 사용한다.”(HR 29-090116)

“친한 사람들끼리는 김정일과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뭐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정치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개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만 하지 그 외에는 못한다.”(HR 17-08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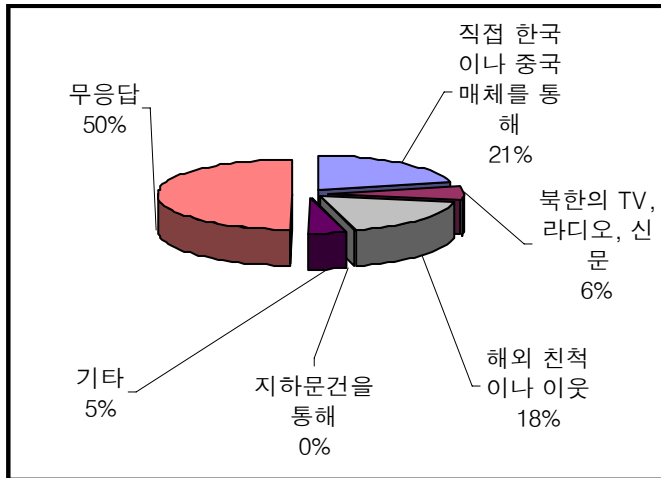
“친구들한테 내가 동원 갔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칠보산 동원 가서 도로건설을 했었는데, 그 도로는 순전히 관광도로인데, 이거 100원 투자했으면 100원 이상을 벌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 길이 김정일 혼자 다니는 길이다. 여기에 뭘 그리 많이 투자하나?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HR 23-081224).

이러한 증언은 설문조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8. 북한에 있을 당시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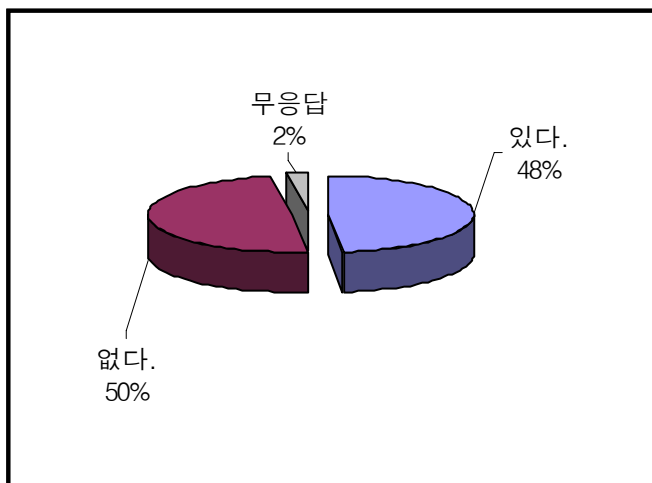


9. 있다면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었습니까?



※ 중복응답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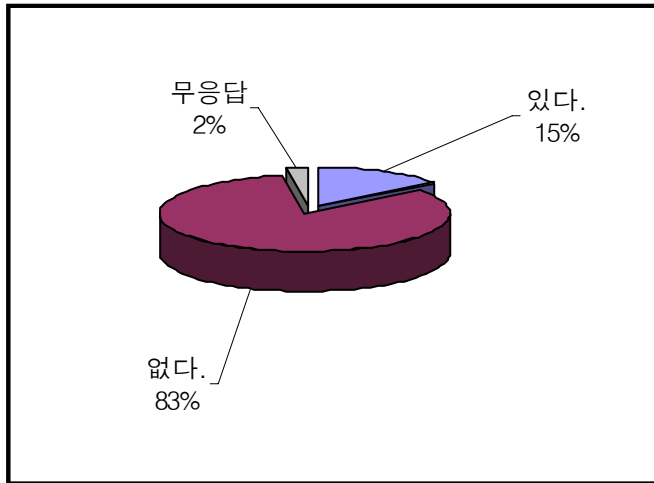
13. 북한에 있을 당시 주위 사람들과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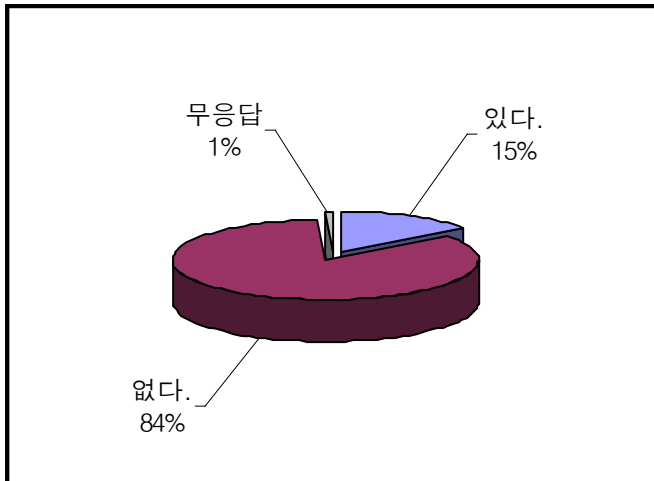
그리고 반체제, 반정부적 집회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101명(83%)이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비공식적, 불법적 출판물을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도 101명(84%)가 '없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출판물 및 집회에 대한 통제가 매우 강력함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4. 북한에 있을 당시 반체제, 반정부적 집회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15. 비공식적, 불법적 출판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북한당국의 필요에 의한 집회나 결사만 허용될 뿐 일반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시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 및 결사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집단적 소요로 간주된다. 최근 개정된 형법에서는 반국가적 목적이 없었더라도 “집단적으로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반항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219조)고 규정하고 있어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기존의 강력한 억제 조치를 존속시키고 있다. 그런데 한 심층면접 대상자에 의하면, 한 학생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장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 정치적 낙서를 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낙서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내가 교원으로 있었던 학교가 아니라 친구가 있었던 학교였는데 화장실에 정치적 낙서가 있어서 보위부 검열이 내려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HR 17-081127)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검열을 통해 낙서 당사자를 색출한 후 교원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를 받았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기구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오직 당의 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집회나 당의 목표에 의한 집회결사만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맹, 종교단체, 노조, 정당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과 결사는 북한 당국에 의해 통제되며 독립적인 기관이나 결사의 존재는 결코 용납되지 않고 있다.

2. 실태Ⅱ: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북한의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대한 실태와 변화 추이 분석의 기준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으로 한다. 북한은 1981년 9월 이 조약에 가입하였고, 1989년 1월에 최초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제2차 보고서는 2002년 4월에 제출했는데 이 규약의 10개 조항의 이행 경과를 담고 있다.

북한의 사회권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자유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측면이 있었다. 이런 경향은 일반적으로 인권이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로 요

약할 수 있는 자유권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점이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권과 관련한 내용의 대부분이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개인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권의 총체성과 상호의존성을 고려한다면 인권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사회권도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경우, 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사회권 사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최근 북한의 사회권 실태와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

1) 근로의 권리(노동권)

국제인권규약(A규약) 제6조에서 “규약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수,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않은 근로조건을 보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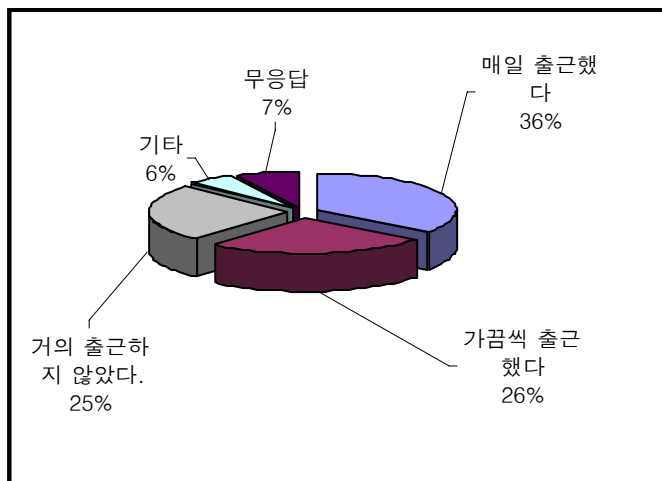
북한 헌법에는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제70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에서는 노동의 신성한 의무(제83조), 16세 노동연령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 금지(제31조)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에서의 노동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개인의 권리라기보다는 전 주민의 의무로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 헌법 제71조와 사회주의 노동법 제62조에는 근로자들의 휴식에 대한 권리도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는 “근로자들의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제30조)이라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노동법에서는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제33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연 휴식시간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⁶⁸⁾ 탈북자들의 증언에서도 노동자들은 기본 일과시간 외에도 추가 노력동원, 각종 학습 및 회의, 생활총화 등에 혹사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의 권리도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북한 노동자의 다수가 실업상태에 놓이면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난으로 공장가동률이 20~30%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출근을 해도 일을 할 수가 없고 봉급과 배급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출근했다가도 바로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는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북한 당국이 직장 복귀 지시를 내리지만,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지시는 별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⁶⁹⁾ 이는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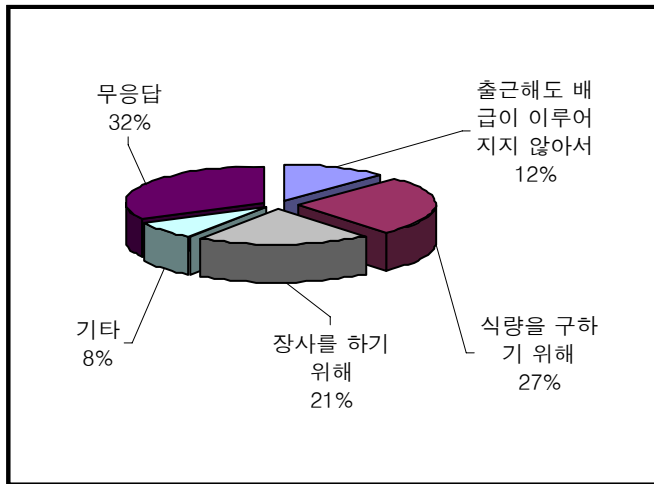
25. 북한에 있을 당시 직장에 매일 출근하셨습니까?



6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8□□, pp. 215~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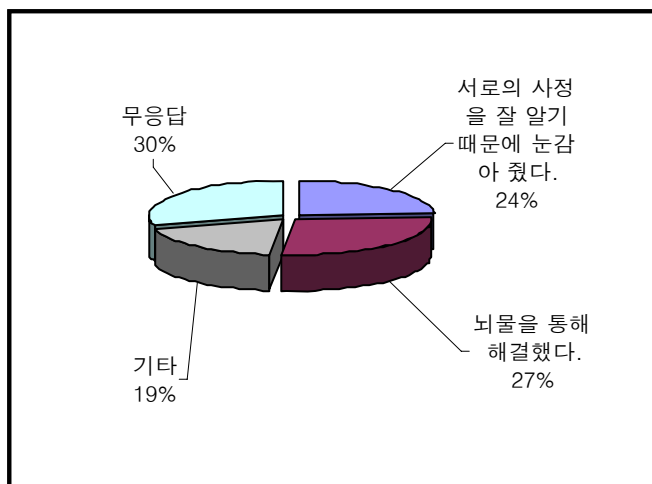
69) 2005년 12월과 200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자들의 개인노동 현상을 없애고 집체적으로 공장, 기업소 단위 등에 출근하도록 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인노동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56호(2007.01.24).

26.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 중복응답 포함

27. 직장이탈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을 텐데, 이를 어떻게 피했습니까?



※ 중복응답 포함

또한 북한은 헌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제70조)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개인의 의사보다는 당의 인력수급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의 직장배치는 계획경제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부차적이다. 또한 직장배치에서 선발 기준은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는 당성 및 출신성분, 또는 가족적 배경이다. 성분이 나쁜 사람들은 힘든 육체적 노동을 요구하는 직장에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장이동 또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직장배치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출근하지 않으면 배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배치된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으로 직장에 출근을 해도 일이 없고, 배급이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이탈과 직장의 자재 및 제품의 절도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 공장(일용품공장)은 80~90%는 출근을 했다. 제일 심할 때는 90년대는 70% 정도 출근을 하고... 공장에서 비누를 100개 만들었다 하면 한 70%는 창고에 있고, 30%는 다 도둑질 하고... 그것이 생계수단이니까. 출근을 해야 비누를 장마당에 내다 팔아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니까. 그런 일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 매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우리 공장에서 1차적인 생계수단이었다.”(HR 23-081224)

“미공급(고난의 행군 시기) 때는 그냥 눈 감아 주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거의 너물을 고이고, 담배나 뭐 이런 거 고이고 시간 받고 그랬다. 북한은 거의 너물작전이다”(HR 25-081226)

“지방공장에서는 계획을 못하는 경우에는 8.3 인민소비품 생산을 통해 채우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내가 공장에 적을 두고 이 달에 15만원을 내면 한 달 동안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그 공장에서 신원을 보증해 준다.”(HR 06-081023)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연줄과 돈으로 직장배치와 직장이동, 이탈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돈과 능력만 있으면 예를 들어 외화벌이 회사에 등록하고 일정액을 납부하면서 외화벌이에 종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과 능력이 부족하여 외화벌이 회사에 가지는 못하나 장사를 하여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은 직장에 적만 걸어놓은 채 뇌물을 주고 장사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제난으로 북한에서 국가에 의한 직장배치의 질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2) 단체결성권 및 단결권

국제인권규약(A규약) 제8조에서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으로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말하기에는 힘들다. 현재 북한에 노동조합 형태로 유일하게 있는 조직은 조선직업총동맹(직맹)인데, 이 조직은 단체결성권이나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을 갖지 못하고 노동당의 외곽단체로 기능한다. 북한에서 노동자의 이익은 노동조합이 아니라 노동당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노조활동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여 다스리고 있다. 2004년에 개정된 형법 제5장 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에 관련 법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 규정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노조활동을 억제하고 있다. 또한 강제적이거나 강압적인 노동에 대한 금지조항도 없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노동자들은 단체결성권 및 단결권, 파업권 등이 노동자의 권리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맹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단체가 아니라 당과 국가의 정책을 선전하고 강요하는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파업 자체는 북한의 사회통제 시스템 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정책을 보면 노동자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있는데 실제 권리나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 또 행사한다고 자기한테 이롭게 돌아올 수 없다. 또 일반노동자들은 자기의 권리가 뭔지, 의

무가 뭔지도 모르다. 파업은 북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상에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자면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하여 시위 투쟁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기본 조직자부터 시작해서 참여한 사람들까지 전부 처벌받는다.”(HR 07-081024)

결국 이러한 권리는 북한의 법률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실제에서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사회권 이행과 관련한 제2차 보고서(2002년 4월)에서 노동자들은 피고용인인 동시에 고용된 기관이나 기업의 경영, 관리에 참여하는 주인이기도 하므로 단체교섭, 노동분쟁, 파업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2월 발표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문타본의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적절한 임금, 단체교섭, 결사의 자유 등 노동자로서의 그들의 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⁷⁰⁾

3)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국제인권규약(A규약) 제9조에서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권은 신체장애, 질병, 노령, 실직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⁷¹⁾

북한 헌법과 사회보장법 등을 보면 북한은 제도적으로는 완전한 사회보장이 가능한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북한 헌법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 병약자·노약자·어린이 등은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의료시설, 국가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해 보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2조).

‘사회주의 노동법’에 따라 각각 남자는 만 60세, 여자는 만 55세까지 일정 근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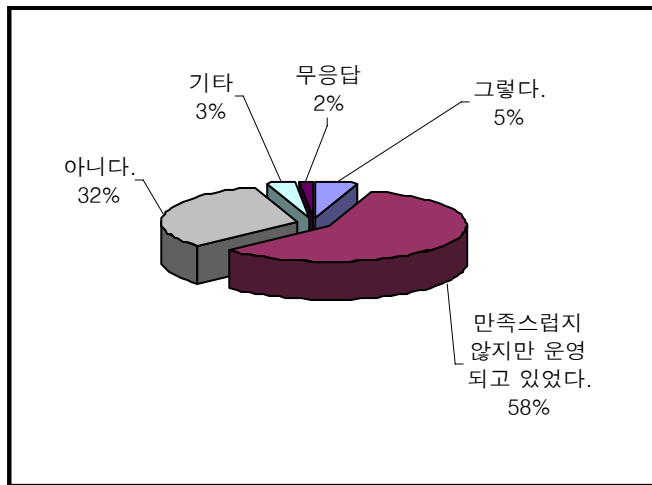
70) Vitit Muntarbhorn,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 people’s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Situation that Require the Council’s Attentio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HRC/7/20, 15, February 2008. p. 12.

71)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8□□, p. 205.

연환을 채운 경우 연로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74조). 이외에 특별대상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것으로 생활보호, 재해구호, 원호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생활보호 시책의 경우, 국가공로자, 인민군 군관 및 하전사의 부양가족, 제대군인, 북송교포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생활보호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자랑하는 것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한 무상치료제⁷²⁾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제도와 실천 간에 커다란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필요한 재원의 부족으로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난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식량배급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로 보장된 사회보장과 연금 자체도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연금 자체로 생활하기 어렵고, 그 연금도 제때에 지급되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이는 설문조사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30.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었습니까?



심층 면접 대상자 가운데, 만족스럽지 않지만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그 연금으로는 생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대상자들은 제때에 지급되지 않는 것과 그것으로는 생

72) 무상치료제는 건강권에서 다룬다.

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어쨌든 한 달에 사회보장 한다고 해서 사회보장금이라는 게 우리 시어머니는 북한 돈으로 500원인지 400원인지 나왔어요. 사실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죠. 장마당에 나가서 벌면 그것보다 더 벌죠. 그래도 운영은 하지 않았어요. 매 달 사회보장금이라고 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지급됐어요.”(HR 08-081024)
“사회보장제도로써 1인당 사회보장비가 얼마 정도의 돈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방예산이 있을 때는 나오고 없을 때는 안 나온다.”(HR 07-081024)

“90년대 초반까지는 연로보장금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초급 당비서는 동사무소, 시청하고도 좀 많이 연계되어 있다. 나도 거기에 가서 장부를 본 적이 있는데 90년대 후반부터는 지급이 안 되고 있었다.”(HR 11-081112)

“공장에서 노동하다가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액수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못한다.”(HR 16-081126)

더욱이 7.1 조치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상당부분이 폐기됨으로써 가계의 인민복지의 책임이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가족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한다.⁷³⁾ 결국 이에 따른 어린이, 노약자, 병약자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건강권

국제인권규약(A규약)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제12조)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규약당사국이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분의 개선,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질병 발생 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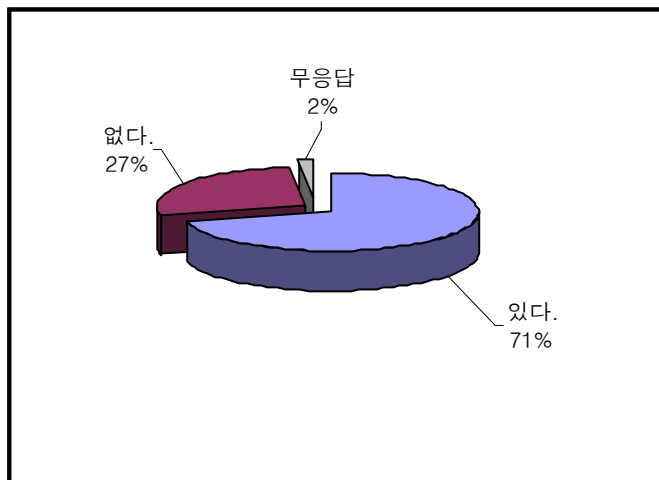
북한도 북한 주민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

7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8□□, pp. 206~207.

다. 인민보건법(2001년 2월 개정)은 인민보건의 기본원칙,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물질적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⁷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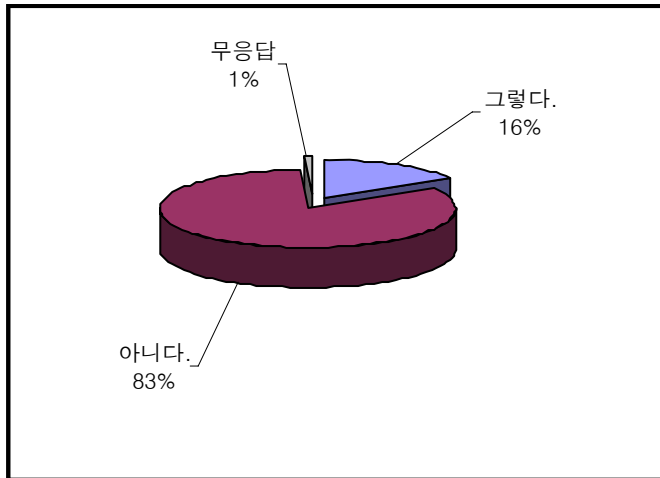
그러나 북한이 자랑하는 무상치료제도 경제난으로 인해 그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의료체계와 의료서비스는 거의 마비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의사는 환자에게 무상으로 진단을 해주고 처방도 해주지만, 의약품 확보하는 것은 환자의 몫이다. 병원에 의약품이 없기 때문이다. 환자는 시장이나 의사가 소개하는 개인에게서 유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본 연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31. 북한에 있을 당시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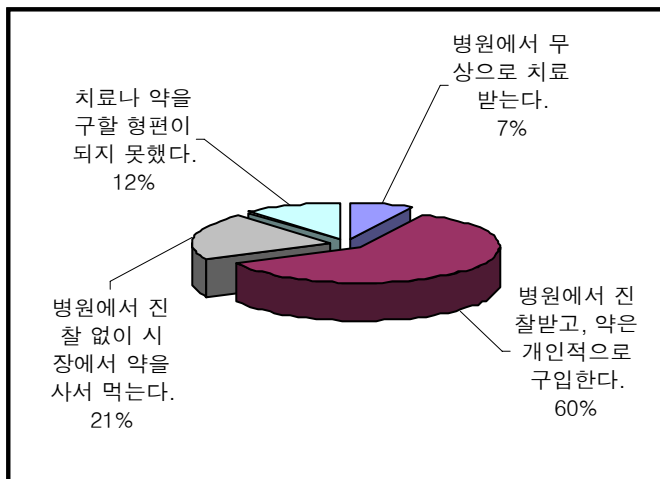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평양: 법률출판사, 2004), pp. 1014~1021.

32. 북한에 있을 당시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까?



33. 환자가 발생하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 중복응답포함

“우리 남편이 비행 대대장이었고 해서 내 아이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 받고 수술도 받고 정말 호강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거의 90% 이상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병원은 오직 처방만 내리는 데다.

그리고 모든 약은 시장에서 구입해야 한다.”(HR 11-081112)

“처방은 다 무상이다. 그런데 진료소에 약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어떤 약을 시장에서 구해서 먹으라고 한다. 요즘에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지금은 공짜가 없다. 돈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HR 06-081023)

의사의 경우에도 병원에서 지급되는 봉급과 배급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약품을 빼들려 판매를 하거나, 장사꾼과 결탁하여 환자를 소개시켜주는 방식,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환자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병원에 약이 공급되기는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의사들이 그걸 빼내 팔아먹는다. 환자한테 처방을 하고 어떤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시장에는 가짜가 많으니깐, 자기가 소개한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약을 팔아먹는다. 사실 시장에는 가짜가 가끔씩 있다고 한다.”(HR 03-081016)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에 몇몇 급성 전염병이 증가했고, 사라졌던 말라리아와 결핵 등의 질병이 다시 출현하였다. 또한 영아 사망률이 증가했고 평균 수명도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은 인민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원조 덕분에 공공보건에 대한 물질적 원조가 증대됨에 따라 인민의 건강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가는 정규교육제도 내에서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각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다. 그리고 국제보건기구(WHO), 국제아동기금(UNICEF)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원조가 보건정책의 실현과 기술자 훈련 및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⁷⁵⁾ 북한 스스로도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75) 서보혁, 앞의 책, p. 115.

5) 교육권

국제인권규약(A규약)은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제12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등교육의 무상의무교육 실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교육 도입,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할 것,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초등교육의 전 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 및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도 ‘11년 무상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경제난으로 의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교육권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주 교육내용이 인류보편적 가치와 지식, 인격함양보다는 정치사상교육에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교육체계가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과학교육부의 통제 하에 있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물론 북한에서도 외국어와 컴퓨터 등 실용교육이 장려되고 있지만, 교육 및 학습활동이 의무적인 조직생활 형태로 이루어지고 의무노동 및 군사훈련과 결합되어 있다. 이는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저발전국가이고 ‘군사국가’라는 체제의 특성을 보여 준다.⁷⁶⁾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북한의 무상의무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학생들의 학습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집안이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북한은 무상교육이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국가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구가 나가면 1인당 얼마씩 내라 한다.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돈을 거둔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내지 못하면 선생에게 혼이 난다고 한다.”(HR 23-081224)

“내가 아이 가방을 들고 간다는 게 친구 집에서 술을 먹고 집에 오다가 잠깐 쉬다가 그만 아이 가방을 길거리에 두고 왔었다. 교과서도 없지, 공책도 없지. 시장에 나가 사야 하는데 당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한동안 못 간적이 있다.”(HR 03-081016)

“무상교육이라 하지만 북한에 제1중학교 체계, 수재학교가 생기면서 이상해졌다. 중앙대학에 갈 수 있는 펀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선적으로 제1중학교

76) 서보혁, 앞의 책, pp. 115~116.

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다 거기를 보내려고 한다. 그런데 성적이 좋지 못하면 결국 교장에게 뇌물을 쓰게 된다. 수재학교에 입학한다는 것 자체가 중앙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그리고 대학에 갈 때도 뇌물을 쓴다. 내 아이가 2004년도에 김일성종합대학에 갈 때도 뇌물을 고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김일성종합대는 평양 학생들인 경우는 3천5백불, 지방학생은 2천불로 규정되어 그 돈이 간부과로 들어갔다.”(HR 09-081030)

제도적으로는 무상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으면 교육의 기회마저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출신성분과 능력이 안되는 경우 학생들이 스스로 진학을 포기하고 학교생활을 등한시하고 장사를 비롯한 다른 진로를 모색하게 된다고 한다.

3. 실태Ⅲ: 생존권(식량권)

북한의 식량위기는 1995년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식량 원조를 호소하면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문제는 구조적 문제로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식량위기는 2000년대 들어 조금씩 호전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3년 이후부터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양호한 기상 조건, 남한의 지속적인 비료지원과 국제사회의 지원 등에 힘입어 [표 4-2]와 같이 식량공급량은 400만 톤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지출을 32.2% 증액하는 등 식량증산에 역점을 둔 결과, 454만 톤의 식량 생산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식량공급량의 증가로 인해 북한당국은 평양 등 일부 지역에 2005년 10월 1일 배급제 정상화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상 배급을 기준으로 한 총수요량 대비 식량부족량이 여전히 200여만 톤으로 정상배급제의 지속 및 지역적 확대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06-7년 수해 및 태풍피해로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증가세를 지속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의 경우 벼의 생육기인 7-8월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9월에 북한의 곡창지대 중심으로 태풍피해가 일어남으로써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401만 톤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상배급 기준으로 약 250만 톤 정도의 식량부족이 예상되고 있다.⁷⁷⁾

[표 4-2] 북한의 곡물 공급량 추이⁷⁸⁾

(단위: 만톤)

구분		02	03	04	05	06	07
생산량	농진청(a)	413	425	431	454	450	401
	(FAO)(b)	431	447	461	516	470	380 (300)
외부 도입량(c)		138	81	69	126	20	55
총 공급량(a+c)		552	506	500	580	470	456
총 공급량(b+c)		569	528	530	642	490	435 (355)

전반적으로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은 90년대 중후반에 비하면 나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같은 식량사정의 완화는 북한 자력으로 식량의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나아졌다고 보다는 외부의 식량공급과 내부의 유통의 활성화에 의해 굶어 죽는 수준은 아니며 만성적인 기아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제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식량의 대외의존이 계속되는 한 이 같은 식량의 만성적인 식량 부족 현상은 대내외적 조그마한 정치경제적 상황변화,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하며, 이는 언제든지 북한의 식량사정이 90년 중반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의 식량사정은 에너지난, 원자재난, 외화난과 맞물려있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식량난이다.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 등의 대외경제 기반 붕괴, 지역·계층간의 분배불균등이 문제를 심화시켰다. 더군다나 북한이 경작 가능 토지가 전체 면적의 18%밖에 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식량을 자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식량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공업국가이다. 다시 말하면, 북한 식량사정은 90년대 중반에 비해 나아졌지만 경제력 약화가 지속될 경우 식량사정악화의 일정수준을 못 벗어나는 만성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력 약화에 의한 식량부족의 만성적인 상황은 언제든지 식량사정이 더욱 나빠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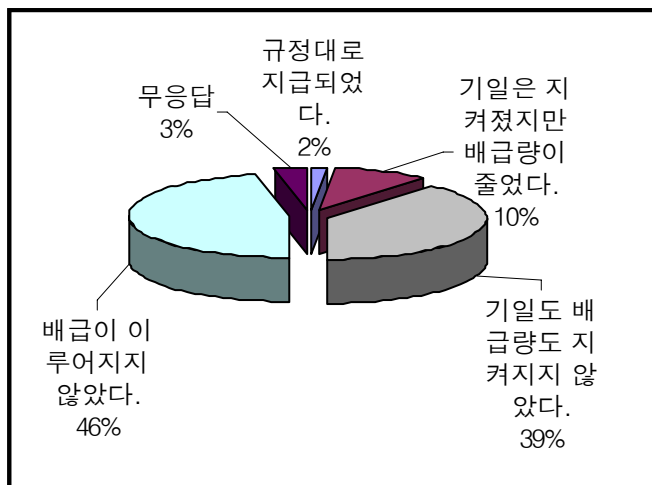
77)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8』, p. 142.

78) 이영훈,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빈곤의 늪에서의 Big Push, "□□북한 경제의 현황 평가 및 향후 전망 -The Asia Foundation-IFES Joint International Workshop□□(2008.11), p. 49. 이때 생산량(a)은 농업진흥청의 추정치이며, 생산량(b)은 FAO의 추정치이다; 2007년 통계치는 실제로 2006/07(2006.11-2007.10)이나 도입량과 동일한 기준으로 맞추기 위해 편의상 2007년으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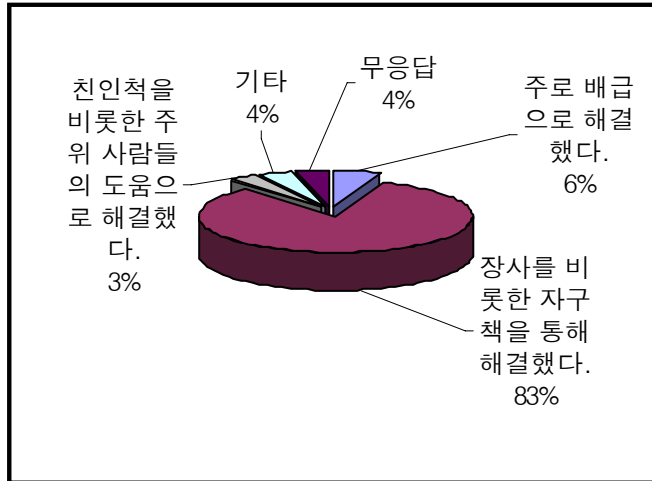
년과 2007년 두 해에 걸친 홍수 피해가 대표적으로 예이다.

사실 북한에서 시행되어 왔던 배급제는 공급부족인 식량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나아가서 식량배급을 통해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배급제는 주민의 여행 및 거주이전, 그리고 직업배정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식량위기로 배급이 중단되면서 사회통제 및 운영시스템에도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가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은 자체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으며, 북한 당국도 '자력갱생'을 내세워 일반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독려해 왔다. 이에 따라 자생적 시장화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은 주기적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있지만, 시장화 경향을 억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러한 사정은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1. 북한에 있을 당시 식량배급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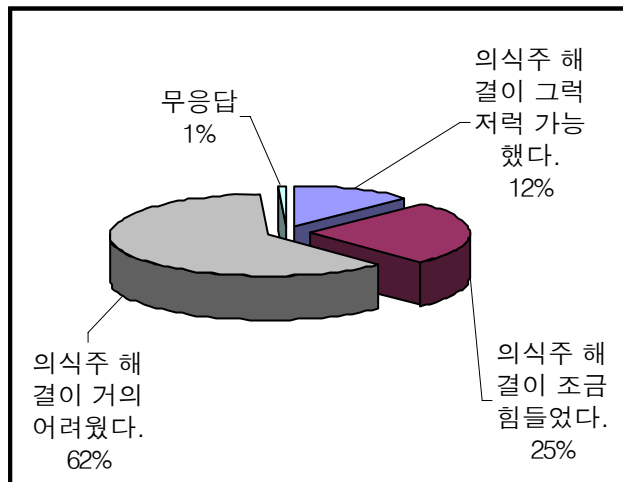


2. 주로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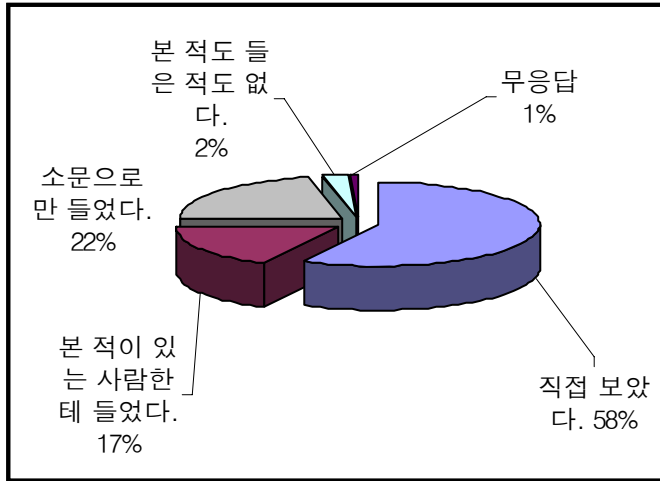


※ 중복응답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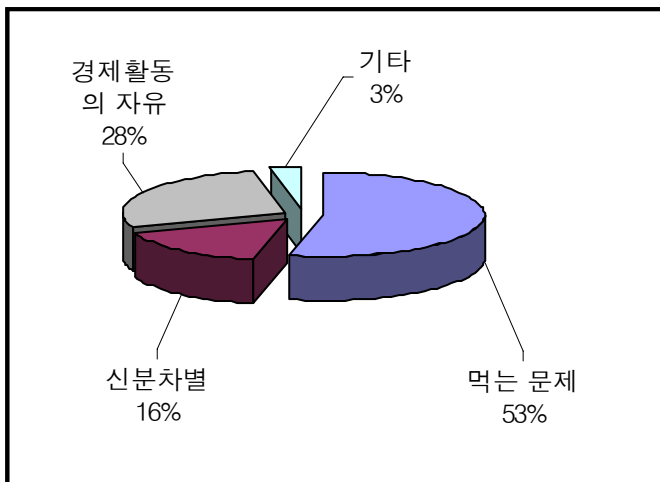
3. 당시 의식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4. 북한에 있을 때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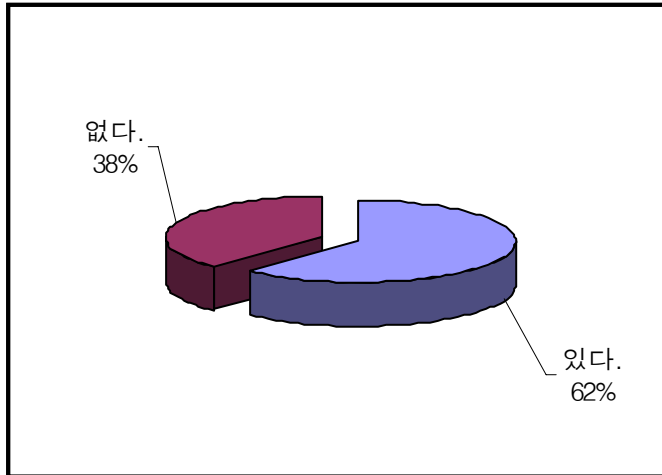


5. 북한에서 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중복응답포함

6. 시장에서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북한에 있을 당시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고 답변한 경우, 심층 면접 대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때이며 2000년대 들어서는 간간히 본 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76명(62%)이나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북한에서 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먹는 문제 다음으로 경제활동의 자유를 꼽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자구책으로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하지만 이것에 대한 북한당국의 통제가 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층 면접자들도 시장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주관식으로 제시한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40명(33%)이 정부의 단속, 통제, 규제를 들고 있다.

심층 면접에 의하면 공식 배급은 당간부, 군대, 군수산업 등 특정집단에 우선적으로 주어진다고 한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나 설, 추석 명절 등에 2~3일분씩 배급된다는 것이다. 한편, 군대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군인들이 넉넉한 배급을 받는 것도 아니다. 먼저 장교들에게 배급되고 이 과정에서 식량을 빼내 개인적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사병에게 배급되는 양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일반 주민들은 스스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시장에서의 구매능력이 없거나 장사능력이 없는 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고,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식량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식량구매능력이 없는 계층들의 생활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들의 자유권과 사회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일탈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북한 당국과의 충돌 과정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이 침해받을 소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4. 실태Ⅳ: 소수자 권리

소수자의 권리는 소수자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수자는 다수자에 대한 대립개념으로 이해되며, 이때는 소수자의 권리는 다수의 횡포와 전제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사결정에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소수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수결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소수자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문제가 되는 소수자의 권리는 인종적·민족적·문화적·언어적·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사회에서 종속적·피차별적 지위에 놓여, 타인과는 명확히 구별된 존재로서의 사람들의 집단의 권리다. 이들 소수자는 그 사회의 지배계급 혹은 우월집단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또는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어 그 집단적 자기동일성까지도 부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약자가 되면, 설사 그 수가 다수라 하더라도 소수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과 아동문제도 소수자의 권리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제인권규약(B규약)과 국제인권규약(A규약)에서도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소수자의 인권 실태 가운데 여성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분석한다.

1) 여성의 권리

북한은 현재 4개의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해 있는데, 그중 가장 최근에 가입한 것이 여성차별철폐협약이다. 북한은 2001년 2월 27일 이 협약에 가입하고 이듬해 9월 11일자로 국가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최초 이행 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보고서는 크게 일반사항과 협약 각 조항별 보고로 나누어 있다. 여기서는 협약의 각 조항에 명시된 여성의 권리를 크게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사회참여,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성폭력 및 착취, 건강권 등 4가지로 나누어 그 실태를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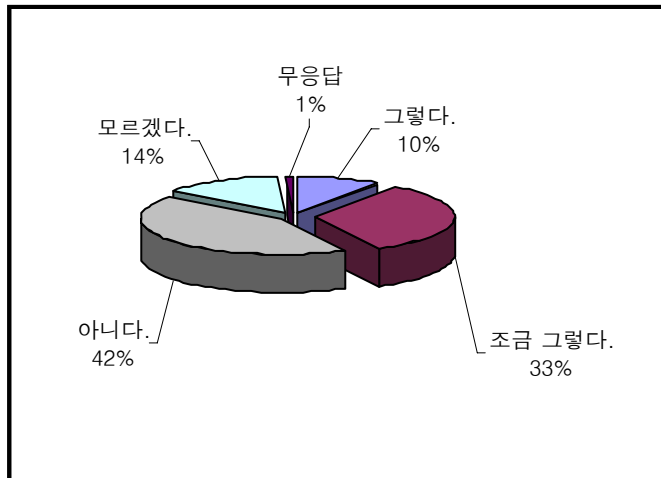
(1)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사회참여

국제인권규약(A, B규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남녀평등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도 성차별 해소를 위해 1946년 남녀평등법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여성차별은 오랜 역사를 통해 철폐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만약 협약이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유보조항을 제외하고는 협약이 우선한다고 밝히고 있다.⁷⁹⁾

그러나 여러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되었듯이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큼 향상되지 않았으며, 봉건적 가부장 질서에서 형성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는 본 연구가 수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79) 북한이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 유보를 밝힌 것은 ① 협약 제2조(f): 여성차별관련 법규, 관행 철폐를 위해 법제화 등 모든 조치 강구, ② 제9조 2항: 자녀 국적부여에 있어서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 부여, ③ 제29조 1항: 둘 이상의 당사국이 동 협약시행에 분쟁이 있을 경우 조정예 들어가고 6개월 이내에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처리함 등이다. 서보혁, 앞의 책, p. 132.

37.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남녀평등'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대부분이 심층 면접을 한 남성들이었고, '조금 그렇다'라고 답변한 경우는 사회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식량난 이후 경제권이 강화된 여성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심층 면접을 했던 남성들은 경제난 이후 여성들의 경제권이 확대되면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해진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었다. 그러나 심층면접에 응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과거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북한에 있을 당시에 남녀평등은 말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여성이 가정 일에서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일은 너무 중노동이다. 처녀 때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갔다 하더라도 시집만 가면 부엌 운전수가 되고 만다. 처녀 총각 때는 다 평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여학생들에게 ‘너 암만 그래도 시집가면 다 끝난다. 너무 우쭐거리지 마라. 지금 똑똑하고 공부도 잘 하는 것 같아도 시집만 가면 끝이다. 나라 일은 그래도 남자들이 하지’라고 말했다. 남성에게는 이렇게 남성 우월주의가 은연중에 교육된다.”(HR 03-081016)

북한의 여성정책은 여성해방보다는 계급론적 차원과 외연적 경제성장을 위한 노

동력 동원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남존여비사상과 결합된 사회주의적 가부장적 질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관, 수령관, 가족관 등으로 인해 명목상의 여성해방 및 남녀평등과 실제 여성의 삶과 현격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가족법은 폭넓은 범위의 금혼 규정, 부성(父性) 추종의 원칙, 넓은 범위의 가족부양 등 전근대적인 가부장 질서의 요소들을 법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⁸⁰⁾

여성의 사회 참여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이행보고서를 통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은 인민회의, 검찰, 국가조정위원회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정부기관은 각각 여성의 발전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 여성의 발전과 관련한 법률의 이행 및 국가정책의 파악,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 감독 등을 담당한다. 공공단체로서 조선민주여성연맹은 300만 여성 노동자를 대표하여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제10차 최고인민회의 선거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여성투표권자의 99.9%가 참여하였고, 선출된 대의원의 20.1%가 여성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가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적 영역의 여성간부 비율을 증가시켰고 여성의 대학 입학률도 장려했다고 한다.⁸¹⁾

그런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숫자는 수치상으로는 다른 선진국들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사회주의체제 선거의 특성상 당의 정책적 고려에 의한 안배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여성 대의원은 상징적 대표성만을 갖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정치적, 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지닌 내각의 관료나 당의 주요 요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2008년 2월 발표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문타본의 보고서에서도 북한여성들은 총 노동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핵심 정책결정 상위직에의 접근이 여전히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있다.⁸²⁾

한 탈북자는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을 경우, 대부분 여성이 책임지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그 남성이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여성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⁸³⁾

8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pp. 41~48.

81) 서보혁, 앞의 책, pp. 134~135.

82) Vitit Muntarbhorn,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 people's Republic of Korea, "Human Rights Situation that Require the Council's Attention,"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HRC/7/20, 15, February 2008. p. 12.

북한에도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구비되어 있지만,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남존여비 사상과 결합된 사회주의적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북한은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평등한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달리 가정에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강조되어 왔다. 가사가 하나의 노동이라는 인식이 결여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라는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노동의 주체로 사회참여를 하면서도 과중한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1990년대 들어 경제난으로 인해 가사 및 양육, 노동의 양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는 여성들이 급격히 증가했고, 그 결과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강해졌지만 가사 노동의 양은 줄어들지 않았다.

“북에서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 잘 때까지 일체 집안 일 혼자 하고, 낮에는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한다. 남편은 도와주기는커녕 때리지만 않아도 다행이다.”(HR 06-081023)

또한 경제난으로 탁아소 및 유치원의 경우에도 돈이 없으면 보내지 못하는 사정이기 때문에 양육 문제가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돈 없으면 탁아소나 유치원에도 못 보낸다. 공식적으로 돈을 내라고 하지 않지만, 설비를 산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하면 돈을 요구한다. 이러다보니 돈 없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맡기지도 못한다.”(HR 17-081127)

“유치원에서 돈이나 좀 가져다주는 집 아이들은 예뻐해 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미워하고 그러니까... 사실 없는 사람들은 유치원에 맡기지도 못한다. 요즘은 사설학원 비슷하게 변질됐다. 그러다보니 가난한 집안에서는 부부가 모두 돈벌이 하러 밖에 나갈 때 어린 아이를 집에 가두고 나가는 경우가 많

83) HR 03-081016. 탈북일: 2006년 8월, 면접일: 2008년 10월 16일.

다. 그래서 애들이 집에서 불장난하다가 죽는 사건도 있었다. 동네에 일하지 않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으면 한 달에 일정 정도의 돈을 주고 아이를 맡기기도 한다.”(HR 03-081016)

이에 최근 들어서는 가족을 부양하며 경제권을 손을 쥔 30대 여성들 사이에 남편에 대한 저항, 반발하며 특히 남편의 폭력 행사나 경제적인 무능력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여자가 한 번 시집가면 그 집 사람이 되어야 했지만, 요즘은 여성들의 사고도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살 바에는 갈라지자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탈북 하는 여성들 가운데 가정싸움으로 탈북하는 게 많다.”(HR 17-08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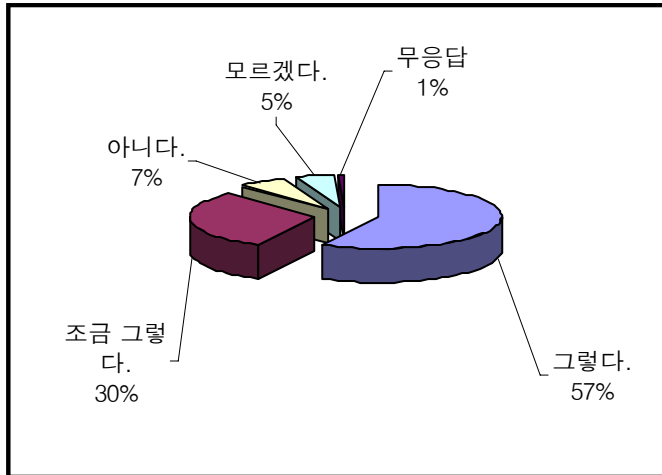
과거부터 여성의 부담이었던 가사노동과 사회활동, 그리고 자녀 양육 문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남성들의 배려나 국가적 정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가정불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성폭력 및 착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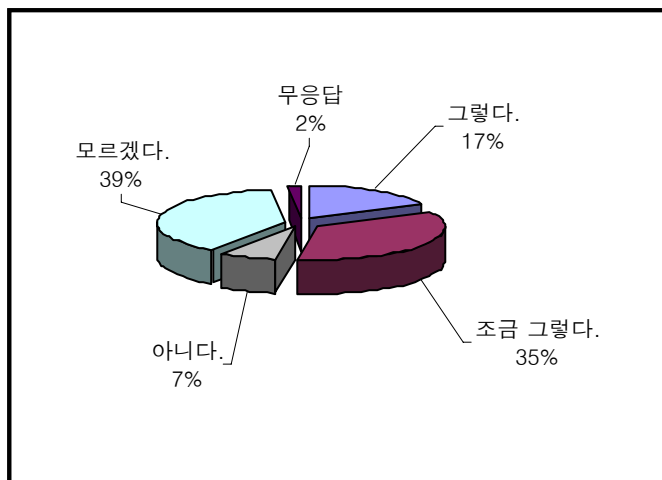
성폭력 및 여성 착취와 관련해서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는 가장 부끄러운 범죄로 인식되며 수년간 보고된 바 없다고 한다. 여성을 강간한 남성이나 15세 미만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은 중형에 처하고 하급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직장 내 상급자 남성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러 보고서 및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여성은 인신매매, 성폭행,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도 마찬가지로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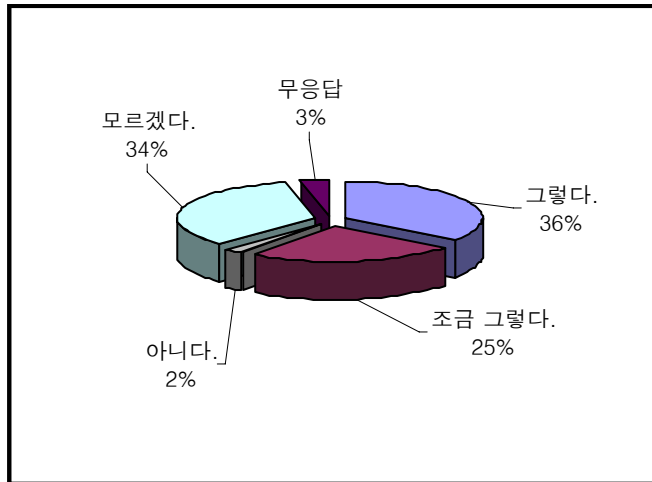
38.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39. 북한에 있을 당시 성폭력 사건이 급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40. 북한사회에도 매춘이 있습니까?



심층면접 결과 가정에서의 남편의 폭력에 많은 여성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남편들이 돈벌이를 못하고 부인들이 경제권을 쥐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가정 일로 자주 충돌하고 이에 따라 남편들이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의 폭력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소득이란 게 없지 않은가. 여자가 다 벌어서 먹는다. 그런데 남자가 자존심이 있다. 그래도 집 문패는 자기 이름으로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생계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남자가 아무래도 주먹으로 내리치게 된다.”(HR23-081224)

“여자들은 가정이 먹고 살아야 되겠고 하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생활하는데, 남자들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보통 술을 먹게 된다. 술을 먹으면 부부싸움을 하거나 주정 형태로 부인이나 아이들을 때리는 경우가 많다. 탈북 여성 중에 남편이 때려서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HR02-081001)

“직장 내에서 남자가 여성을 때리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작업반장이고 내 밑에 남자가 있다고 치자. 내가 일 관계로 정당하게 그에게 질책을 해도 그 남자가 자존심을 세우고 덤비는 경우가 생기고 심하게 언성이 오가

게 되면 마지막에 남자가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HR25-081226)

북한에서 성 관념은 남성 위주이고 여성에 경직된 순결의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북한 당국이 부인하고 있으나 식량난을 겪으면서 일부 북한 여성들은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강간 사건으로 보안성에서 조사를 받던 남자가 일관되게 ‘동료끼리 여흥을 즐겼다. 내가 왜 억지로 했겠는가’라고 주장하니까 단순 폭행으로 일단락됐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없는 여자는 이렇게 당하는구나’라고 말하면서 그 남자를 욕했다고 한다.”(HR06-081023)

“역전 주변에 가면 군인들이나 출장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꽃사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숙박 집을 안내하는 척 하면서 여자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북에서는 매춘하는 여성을 ‘꽃사시오’라고 부른다.”(HR25-081226)

“예전에는 속아서 중국에 팔려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본인이 팔려가도 좋으니까 나를 중국으로 데려다 달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내에서 인신매매하는 경우는 없다.”(HR02-081001)

(4) 여성의 건강권

경제난으로 인해 발생한 북한 여성들의 영양실조 결과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건강악화이다. 여성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출산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영양부족 상태에서 수태함으로써 유산 내지 사산, 또는 미숙아 내지 저 체중아 출산 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됨으로써 아이와 산모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 혼전·혼외 성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성의식의 변화와 함께 생계유지를 위한 매춘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혼전, 혼외 임신 또는 매춘에 의한 임신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법 낙태수술을 감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식량난 이후 영·유아 및 어린이 사망률이 급증하고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함에 따라 1998년 제2차 어머니대회를 통해 다산이 장려되고 특히 김정일의 ‘아이를 낳을 데 대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낙태나 피임 시술이 불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불법 낙태수술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뇌물을 주고 의사를 집으로 불러 비밀리에 중절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마취도 거의 하지 않는 시술이기 때문에 후유증이 심하여 여성건강을 크게 해치며 이로 인해 불임을 초래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⁸⁴⁾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결혼을 했다고 해도 솔직히 부부가 살기도 힘든데 아이를 낳아서 남같이 기르지 못할 바에는 자식을 낳아서 뭘 하겠나라는 생각에 자식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다보니까 의도적으로 생긴 자식도 많이 없애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HR11-081112)

북한여성의 건강문제는 영양실조와 이로 인한 임신, 출산, 육아의 어려움에서만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 식량난 이후 대부분의 여성들이 장사를 수단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나 열악한 장사환경 내지는 조건(소매치기, 강도, 인신매매, 성폭행, 안전원의 횡포 등 타인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위해에 대한 불안감과 장거리 도보, 배고픔 등)으로 인해 심신의 건강이 심각한 정도로 악화되었으며 가족부양의 책임 증가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고통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아동의 권리

북한은 1990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 비준하고 최초 협약 이행 보고서를 1996년에 제출하였다. 이어 2차 이행 보고서를 2003년 5월 16일에 제출하였고, 2007년 11월에는 제3, 4기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규정된 아동의 권리를 기초 건강, 교육권,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그리고 아동권과 자유 등 4개 분야를 나누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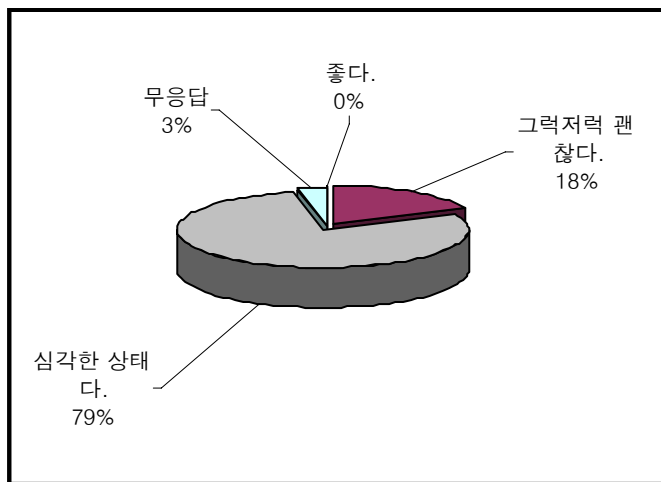
84)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pp. 236~237.

(1) 기초건강

아동권협약은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제6조 2항)”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제2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에 잘 알려져 있듯이 북한의 대다수 아동들이 기본적인 식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다. 1998년 UNICEF·WFP의 조사 때보다 나아지기는 했으나 2002년 UNICEF·WFP와 북한 당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어린이 영양실태 조사에서도 조사 표본 6,000명의 아동들 가운데 20.15%가 저체중, 39.22%가 만성영양장애, 그리고 8.12%가 급성영양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조사표본 6세 미만 어린이 4,800여 명 가운데 23%가 저체중, 37%가 만성영양장애, 7%가 급성영양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3, 4기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19.5%가 저체중, 34%가 만성영양장애, 6.1%가 급성영양장애이며 2000년 이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⁸⁵⁾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어린이의 영양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41. 북한에 있을 당시 아동의 영양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5)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8□□, p. 242.

심층면접에서도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90년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의 경우 더 심각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었다.

“90년대와 비교했을 때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굶지 않는다 해도 한참 먹고 자라야 할 시기에 강냉이밥을 먹고 별다른 것을 먹지 못하니까 키도 크지 않고 영양상태도 좋지 못하고 그렇다. 지금 북한에서 제일 불쌍한 건 아이들과 노인들이다.”(HR25-081226)

“90년대는 정말 모두 힘들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는 많이 개선됐다. 아동 영양 상태라는 게 부모 없는 애들은 힘들고 부모가 있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힘들고 그렇다.”(HR16-081126)

“저희 지역은 좀 잘 사는 동네에 속한다. 다른 지방에 가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인데 지역마다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다르다. 다시 말해 못사는 동네 아이들이 힘들어 보이고 그랬다.”(HR10-081031)

또한 제3,4기 통합보고서에서 북한은 전염병 예방법, 식료품위생법, 환경보호법 등의 수정, 보완과 약초법, 마약관리법, 담배통제법 등의 채택을 통해 아동 건강 증진 및 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보증을 확보하였으며 ‘재생산 건강 전략(2006~2010)’과 ‘에이즈 방지 전략(2002~2007)’도 아동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수립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악화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됨으로써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기초적인 의료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방역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위생적인 식수와 생활환경으로 인해 파라티푸스,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이 수시로 창궐하여 수많은 아동들이 희생되었다. 제3, 4기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가장 흔한 어린이 질병은 설사와 급성 호흡기 계통 전염병이다.⁸⁶⁾

결국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아동의 기초 건강 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수 없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6) 위의 책, p. 243.

(2) 아동의 교육권

아동권협약 제29조에 따르면 아동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등을 지향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교육학을 기본을 하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정치사상교육이며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지식, 인격함양을 위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 일상적인 의무적 조직생활로 인해 북한 청소년들의 학습활동은 집단화, 획일화되었다 북한의 아동교육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에 대한 의무적 군사훈련이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중학교 5학년 때에 2주 정도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에 나가 군사 훈련을 받으며, 2~3일 동안은 사격장에서 총쏘기 실습도 한다.⁸⁷⁾

또한 북한은 ‘11년 무상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매 학기마다 지급하던 학용품 공급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학교예산이 부족해지면서 학용품은 물론이고 학교건물 관리 비용까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 내는 부담이 많고,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는 교과서나 학용품도 사 줄 수도 없고 심지어 부모들이 돈을 버는 동안 집에서 동생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핑계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선생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 교육에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한다.”(HR25-081226)

“교과서도 대물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과서들이 알뜰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교과서 질 자체도 나쁘니까 다음 사람이 그 교과서를 사용할 때 찢어진 것도 있고 그렇다. 그리고 학용품이 부족하다. 만약 내가 암만 공부를 잘 해도 내가 노동자 자녀고 돈이 없으면 대학에도 못 가는 형편이다.”(HR23-081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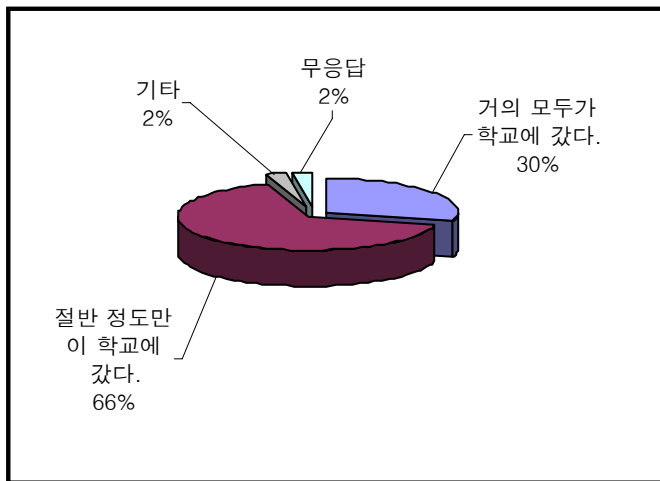
“출석률이 절반 정도라는 게 절반 정도가 고정적으로 안 나가는 것이 아니다. 고정적으로 안나가는 학생은 아마 20~30% 정도이고, 나머지는 오늘 이놈들이 나왔으면 내일은 저놈들이 안나오고 이렇게 되다나니까 학급에서 인원이

87) 위의 책, p.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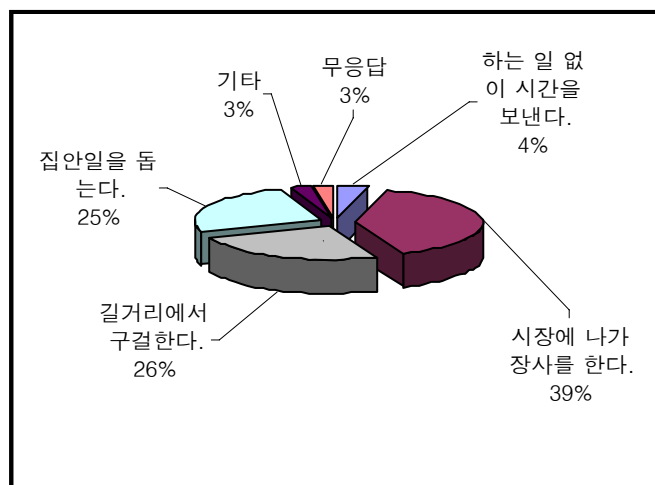
절반 가량 되는 것이다.”(HR03-081016)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으며 교육의 질도 크게 저하되었음을 학교 출·결석 상황에 대한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엿볼 수 있다.

43. 북한에 있을 당시 학교에 가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44.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무엇을 합니까?



※ 중복응답 포함

북한 청소년의 결석률 급증과 관련해 2004년 유엔 아동인권위원회는 “장기화된 경제적 어려움의 결과로서 증가하는 장기결석 및 계절적으로 60~80%의 낮은 출석률을 우려한다”라고 지적하고 “장기결석을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탈북자들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학교 출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지속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와 함께 장사를 하거나 텃밭 농사를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학교 출석률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중간 중간에 학교에 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3) 아동권과 자유(사법권,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권 협약 제37조에 해당하는 아동의 사법권과 관련해서 북한은 제2차 이행보고서와 제3, 4기 통합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서도 아동에 대한 체포, 구금, 투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89조와 제190조에 의거하여 검사의 승인 하에 방과 후 집이나 특정구역에 아동을 감금하며 그러한 감금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의 법률은 국제협약, 특히 아동권협약의 기준에 역행하지 않게 개정되어 왔는데, 한 예로 아동의 사형적용 연령이 17세에서 18세로 조정되었으며, 보고기간에 아동이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대우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체포 송환되어 북한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고 다시 중국으로 건너온 아이들에 따르면, 이들은 취조 과정에서부터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하였으며 수용소 생활 중에는 구타, 중노동, 배고픔 등에 시달렸다고 한다.⁸⁸⁾

아동권협약 제7조 아동의 국적취득권과 관련해 북한은 “어린이는 무국적자일 수 없으며 국가의 보호 없이 장치될 수 없는데, 부모 중 하나가 조선인이면 시민권은 자동부여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한족 또는 조선족과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 여성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들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관계가 아니라 인신매매에 의한 매매혼 또는 소개에 의한 사실혼 관계 등이므로 출산한 아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⁸⁹⁾

또한 북한은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훼손, 타인 모욕이 아닌 경우에 표현, 사상,

88) 위의 책, p. 247.

89) 위의 책, pp. 247~248.

양심, 종교, 결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였다. 또 아동의 사생활을 자의적 혹은 불법적으로 침해한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폭력으로부터의 아동 보호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형법에 따라 아동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은 범죄의 중함에 따라 행정상 혹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아동들은 다양한 외부의 문화, 문물에 대한 접근 및 수용이 불가능하며 오직 주체사상만을 신봉해야 한다. 또한 자유의사에 따라 특정 종교를 선택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없으며 자유로이 단체를 결성할 수 없다. 북한의 아동들은 인민학교 때부터 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 해당 조직에 편입되어 의무적으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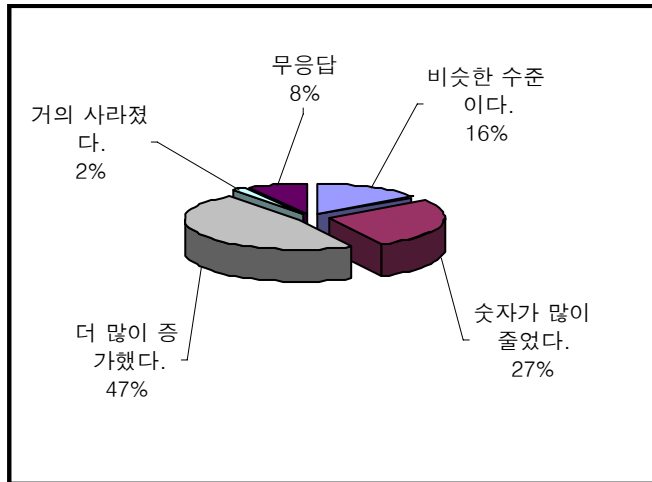
(4)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신체적, 정신적 보호권)

아동권협약 제19조와 제20조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국가적 조치를 취할 것과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열악한 가정환경에 있는 아동은 국가적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2차 이행보고서에서 북한은 어린이 보육에 대해 가족 및 사회차원에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가정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⁹⁰⁾

그러나 탈북자들에 따르면, 국내외에도 잘 알려진 바처럼 경제난으로 인해 가정환경이 나빠져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부모가 사망해서, 또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집밖으로 나와 떠돌아다니는 이른바 ‘꽃제비’라는 이름으로 구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다.

90) 위의 책, p. 244.

42. 북한에 있을 당시 90년대 후반과 비교했을 때 꽃제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설문조사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고 답변한 경우가 57명(47%)으로 가장 많았다. 그런데 심층면접 대상자의 설문조사에서는 비슷한 수준(24%)과 많이 줄었다(52%)로 나타났다.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탈북년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심층면접자는 최근 탈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하나원의 교육생들의 경우 2008년 탈북자를 비롯한 최근 탈북자가 적다는 점이다. 하나원 교육생들의 경우, 전체 93명 가운데 2008년 탈북자가 25명이지만 1990년대 탈북자가 35명이고 2000년대 초 탈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에 의하면 꽃제비의 숫자가 90년대 후반과 비교했을 때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시장이나 역전 주변에서 꽃제비를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꽃제비들을 보호 관리한다는 취지 아래 지역별로 일명 ‘꽃제비 구제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수용된 아동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규칙적인 생활과 노동을 견디지 못해 수용소에서 나와 다시 꽃제비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꽃제비들을 집단수용하니까 위생상태가 말이 아니고, 또 자유롭게 살던 아이들이 생활규율에 익숙하지 않고 또 배불리 먹지 못하고 노동을 해야 하니까 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다.”(HR17-081127)

“방목하는 소를 우리에게 가둬놓으면 갑갑증을 느끼지 않나. 꽃제비들도 몇 년 동안 방목하던 소처럼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지 않았다. 그런 아이들을 수용소에 가둬둔다고 해서 적응하지 못한다.”(HR11-081112)

3) 장애인의 권리

현재 북한의 장애인 규모 및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도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¹⁾ 신체 장애인을 돕는 국제선교단체인 세계밀알연합회가 북한의 ‘조선장애자지원협회’로부터 북한의 장애인실태 조사결과(1991년 기준)를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는 전체 인구의 3.41%에 해당하는 76만 3천 23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장애인 가운데 지체장애인이 38.8%로 가장 많았다.⁹²⁾

북한은 A규약 2차 보고서에서 장애인은 그들의 헌법적 권리와 능력에 적합한 직업을 갖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국가는 장애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바, 취학 전 장애인은 누구나 특별병원에서 의료치료를 하고, 취학연령의 경우 의료치료를 지속하면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3개 맹아학교와 9개 농아학교 등 장애인을 위한 학교가 있는데, 이러한 학교에서 1,800여명의 어린이가 소학교 및 중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특별 전문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어린이들은 국가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특별히 건립된 학교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⁹³⁾

북한의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 연구들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해 우선 장애인 격리수용, 특히 난쟁이의 격리수용과 강제적인 정관수술의 시행을 들고 있다. 그리고 특수지역인 평양과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 등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평

91) 탈북자들 대부분은 남한에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북한에 비해 장애인이 많다는 것이다. 그들은 대체로 북한에서 장애인을 가정에서 숨기는 경향이 크다는 것과 이동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한에서처럼 거리에서 장애인을 쉽게 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92) □□연합뉴스□□, 2006년 4월 9일자 보도.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8. 12. 10).

93)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8□□, pp. 137~138.

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장애인을 목격했다는 반대되는 증언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는 장애인 차별 증언들은 북한이 2003년에 제정한 ‘장애자보호법’ 제정 이전의 인권유린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격리수용이나 거주제한에 대해 예전에 듣기는 했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장애인들을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며 특히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예전에 난쟁이들을 집단수용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본 적은 없다. 그리고 맹인들의 경우에는 맹인들의 거주지역이 있고 공장도 있지만 그 이외의 일반 장애인들을 따로 집단수용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길거리에서 장애인들을 흔히 볼 수 없지만 가끔씩 볼 수 있었다.”(HR16-081126)

“평양시에서 장애인들을 다 모아서 지방으로 내보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렇지만 지방의 도시에는 그런 게 없다”(HR07-081024)

“평양시에서는 외국 사람들의 눈에 띄면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는 이유로 내보낸다고 한다. 미성년자는 가족까지 내보내고 성인인 장애인은 본인만 나간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 중심에만 없을 뿐이다. 말 그대로 평양시에 속하지만 평양 변두리에 해당하는 곳에는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이 있다”(HR11-081112)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탈북자들이 말한 장애인들 가운데 선천적 장애인들보다 후천적인 장애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선천적인 지체 장애인, 청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 중증 및 정신 장애인 등을 보기는 하지만 후천적인 즉 산업재해로 혹은 군대생활 중에 장애인이 된 사람보다 드물다고 말하고 있다. 선천적인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이들을 위한 학교시설로 농아학교나 맹아학교, 이들이 모여 운영되는 공장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지체장애 정도가 덜한 이들의 경우 정규학교 교육을 받기도 하고, 졸업 후 시계나 옷, 구두 수선과 같은 편의시설에 배치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한에서와 같이 장애가 매우 심한 경우의 장애인을 본 경우는 거의 없었다.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집단생활을 시키는 것 같다. 맹인

학교에서부터 맹인공장까지 말이다. 그런데 병어리는... 학교는 있는데, 북에서는 병어리를 크게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HR11-081112)

“내 동창생 자식 가운데 한 아이가 뇌성마비였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차별 없이 학교 다니고 그랬다. 아이들한테 놀림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하지만... 그래서 어른들이 불쌍하게 보고 그랬다.”(HR02-081001)

“신체적으로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편의시설에 근무한다. 시계도 수리하고 도장도 새겨주고, 구두수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으니까.”(HR03-081016)

한편, 산업재해로 또는 군 복무 중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연금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예군인 가운데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경공업 관련 공장(영예군인공장)에 배치되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으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고, 연금제도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그들도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영예군인의 경우,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이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영예군인들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이 없다보니까 시장에 장사하러 나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예군인증이나 내밀면서 보상해 달라, 양보해 달라 이런 식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짜증을 낸다.”(HR25-081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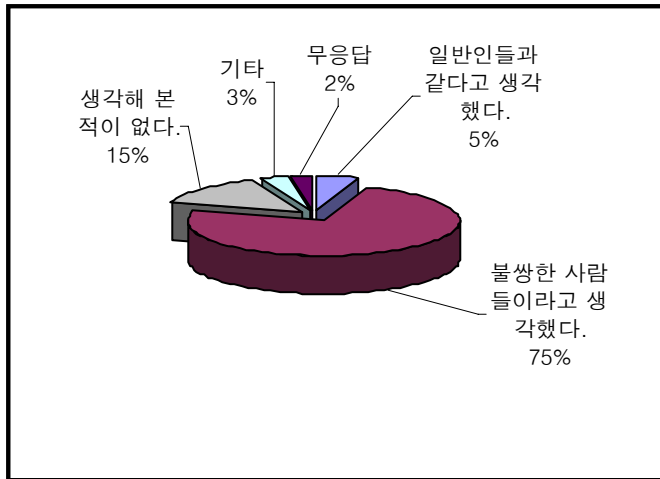
“시장에 군복 있고 목발 짚고 보란 듯이 훈장차고 나타나서 막무가내다. 술 먹고 행패부리고 싸움질이나 하고, 버스를 타도 자리 양보하지 않는다고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게 인식하지 않는다.”(HR17-081127)

“돌발적으로 생긴 장애인들은 보면 동정이 안 간다. 장마당에 와서 노는 것도 그렇고. 너희 때문에 내가 병신됐다고 하면서 식당에 가서 돈 안내고 음식 먹고 안하무인이다. 도둑질도 하고, 버스를 타도 영예군인이기 때문에 버스 값도 절반만 내면 된다는 것도 있는데, 그 자체도 안내려고 한

다.”(HR09-081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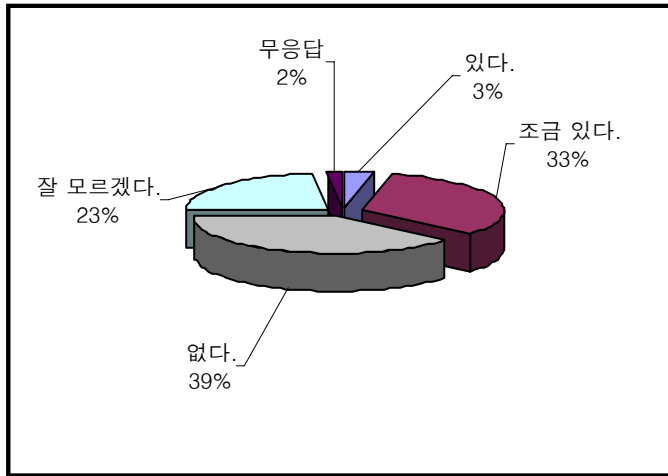
설문조사에서 탈북자들은 장애인들을 동등한 인격자로 보기보다는 불쌍한 존재로 파악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심층면접에서도 장애인들을 불쌍하게 보고 있었다. 다만 앞서 살펴봤듯이 후천적인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했다.

45. 북한에 있을 당시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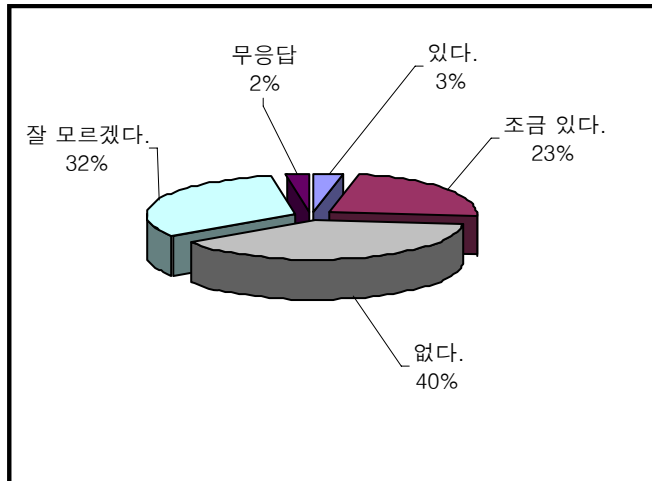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조금 있다'가 33%(40명), '없다'가 39%(48명)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한 결과 '조금 있다'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장애인을 돕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농아학교나 맹인학교 등을 볼 때 사회의 배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없다'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들이나 영예군인들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묻는 질문에도 위의 비슷한 내용으로 답변했음을 밝히고 있다.

46.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47.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총 54개조)'을 처음으로 채택하여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장애자는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는 공민으로서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사회정치적 권리와 이익에 대해 정상인과 동등하게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 법은 장애인들의 재활, 생활, 노동, 교육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 내각에 비상설 '장애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에 지장을 초래한 간부와 개인 등에게 형사적이고 행정적인 책임을 묻는 조항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장애인들에게 일반 사회인과 대등한 권리를 부여하여 장애인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에서 전반적인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고(제10조) 장애인을 위한 특수과정을 마련할 수 있으나 이것이 중등일반교육에 제외시키지 않도록 규정하여 실력 위주로 대학입학을 보호하고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제15조~제20조).⁹⁴⁾

북한에서 맹인이나 농아 등의 장애인은 맹아학교, 농아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맹인들의 정규 교육 이후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맹인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체 장애인들 가운데 그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일반인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은 편의시설에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평양시의 경우에는 중심가에서만 장애인의 거주를 제한하고 평양시 변두리에서의 거주는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에는 산업재해를 장애를 입었거나 영예군인들의 경우,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었으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것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 이들의 생활 조건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이들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마찰을 빚어냄에 따라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자보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pp. 607~614.

V. 북한인권의 실태 변화와 그 요인

1. 실태 및 변화 추이

북한의 인권 범위를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생존권(식량권), 소수자 인권 등 네 범주로 설정하여 각 범주에서의 인권 실태와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심층면접 과정에서 우선 크게 90년대와 2000년대로 구분하여 실태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2000년대 상황은 인권의 범위나 내용에 따라 최근의 실태와 변화 양상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 범위별로 개선여부 및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우선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 그리고 사회적 차별,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 등 7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봤다.

첫째, 생명권과 관련하여 국내외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공개처형이다. 그런데 조사 결과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 공개처형 빈도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공개처형 대상의 범죄행위도 간부들의 부정부패, 살인, 인신매매, 마약 제조 및 판매행위 등으로 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개처형의 빈도수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그 빈도가 줄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시기에는 정치범뿐만 아니라 일반 생계형 경제범죄에도 공개처형이 이루어졌지만 호전된 식량사정을 반영하듯 일반 생계형 경제범죄에 대한 공개처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개처형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형법적 집행과 함께 포고문이나 방

침, 지시 등에 의한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국제사회의 비판과 압력에 직면한 북한 당국이 의식적으로 공개처형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그 빈도수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법적 절차에 의한 집행 및 처형제도의 개선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는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 정치범 수용소, 송환된 탈북자의 처리 실태로 나누어 살펴봤다. 먼저 구금시설에서의 고문 및 가혹행위와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이 법적, 제도적 절차를 개선하고 이에 따라 수사와 예심, 체포와 구속, 그리고 재판 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금시설의 열악한 생활조건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대한 증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구금시설에서의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2000년대 들어 덜 하고, 법적 절차에 의해 수사, 구속, 수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문이나 가혹 행위 자체는 정도의 문제로 볼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법률로 명시된 공식적인 교정 시설 이외에도 정치범 수용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치범과 일반 사범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정치범을 다루고 있는 국가안전보위부 내 구금시설에서의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법적 절차에 의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서는 심층면접 대상자 대부분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기존 결과 이외의 새로운 내용을 발견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치사상범이 되어 수용소에 들어가면 우선 공민증을 압류 당하고 기본권을 박탈당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배급이나 의료 혜택 등도 중지된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 등의 면회나 서신 연락도 금지되며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힘든 노동과 굶주림 속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채 희망 없는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 처리 실태를 보면, 북한 당국은 탈북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였다. 이에 따라 단순 도강의 경우 노동단련형 6개월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탈북이나 남한행 기도, 혹은 외부인(주로 남한 사람)과의 접촉, 특히 기독교인과 접촉한 경우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몸수색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낄 수 있

다는 점이고, 조사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우선 지적할 것은 북한 주민들이 형법을 비롯한 각종 법적 절차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며, 법의 존재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법의 규정보다는 수령과 당의 결정과 지시, 방침이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심층면접 대상자 가운데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자신이 법적 절차에 의해 처벌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 북한 당국이 형법을 비롯한 각종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수사와 조사, 구속, 재판절차 등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북한 당국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일반범죄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치범의 경우에는 정당한 법과 절차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층면접 대상자 가운데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나 일반범죄자 가운데 일부는 재판절차 없이 형을 선고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행정처벌법에 따르면 검찰, 재판, 중재, 인민보안 기관, 검열감독기관 등이 비교적 경미한 범위반 행위에 대하여 무보수 노동, 노동교양 등의 행정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경미한 범죄나 단순도강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행정 처벌을 부과하는 형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향후 행정처벌과 관련된 조사가 더 요구된다 하겠다.

넷째,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해 북한에서는 국가에 의한 배급제와 직장배치 등으로 인해 주민의 거주 및 이동 사항이 당국의 허가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직장출근율이 낮아지고 식량구입과 장사를 위한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과정에서 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행위가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북한에서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경우는 어느 곳에서나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조직적인 통제를 통해 당 정책을 관철하고 주민들을 감시하는 인민반 제도와 생활총화제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인민반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속한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 이를 볼 때, 현재 북한에서 인민반 제도가 전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하는 북한체제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주민들을 출신성분에 따라 차등 대우를 하고 있다. 특

히 적대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직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연좌제의 적용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연좌제를 유지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여섯째,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는 북한에서 철저히 제약받고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 이외의 그 어떤 사상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종교의 자유도 헌법상에서는 보장되어 있고, 각 종교단체와 시설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는 전시용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북한 주민들은 종교 자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평양 이외의 지역에는 교회나 성당 등의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평양 주민의 경우에도 종교시설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제한구역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경지역에서는 탈북자들 가운데 중국에서 종교를 갖게 되고, 이들을 통해 성경책 등이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당국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생기자 국경지역의 주민들이 기독교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 사상 및 종교의 자유는 일체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일탈 행위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일곱 번째,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도 북한에서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북한의 언론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체제선전에 활용되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도 극도의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일반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시위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외부정보 취득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있지만, 국경지역 거주자들은 비밀리에 TV나 라디오로 외부정보를 듣거나 비디오(CD)를 통해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절친한 주위 사람들과는 체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서로 토로하기도 한다고 한다. 최근 들어 '말반동은 반동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 한다. 대체로 보면 정치적 발언이 아닌 이상 사회경제적 불만 표출은 현재 북한 사정상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현재도 강력히 제약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압력에 직면하여 현재 북한 당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법적,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측면보다는 사회적 측면, 즉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분야의 개선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공개처형, 구금시설에서의 고문이나 가혹 행위,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자의 처리 등이 최근 들어 많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체제의 특성에 기인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개인의 시

민적,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을 기준으로 하여 노동권, 단체결성 및 단결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등 5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봤다. 북한의 사회권 실태에 대한 연구는 자유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분야다. 그러나 인권의 총체성과 상호의존성을 고려한다면 자유권과 함께 총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그동안 구축하고 운영하였던 사회권과 관련된 제도를 국내외적으로 체제의 장점 가운데 하나로 선전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사회권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첫째, 북한에서 노동권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주의 원칙에 의한 공동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개인의 권리라기보다는 전 주민의 의무로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동등한 기회, 휴식,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심층면접 대상자들에 의하면 근로조건은 만족스럽지 못하며, 기본 일과시간 외에도 추가 노력동원, 각종 학습 및 회의, 생활 총화 등에 시달려 왔다고 한다. 더구나 노동의 권리도 최근 심각한 경제난으로 북한 노동자의 다수가 실업상태에 놓이면서 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장가동률의 저하로 노동자들이 출근을 해도 일을 할 수가 없고 배급 및 봉급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출근했다가도 바로 생계유지를 위해 직장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일부는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장사에 나서고 있다. 이에 북한 당국이 반복적으로 직장 복귀 지시를 내리고 있지만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이상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졸과 돈으로 직장배치와 직장 이동, 이탈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에 직장에 적을 걸어놓고 일정 금액을 납부한 후장사나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북한에서는 단체결성 및 단결권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노동자들은 피고용인인 동시에 기관이나 기업의 경영, 관리에 참여하는 주체이기도 하므로 단체교섭, 노동분쟁, 파업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기업의 주인이라고 볼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심층면접 대상자들에 의하면, 북한의 노동자들은 단체결성 및 단결권, 파업권 등이 노동자의 권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직맹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단체가 아니라 당과 국가의 정책을 선전하고 강요하는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파업 자체도 북한의 사회통제 시스템 상 불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타본

보고서에 지적하듯이 북한은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이 기준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 자랑해 왔던 제도 가운데 하나가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도 경제난으로 인해 제도와 실천 간에 커다란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난으로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생계수단인 식량공급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로 보장된 사회보장과 연금 자체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연금 자체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비정기적인 경우가 허다하고, 지급된 연금 자체로는 생활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7.1 조치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상당부분이 폐기됨으로써 가계의 인민복지의 책임이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가족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신체장애, 질병, 노령, 실직, 가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개인의 삶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더욱이 자생적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경제력이 없는 주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짐에 따라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왔었다. 그러나 무상치료제도 경제난으로 거의 유명무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일단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무료로 진찰을 해주지만 의약품의 부족으로 약을 지급할 수가 없어 의사의 처방대로 환자 개인이 시장에서 직접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지급되는 봉급과 배급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병원의 의약품을 빼내 판매하거나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치료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 스스로도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은 '11년 무상의무교육제'를 실시해 왔으나 이도 경제난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해짐으로써 주민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상으로는 무상교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으면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출신성분과 능력이 안되는 학생들이 스스로 진학을 포기하고 학교생활을 등한시하고 장사를 비롯한 다른 진로를 모색하게 된다고 한다.

1990년대 경제위기로 북한이 그동안 구축하고 운영해 왔던 사회권과 관련된 제도들이 형식상 존재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할 수 있는 조건과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권의 약화는 결국 개인의 자유권 침해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자유권과 사회권의 보장 및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존권 보장이 요구된다 하겠다.

기본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식량난으로 인해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식량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강권도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으며, 개인의 신변안전도 보장되지 못하게 된다. 식량난은 수많은 생존형 범죄자들을 양산하는 등 사회이탈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변안전이 항시적으로 위협에 노출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도 사회주의 경제체제 유지라는 차원에서 당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활동권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북한의 식량사정은 약간 호전되었지만 2006~7년 수해 및 태풍 피해로 식량생산량의 증가세를 지속하지 못했다. 어쨌든 북한은 해마다 정상배급 기준으로 약 200여만 톤 정도의 식량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자체로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자생적 시장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생적 시장화의 결과 시장에서의 구매능력이 없거나 장사능력이 없는 주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고, 나아가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식량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식량 구매능력이 없는 계층들의 생활능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들의 자유권과 사회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일탈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북한 당국의 통제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이 더욱 침해받을 소지가 높아진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소수자들은 더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등 소수자 권리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여성의 권리는 국제인권 규약(A, B규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분석 기준으로 하여 크게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사회참여, 가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성폭력 및 착취, 건강권 등 4가지로 나누어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아동의 권리는 국제인권 규약(A, B규약)과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분석 기준으로 하여 크게 기초 건강, 교육권,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 그리고 아동권과 자유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그 실태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권리는 국제인권 규약을 기준으로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였다.

여성의 권리 가운데 먼저 남녀평등권과 여성의 사회참여 부문과 관련한 조사결

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이미 성차별 해소를 위해 1946년 남녀평등법을 도입하고 오랜 역사를 통해 남녀평등을 실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큼 향상되지 않았으며, 봉건적 가부장 질서에서 형성된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도 그대로 남아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 수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서는 대의원의 경우 정책적 고려에 의한 안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치적, 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지닌 내각의 관료나 당의 중요 요직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북한에도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구비되어 있지만, 사회 전반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남존여비 사상과 결합된 사회주의적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도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여성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과거부터 부담이었던 가사노동과 사회활동, 그리고 자녀 양육문제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남성들의 배려나 국가적 정책도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가정불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또한 북한의 여성은 현재 인신매매, 성폭행,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가정폭력과 관련해서 최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부인들이 경제권을 쥐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가정 일로 남편들과 자주 충돌하고 결국은 남편의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의 폭력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성 위주의 성관념 속에서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일부 여성들은 경제난으로 인해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발생한 북한 여성들의 건강 악화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여성들의 영양부족으로 인해 출산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산 내지 사산, 미숙아 출산 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다. 식량난 이후 생활이 어려워지자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함에 따라 불법 낙태 수술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여성의 건강도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건강문제는 영양 부족, 임신, 출산, 육아의 어려움에서만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 열악한 장사환경과 조건, 그리고 가족부양의 책임 증가에 따른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고통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동의 권리 중 우선 중요한 것은 기초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대다수 아동들은 기본적인 식량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만성적인 기아와 영양실조로 인해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다. 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의 경우 더 심각하다. 결국 북한 당국도 아동의 기초 건강문제를 자체로 해결할 수 없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동의 교육권도 마찬가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돈이 없으면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취학 아동들을 담당하는 탁아소나 유치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경제난으로 북한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해졌으며 교육의 질도 크게 저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것처럼 경제난으로 가정환경이 나빠져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부모가 사망해서, 또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집밖으로 나와 떠돌아다니는 이른바 ‘꽃제비’라는 이름으로 구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도 이들을 보호 관리한다는 취지 아래 지역별로 일명 ‘꽃제비 구제소’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수용된 아동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규칙적인 생활과 노동을 견디지 못해 수용소를 나와 다시 꽃제비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한다. 물론 본 조사에 의하면 최근 들어 꽃제비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대한 사회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미비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권리와 관련해서 북한은 2003년 6월 ‘장애아보호법’을 처음으로 채택하여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선 선천적 장애인들의 경우, 맹인이나 농아 등의 장애인은 맹아학교, 농아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맹인들은 정규 교육 이후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맹인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체 장애인들 가운데 그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일반인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은 편의시설에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평양시의 경우에는 중심가에서만 장애인의 거주를 제한하고 평양시 변두리에서의 거주는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를 장애를 입었거나 영예군인들과 같은 후천적 장애인들의 경우, 과거에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었으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이것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 이들의 생활 조건이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이들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마찰을 빚어냄에 따라 사회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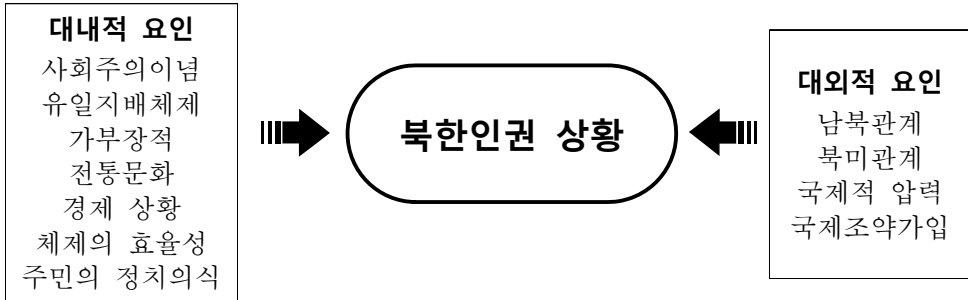
좋지 못한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면, 19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한 식량문제로 생존권을 위협받으면서 사회권을 비롯한 자유권 상황도 많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식량위기는 과거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의 장점으로 내세웠던 사회보장체제가 심각하게 쇠퇴하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이에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보장하던 사회안전망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자구책을 모색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통제력 상실을 우려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자구책을 탄압했고, 그 결과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개인의 자유권이 더욱 심각하게 훼손되어 나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매우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생존권 보장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최근에는 자결권, 개발권, 문화적 유산 존중, 인도주의적 원조, 평화권, 연대권 등 3세대 인권에 주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전반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3세대 인권이라고 불리는 자결, 개발, 평화, 연대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3세대 인권이 자유권과 사회권의 조건이지 자유권과 사회권과 대등한 하나의 인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어쨌든 국제연합이 추구하는 3대목표가 평화, 개발, 인권이다. 국제연합 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은 인권 실현이 평화의 기초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평화와 인권의 긴밀한 상호연관성과 상호의존성을 말해준다. 또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발전이 요구된다 하겠다. 따라서 개발권 또한 중요한 인권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평화권과 개발권 등 3세대 인권 영역은 자유권, 사회권과 같은 국제인권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다고 평화권과 발전권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에 향후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 조사에서는 자유권, 사회권, 생존권, 소수자 인권과 함께 3세대 인권 영역의 실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북한 인권 실태 연구의 영역의 확장은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마련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북한 인권 변화 요인

북한의 인권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그림 5-1] 참조).

[그림 5-1] 북한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크게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나뉘질 수 있는데 대내적 요인은 사회주의 이념, 유일지배체제, 경제 상황, 체제의 효율성 그리고 주민들의 정치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이념은 인권 가운데 정치적 권리 보다는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의 근본적 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중심의 유일지배체제는 권력집중을 정당화함으로써 정치적 권리의 제한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의 가부장 문화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결합하여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주의적 산업화의 좌절과 경제위기는 정치적 억압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 체제의 효율성 특히 사회통제체제의 이완은 공식적인 사법체제의 작동을 방해하고 있다. 비공식적인 사회통제기제 특히 사적인 제재와 같은 권력기관과 관련 종사자의 일탈을 조장하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유일지배체제와 주체사상에 길들여 있으면서 동시에 외부세계의 정부와 유리되어 살아온 주민들은 인권 의식 부재는 북한인권 상황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압력과 인권관련 국제조약에 북한의 참여여부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이나 북미관계의 진전은 북한체제의 경제적 조건을 호전시켜 사회경제적 권리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에 정치적 권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억압적 정치구조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관계 개선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정치적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 북한체제가 국제적 위기를 명분으로 국내적인 억압

구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인권 관련 국제조약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경우 북한당국은 인권 개선에 일정한 노력을 할 것이다.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의 북한 인권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인권의 종류에 따라 요인들이 작용하는 방식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는 최근 북한인권의 변화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한 것이다. 북한인권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결합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심층면접과 여론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상황의 변화와 요인과의 관계를 추론한 것이다.⁹⁵⁾

[표 5-1] 최근 북한인권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요인		인권	시민·정치적 권리	사회·경제적 권리	생존권	소수자권리
대내적 요인	사회주의이념	-	±	-	±	
	유일지배체제	-	-	-	-	
	가부장적 전통문화	-	△	±	-	
	경제 상황	-	-	-	±	
	체제의 효율성	±	-	-	-	
	주민의 정치의식	±	±	+	±	
대외적 요인	남북관계	±	+	+	+	
	북미관계	±	±	±	+	
	국제적 압력	+	-	-	+	
	국제조약가입	+	△	△	+	

※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긍정과 부정적 영향, △: 관계 없음.

95) [표 5-1]의 요인 검토는 논리적 추론의 결과로서 시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상관관계는 좀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북미관계 개선은 경제난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북한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기존의 권력구조 지속에는 도움이 되는 까닭에 정치적 권리 개선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 압력이나 북한의 인권조약 참여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수준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일반 주민들의 실생활에서도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북한 인권 실태의 변화 과정에서는 각각의 요인들이 인권 종류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와 관련해서 대내적 요인들이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리적·이념적 통제를 정당화하는 사회주의체제나 강력한 유일 지배체제는 체제유지를 최고의 목표로 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 강력한 물리적 통제기제는 정치적 구금이나 공개처형 등을 여전히 정당화하고 있으며 주민들에 대한 폭력도 용인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가부장적 전통 문화는 국가의 폭력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식량난으로 대변되는 경제상황도 탈북자들을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시민·정치적 권리를 악화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체제의 비효율성은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전체적으로 통제체제가 이완되는 가운데 군인이나 인민보안원 등 권력기관의 사적 폭력이 만연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보장된 다양한 방어권 행사가 묵살되는 것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⁹⁶⁾ 그러나 체제의 효율성 약화는 통제체제의 이완으로 이어져 일탈자나 범법자에 대한 처벌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식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간 것 때문에 오지로 추방된 노인 부부의 경우 살기 어려워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곧바로 탈북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사법체제의 황적 연결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형사적 처벌을 결정한 기관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처벌을 회피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인데, 이송이나 이감 과정에서 편법이나 불법적 수단으로 처벌에서 벗어나 경우가 적지 않다.⁹⁷⁾

96) 예를 들어 가택 수색이나 인신구속과정에는 영장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영장 없는 수색이나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절차적 불법성은 지적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항의 자체가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묵살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97) 체포된 지역에서 관할지역으로 옮겨지는 것과 같이 물리적 차원의 연결과정이나 구류, 예심, 재판,

주민의 정치의식도 인권과 관련하여 양방향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간 유일지배체제에서 살아 온 결과 시민사회의 경험 부재, 민주적 의식 부족으로 북한의 반인권적 정치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종의 '자발적 동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외부 정보의 유입 확대, 그리고 장기간 지속하고 있는 경제 침체,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 단절 등으로 자생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경험 등은 시민정치적 권리를 자각하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약화되면서 제한적이거나 반체제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공권력에 동의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외적인 차원에서 시민정치적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것은 국제 인권 조약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조약에 참여하는 것은 일정한 자격 조건 완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북한이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공개 처형 등 반 인권적 정책을 전환하는 것도 국제조약 참여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 압력도 시민정치적 권리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북한인권을 거론 하는 것 자체를 내정간섭으로 주장하고 반발하는 자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이루어진 형사법 개정 등 사법절차의 개선은 외부의 비판과 압력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의 변수는 북한의 시민정치적 권리와 관련하여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남북한은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데, 상대적으로 북한의 시민정치적 권리가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면 남북관계 개선이 순기능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문제가 되는 북한 주민들의 시민정치적 권리 문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미관계 요인은 북한의 시민정치적 권리 문제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최근 북미관계가 전반적으로 갈등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문제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여 왔는데, 미국의 압박이나 미국의 협상이 북한 주민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증진시켰다거나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교화소 등의 각 단계별 연결과정에서 도망을 가던, 뇌물을 쓰던 각종 방법을 통하여 처벌을 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권리와 관련해서도 대내외적 요인이 각각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의 집중과 비생산적인 생산과 유통의 토대가 되는 유일지배체제와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로 굳어버린 체제의 비효율성, 식량난에 비롯되어 기초적인 배급도 유지 못하는 경제 상황은 북한의 주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악화시키는 핵심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공장 등 생산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경제적 현실은 노동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육을 포함한 기본적인 복지체제가 작동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 권리 악화에도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적 체제와 제도 자체 그리고 경제난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이념체제는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식량난 이후 의료서비스를 비롯한 기본적인 복지체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권리에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질적 수준의 저하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도적 차원에서 최소한 유지되고 있는 사회주의 복지체제는 북한 주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⁹⁸⁾ 주민의 정치의식도 이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단주의에 익숙하면서도 민주적 시민의식이나 자본가 의식은 없는 까닭에 새로운 시장환경에서 비합법적인 부패고리를 형성하거나 천민 자본가적인 성향을 보이고,⁹⁹⁾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확대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집단은 경제적 부의 축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소위 '사회주의 자본가'로 성장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를 습득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의식주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대외적인 차원에서 북한주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남북관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경험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북지원 사업은 의료권, 교육권의 확보에도 적지않은 역할을 하였다. 협력사업의 형태로 진행된 병원건축이나 약품공장 건설, 모자보건사업 지원

98) 조사 대상자 가운데 무상치료의 경험이 여전히 70%가 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의약품 부족 등으로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것이지 기본적인 복지제도의 변화라고 하기는 어렵다.

99) 돈을 버는 경우 굶주리는 꽃제비 등을 도와주기보다는 외제물건을 사들이고, 과시하는 행위 등이 예가 된다.

도 북한주민의 사회경제적 권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학용품 지원, 학용품 공장 협력 사업, 어린이 의약품 지원 등은 교육권 증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국제적인 압력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악화시킨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재제로 인하여 북한 경제는 타격을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권, 교육권, 의료권 등 북한주민들의 기초적인 사회경제적 권리는 훼손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사회경제적 권리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식량 부족을 포함한 열악한 의식주 환경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권력구조나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산업화와 북한의 경제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 압력도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권리와 다른 부분은 전통적인 가부장문화가 생존문제와 관련해서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가 생존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주의가 아동과 노약자 보호 등의 복지 역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생계유지의 단위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외적인 차원에서는 북미관계 요인이 사회경제적 권리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동안 북미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에도 인도적 지원은 국제적인 대북재제와 상관없이 일정 부분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관계의 지속적인 갈등이 경제상황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력도 일정부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수자 권리와 관련해서 유일지배체제와 가부장적 전통문화와 체제의 효율성 변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일지배체제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포함하여 아버지 수령론 등 권력집중의 정당화를 위하여 가부장 문화를 적극적으로 융합시키는 경향이 있다. 건국초기 여성평등이 강조된 것과 달리 유일지배체제의 공고화 이후 북한 여성의 지위가 점차 하락하였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다든지 가사노동을 여성에게 전담시키는 등 북한여성의 열악한 환경의 중요한 배경이 유일지배체제와 가부장적 전통문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제난은 대체적으로 소수자 권리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나, 여성의 지위 및 권리와 관련해서는 이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이나 기업소 등이 멈추어 서고, 배급제가 붕괴된 결과 시장으로 사람들이 내몰

리면서 실질적으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졌던 것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에도 북한의 여성들이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와 같이 가족의 생계를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과는 성격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노동의 여성들의 몫이었다는 점에서는 '슈퍼우먼 콤플렉스'에 시달렸고 일종의 이중착취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 여성의 권리 신장에 부정적이었던 것이다. 성폭력의 증대나 매춘의 횡횡도 경제난과 무관하지 않고, 꽃제비의 양산, 교육환경 및 아동 건강의 악화 등도 경제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경제만은 소수자 권리에 부정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실질적인 가장역할을 수행하면서 가족 내에서 발언권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최근 두드러지는 현상이라는 점에서는 경제위기가 여성의 지위 상승의 환경이 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소수자 권리와 관련해서 대외적인 변수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와 달리 북한 입장에서도 소수자권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 대외적 요구를 수용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적고,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도와 같이 대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북한여성의 인식전환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등 일상적인 접촉과정에서 변화하는 남한의 의식이 전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교류를 통한 아동을 포함한 소수자지원 사업도 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인 관심의 지속도 마찬가지로 차원에서 북한의 소수자권리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I. 결론: 최근 북한인권 변화의 평가 및 전망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과 설문지 조사 결과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강력한 국가적 통제아래 제한되고 있다. 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부·인민군 등 물리적 억압기구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에서는 고문이나 가혹행위와 같은 폭력을 동반한 사회적 제재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인권적인 공개처형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정치적 행동은 물론 사상의 자유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물리적 억압기구 외에도 당의 지휘 하에 사법기관들이 참여하는 한시적 기구인 '구루빠'가 수시로 구성되어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민정치적 권리의 제한은 부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단 주목할 만한 것은 형법 개정 등 제도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사법적 절차를 강화하는 등 죄형법정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권과 관련된 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와 현실이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제도 변화에 대한 지식도 없으며, 과거부터 이어온 통제에 익숙하여 불법적이고 억압적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러한 경향은 통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처형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

100) 구루빠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축되는데, 조사에서 구금 그리고 재판 진행까지 사법적 절차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제적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반응과는 별개로 지속적인 압박은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정치적 권리가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현상이 보이는 것은 제도적 차원의 변혁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효율성 저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경제위기 이후 국가체제 전반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법적 제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제기구간의 유기적 연결이 부족하면서 조사와 처벌간에 간극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처벌 이후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물리적 통제체제 뿐만 아니라 인민반 활동과 같은 사회통제체제의 이완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국가기강 자체가 와해되면서 비합법적인 수단이나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조사기간이나 재판과정에서 뇌물 공여 등의 수단으로 처벌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시민사회적 권리가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체제이완에 따른 사회적 일탈행위의 급증 자체가 사회적 통제를 부분적으로 이완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탈북자의 경우인데, 다수의 탈북자가 발생함에 따라 남한과 연관되거나 기독교와 연계되는 경우나 누범이 아닌 사람은 처벌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문제로 급증하는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이다. 제재와 처벌에도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처벌의 완화는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체제이완으로 인권의 부분적인 개선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도래하고 있지만, 이것인 근본적인 인권 개선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체제의 효율성이 회복된다면 억압구조도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제이완으로 공식적인 사법구조의 효율성 저하는 권력기관이나 기관원 들에 의한 사적 제재와 같은 폭력의 증대도 동반하고 있다는 현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권리와 생존권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난은 식량문제와 같은 직접적 생존권에도 영향을 주었지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기업소나 공장이 제대로 돌지 않은 까닭에 노

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 복지, 교육, 육아 관련 제도를 마비시켜 사회경제적 권리와 생존권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극심한 식량위기를 겪으면서 북한 주민들은 시장의 활용 등 자생적으로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되어온 남한의 대북 지원과 국제적 도움으로 아사자의 발생 등 극한적 생존권 문제는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수자 권리의 경우 여성의 인권은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계유지를 위하여 생업 전선에 나서면서도 가사노동은 여전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여성의 이중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정폭력과 성폭력 그리고 매춘 등 반 여성적인 문제도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실질적으로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고 있다는 증언도 적지 않다. 아동권의 경우는 어떤 면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양부족 등으로 신체발달이 지체되는 등 건강권의 문제도 심각하고, 가족의 해체로 인한 '꽃제비'라고 하는 부랑아가 생겨나는 경향도 지속되고 있다.¹⁰¹⁾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육권의 악화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 가는 비율이 60% 남짓하다는 것은 현재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각과는 다소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북한에는 장애자를 무조건 배척한다고 이야기해왔는데 조사에 따르면 평양과 같은 특별한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장애인을 위한 제도도 비교적 구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사회적 환경이 악화되면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고통을 더욱 심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최근 북한 인권상황과 변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민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열악하지만, 제도적인 차원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체제의 이완과 경제난으로 일반 주민들의 시민사회적 권리가 조금이나마 확보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경제적 권리는 악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1990년대 중반과 같은 긴

101) 꽃제비가 과거 보다 많아졌다는 응답이 47%이고 비슷하다는 응답이 16%라는 조사결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급한 식량위기는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제도의 와해, 교육·의료체제의 손상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인권의 구체적 종류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인권 침해의 양상이 사회집단별,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있으며,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과 같은 새로운 생존환경에 적응한 집단은 부의 축적을 바탕으로 권력과 유착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시민정치적 권리에서 사회경제적 권리까지 다양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에 여기에서 탈락한 집단은 폭력적인 억압체제에도 무방비 상태이고 기본적인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공동체 정신도 와해되면서 이웃이 멀고 있어도 외면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인권은 근본적으로 북한체제의 전환이 가능할 때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북한인권의 변화실태를 본다면 앞으로 긍정적인 형태로 개선될 여지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국제적 압력이나 국제조약에의 참여 등은 최소한 제도적인 개선은 유발할 수 있다. 현재는 비록 현실과 유리되는 제도변혁이라고 할지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현상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북미관계의 개선도 양면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적절하게 진행된다면 북한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외적 요인은 북한인권 변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북한내부 요인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한 것은 인권의 다양한 측면이 있으며, 인권 종류별로 차별화된 개선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의 경우 어떤 부분이나 다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급한 분야 그리고 개선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북한인권 개선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인권 실태 조사에 대한 본 실태조사는 인권의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최근의 상황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종류별로 영향을 미친 요소들은 개략적으로나마 검토하였다는 것도 향후 진전된 연구나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조사대상의 제한성은 신뢰도의 확보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사대상자의 편중성을 극복하고 분야별로 특화된 조사 대상자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제는 북한인권 문제가 중요하냐 아니냐하는 식의 전체

론적 접근, 친북이나 반북이나 하는 식의 정쟁적 논의는 극복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장기적인 전략수립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에는 분야별로 심층적인 연구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강철환, □□수용소의 노래□□ (서울: 시대정신, 2005).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08).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탈북자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4).

서보혁, □□북한인권: 이론·실제·정책□□ (서울: 한울, 2007).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안명철, □□완전통제구역□□ (서울: 시대정신, 2007).

윤여상 외 7인, 『북한인권통계백서 2007』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 지도사상과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1995).

좋은벗들, 『북한식량난과 인권』 (서울: 좋은벗들, 2004).

_____, 『2006-2007 북한사회변화와 인권』 (서울: 좋은벗들, 2007).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56호(2007.01.24).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107호(2008. 1.30).

_____, □□오늘의 북한소식□□ 제114호(2008. 03. 05).

최의철,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 (서울: 백산자료원, 2001).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8』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 2008』 (서울: 통일연구원, 2008).

2) 논문

양영희, “북한의 사법제도와 인권보장문제,” □□법을 통해 본 북한 인권문제□□ (2008 ‘북한 인권과 법’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2008. 5. 22).

이영훈,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빈곤의 늪에서의 Big Push,” □□북한 경제의 현황 평가 및 향후 전망-The Asia Foundation-IFES Joint International Workshop□□(2008.11).

이장희, “Helsinki ‘인권’규정이 분단국가에 주는 의미,” 『통일문제연구』, 제 1권 3호(1989).

장명봉, “북한의 헌법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편, 『북한인권법제연구』.

□□연합뉴스□□, 2003년 4월 3일.

□□연합뉴스□□, 2006년 4월 9일자 보도.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08. 12. 10).

2. 북한문헌

『국제법 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대중정치용어사전』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인권옹호’의 반동성』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주체의 사회주의 헌법 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김정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년 5월 5일),” 『김정일 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정일, “사회주의에 대한 희망은 허용될수 없다(1993년 3월 1일),”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년 11월 1일),” 『김정일 선집 1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

3. 외국문헌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r. Vitit Muntarbhorn,” A/HRC/7/20, 15 February 2008.

Amnesty International, “North Korea, Starved of Rights: Human rights and the Food Crisi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January 2004. <http://www.amnesty.org/en/library/info/ASA24/003/2004> (검색일: 2008년 10월 13일).

Human Rights Watch, “North Korea: Harsher Policies against Border-Crossers,” March 2007. <http://www.hrw.org/en/reports/2007/03/05/north-korea-harsher-policies-against-border-crossers> (검색일: 2008년 10월 13일)

「2007 인권현황보고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2008년 12월 11일).http://korean.seoul.usembassy.gov/special_reports.html (검색일: 2008년 12월 11일)

「2008국제종교자유보고서」.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2008년 9월 19일). http://korean.seoul.usembassy.gov/special_reports.html (검색일: 2008년 12월 11일).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20. 공개처형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① 그렇다.

② 본 적은 없지만 소문은 들었다.

③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21. 공개처형을 직접 봤다면, 당시 무슨 죄목으로 처형이 실시되었습니까?

()

22. 북한에 있을 당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23. 북한에 있을 당시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4.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IV.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25. 북한에 있을 당시 직장에 매일 출근하셨습니까?

① 매일 출근했다.

② 가끔씩 출근했다.

③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

④ 기타

26.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① 출근해도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② 식량을 구하기 위해

③ 장사를 하기 위해

④ 기타

27. 직장이탈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을 텐데, 이를 어떻게 피했습니까?

① 서로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눈감아 줬다.

① 있다

② 조금 있다

③ 없다

④ 잘 모르겠다

50. 북한에 있을 당시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김정일 정권

② 미국

③ 남북한의 분단과 대치

④ 기타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북한 주민 인권 실태조사 설문 결과(객관식)

I. 기본권(생존권 중심)

1. 북한에 있을 당시 식량배급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문항	응답
규정대로 지급되었다.	2%(2명)
기일은 지켜졌지만 배급량이 줄었다.	10%(12명)
기일도 배급량도 지켜지지 않았다.	39%(47명)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6%(57명)
무응답	3%(4명)

2. 주로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문항	응답
주로 배급으로 해결했다.	6%(7명)
장사를 비롯한 자구책을 통해 해결했다.	83%(103명)
친인척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했다.	3%(4명)
기타	4%(5명)
무응답	4%(5명)

※ 중복응답포함

3. 당시 의식주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문항	응답
의식주 해결이 그럭저럭 가능했다.	12%(15명)
의식주 해결이 조금 힘들었다.	25%(31명)
의식주 해결이 거의 어려웠다.	62%(75명)
기타	0%(0명)
무응답	1%(1명)

4. 북한에 있을 때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까?

문항	응답
직접 보았다.	58%(70명)
본 적이 있는 사람한테 들었다.	17%(21명)
소문으로만 들었다.	22%(27명)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2%(3명)
무응답	1%(1명)

5. 북한에서 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문항	응답
먹는 문제	53%(73명)
신분차별	16%(22명)
경제활동의 자유	28%(38명)
기타	3%(4명)

※ 중복응답 포함

6. 시장에서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있다	62%(76명)
없다	38%(46명)

II. 시민적 · 정치적 권리

8. 북한에 있을 당시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있다	43%(52명)
없다	57%(70명)

9. 있다면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었습니까?

문항	응답
직접 한국이나 중국 매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해	21%(28명)
북한의 TV나 라디오, 신문	6%(8명)
해외 친척이나 이웃	18%(24명)
지하문건을 통해	0%(0명)
기타	5%(6명)
무응답	50%(65명)

※ 중복응답 포함

10. 북한에 있을 당시 '인민반 제도'나 '5호 담당제' 등은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문항	응답
잘 운영되고 있었다.	35%(43명)
형식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56%(68명)
그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	7%(8명)
무응답	2%(3명)

11. 북한에 있을 당시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응답
그렇다.	7%(8명)
아니다.	75%(91명)
잘 모르겠다.	16%(20명)
기타	2%(3명)

12. 인민보안성이나 보위부 등이 그들의 권한을 이용해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있다	79%(97명)
없다	6%(7명)
생각한 적 없다.	13%(16명)
기타	0%(0명)
무응답	2%(2명)

13. 북한에 있을 당시 주위 사람들과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정세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있다	48%(59명)
없다	50%(60명)
무응답	2% (3명)

14. 북한에 있을 당시 반체제, 반정부적 집회에 대한 정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있다	15%(18명)
없다	83%(101명)
무응답	2% (3명)

15. 비공식적, 불법적 출판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있다	15%(18명)
없다	84%(101명)
무응답	1% (1명)

16. 북한에 있을 당시 주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 활동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있다	15%(18명)
없다	83%(102명)
무응답	2% (2명)

17. 북한에 있을 당시 범법자에 대한 재판 절차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문항	응답
알고 있었다.	35%(43명)
모르고 있었다.	63%(76명)
무응답	2%(3명)

18. 북한에 있을 당시 대사(사면)가 실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문항	응답
알고 있었다.	50%(61명)
모르고 있었다.	46%(56명)
무응답	4%(5명)

19. 북한에 있을 당시 재판받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문항	응답
알고 있었다.	30%(37명)
모르고 있었다.	68%(82명)
무응답	2%(3명)

20. 공개처형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그렇다.	76%(93명)
본 적은 없지만 소문은 들었다.	22%(27명)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1%(1명)
무응답	1%(1명)

22. 북한에 있을 당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문항	응답
알고 있었다.	57%(69명)
모르고 있었다.	41%(50명)
무응답	2%(3명)

23. 북한에 있을 당시 교화소나 노동단련대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있다	78%(95명)
없다	20%(25명)
무응답	2% (2명)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25. 북한에 있을 당시 직장에 매일 출근하셨습니다가?

문항	응답
매일 출근했다.	36%(43명)
가끔씩 출근했다.	26%(32명)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	25%(31명)
기타	6%(7명)
무응답	7%(9명)

26. 거의 출근하지 않았다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셨습니다가?

문항	응답
출근해도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2%(16명)
식량을 구하기 위해	27%(35명)
장사를 하기 위해	21%(27명)
기타	8%(10명)
무응답	32%(43명)

※ 중복응답포함

27. 직장이탈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을 텐데, 이를 어떻게 피했습니까?

문항	응답
서로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눈감아줬다.	24%(30명)
뇌물을 통해 해결했다.	27%(34명)
기타	19%(23명)
무응답	30%(37명)

※ 중복응답포함

28. 북한에 있을 당시 직장의 근무환경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문항	응답
만족하고 있었다.	15%(18명)
만족하지 못했다.	76%(93명)
무응답	9%(11명)

29. 북한에 있을 당시 직장의 복지시설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문항	응답
만족하고 있었다.	7%(8명)
만족하지 못했다.	81%(99명)
무응답	12%(15명)

30.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었습니까?

문항	응답
그렇다.	5%(6명)
만족스럽지 않지만 운영되고 있었다.	58%(71명)
아니다.	32%(39명)
기타	3%(4명)
무응답	2%(2명)

31. 북한에 있을 당시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있다	71%(87명)
없다	27%(33명)
무응답	2%(2명)

32. 북한에 있을 당시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까?

문항	응답
그렇다.	16%(20명)
아니다.	83%(101명)
무응답	1%(1명)

33. 환자가 발생하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문항	응답
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 받는다.	7%(10명)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약은 개인적으로 구입한다.	60%(83명)
병원에서의 진찰 없이 시장에서 약을 사서 먹는다.	21%(29명)
치료나 약을 구할 형편이 되지 못했다.	12%(16명)

※ 중복응답포함

34. 북한에 있을 당시 출신성분으로 인해 차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있다	25%(30명)
조금 있다.	23%(28명)
거의 없다.	52%(64명)

35. 북한에 있을 당시 가족이나 친척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있다	33%(40명)
없다.	65%(79명)
무응답	2%(3명)

36. 북한에 있을 당시 월남자 가족이나 해외교포 가족 등이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응답
그렇다.	52%(64명)
조금 그렇다.	19%(23명)
아니다.	8%(10명)
모르겠다.	20%(24명)
무응답	1%(1명)

IV. 소수자 인권

37.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남녀 평등'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응답
그렇다.	10%(12명)
조금 그렇다.	33%(40명)
아니다.	42%(52명)
모르겠다.	14%(17명)
무응답	1%(1명)

38. 북한에 있을 당시 북한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그렇다.	57%(70명)
조금 그렇다.	30%(37명)
아니다.	7%(8명)
모르겠다.	5%(6명)
무응답	1%(1명)

39. 북한에 있을 당시 성폭력 사건이 급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응답
그렇다.	17%(21명)
조금 그렇다.	35%(43명)
아니다.	7%(9명)
모르겠다.	39%(47명)
무응답	2%(2명)

40. 북한사회에도 매춘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그렇다.	36%(43명)
조금 그렇다.	25%(30명)
아니다.	2%(3명)
모르겠다.	34%(42명)
무응답	3%(4명)

41. 북한에 있을 당시 아동의 영양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문항	응답
좋다.	0%(0명)
그럭저럭 괜찮다.	18%(22명)
심각한 상태다.	79%(96명)
무응답	3%(4명)

42. 북한에 있을 당시 90년대 후반과 비교했을 때 꽃제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문항	응답
비슷한 수준이다.	16%(19명)
숫자가 많이 줄었다.	27%(33명)
더 많이 증가했다.	47%(57명)
거의 사라졌다.	2%(3명)
무응답	8%(10명)

43. 북한에 있을 당시 학교에 가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문항	응답
거의 모두가 학교에 갔다.	30%(36명)
절반 정도만이 학교에 갔다.	66%(80명)
기타	2%(3명)
무응답	2%(3명)

44.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무엇을 합니까?

문항	응답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낸다.	4%(6명)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한다.	39%(62명)
길거리에서 구걸한다.	26%(40명)
집안일을 돕는다.	25%(39명)
기타	3%(4명)
무응답	3%(4명)

※ 중복응답 포함

45. 북한에 있을 당시 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다?

문항	응답
일반인들과 같다고 생각했다.	5%(6명)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75%(91명)
생각해 본 적이 없다.	15%(18명)
기타	3%(4명)
무응답	2%(3명)

46.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응답
있다.	3%(4명)
조금 있다.	33%(40명)
없다.	39%(48명)
잘 모르겠다.	23%(28명)
무응답	2%(2명)

47. 북한 사회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응답
있다.	3%(4명)
조금 있다.	23%(28명)
없다.	40%(48명)
잘 모르겠다.	32%(39명)
무응답	2%(3명)

V. 기타

49.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되는 주민 동원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응답
있다.	56%(68명)
조금 있다.	32%(39명)
없다.	3%(4명)
잘 모르겠다.	7%(9명)
무응답	2%(2명)

50. 북한에 있을 당시 사회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응답
김정일 정권	69%(91명)
미국	17%(22명)
남북한의 분단과 대치	7%(9명)
기타	2%(3명)
무응답	5%(6명)

※ 중복응답 포함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

1. 자유권

1) 공개처형

“공개처형이 지역마다 다르지만 우리 온성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에는 없었다.”(HR23-081224)

“90년대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총성을 많이 울렸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는 적어졌다. 2년에 한번 정도로 이루어진 것 같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2007년 9월이었다.”(HR16-081126)

“2005년부터는 사형한 거는 기본 인신매매다. 그 다음에 마약. 이 2개는 기본적으로 총살이다. 2008년 2월에도 이 죄목으로 총살했다.”(HR01-081001)

“북한에서 제일 무거운 형기는 중국에 여자를 팔아넘기는 인신매매이다. 지금(2005년 이후)은 세 명 이상이면 무조건 총살이다.”(HR12-081112)

“가장 마지막으로 본 게 2007년 11월이다. 남자 3명에 여자 1명이 총살되었다. 주모자는 34살난 기사장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보안서 감찰과정인데, 이 사람이 주모자하고 돈 받아먹고 보안서에서 체포하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알려줬다. 결국 죄인한테 도피사실을 조성해 줬으니까, 그건 영락없이 걸려서 총살당했다. 이 하나는 나이가 50이된 기장아버지인데, 이 사람도 주모자와 연결이 돼서 마약을 판매하는 사업하다가 총살됐다. 한 여자는 청진여자인데 8천 달러를 주모자한테 줬는데 그 돈 찾으러 갔다가 걸렸다. 여튼 주모자가 생산한 걸 중국에다 팔았으니까 그게 걸려서 총살됐다.”(HR07-081024)

2) 구금시설에서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 내가 질식했다. 한번 씩 구두 발로 머리를 찰 때마다 작은 방에 피가 분수처럼 뿜어나갔다. 너무 때리니까 단번에 얼굴이 두 배로 불었다. 얼굴이 불고 턱이 찢어지고 갈비가 금이 갔다.”(HR05-081017, 2004년 온성 보위부 구류장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릎 꿇고 앉아서 엉덩이 얻어맞고, 잔등 얻어맞고 온몸을 맞아 시퍼렇게 멍들었다. 그리고 보름 동안이나 씹지도 못하고 입을 벌리지도 못했다.”(HR16-081126, 2006년 청진 도 집결소에서)

“옷을 다 벗긴 후 벽을 향해 무릎을 꿇고 뒷짐을 지고 앉아 있게 한다. 간수 두 명이 와서 옷을 다 뜯는다. 돈 감춘 게 있는가 해서, 혁띠 빼고, 그 다음에 팬티 고무줄도 다 빼다. 목을 감을 수 있는 끈이라는 건 다 빼는 모양이다. ... 조사와 수감 과정에서 초절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때린다. 사람이 맞아서 완전히 녹초가 된다.”(HR09-081030, 2007년)

“구류장에서 봤는데 임신부 열여섯 살짜리 애가 임신해서 들어왔다. 거기서 ‘너 왜 중국새끼를 데리고 왔어’ 하면서 발로 막 차고 그랬다. 그래서 그 애가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 갔다.”(HR 29-091016, 2002년)

“교화소에서 첫째는 의료시설이라고 해야 하나, 아픈 것은 보통이고 그냥 지나보낸다. 그리고 상처가 깊고 그러면 처치해 주는 것이 없다. 그냥 이불숨을 소금물에 삶아 살균해서 고름이나 닦아 내는 정도다.” (HR15-081126, 2005년 증산교화소에서)

“교화소에서 우리 반에 50명인데 대사령 받고 나온 사람이 36명밖에 안 된다. 그나마 36명 중에 집에 가다가 죽은 사람이 1명 있다. (15명이 안에서) 굶어서 죽었다. 일단은 배가 고프니까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그렇다 보니까 선생

한테 매 맞고 하니까, 사람이 자연히 맥 놓고 죽는 거다. (HR15-081126, 2005년 증산교화소에서)

3) 정치범 수용소

“2007년에 형부가 중국에서 한국행을 기도하다가 체포되어 송환되었는데, 도 보위부에서의 취급과정에서 기독교인을 통한 한국행이 밝혀져 온 집안 식구들이 조사를 받았고, 형부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형부가 어느 수용소에 수감되었는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HR25-081226)

4)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실태

“우리 옆집 사람의 부인 친구가 중국에 갔다 오다가 잡혔다. 그것도 고발해서 잡힌 것인데 그 사람은 중국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다가 두만강에서 잡혔다.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면 살 수 있는데 말을 잘못된 거다. ‘하나님!’ 이런 소리를 해서 잡혔다.”(HR 24-081224)

“중국으로 탈북 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송환되어 북에 와서도 그 신념을 꺾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옹호하다가 정치범수용소에 갔다”(HR 03-081016, 2004년)

“보위부 집결소에서 교회에 나갔다고 해서 잡힌 사람이 많다. 북한에서 엄하게 보는 것이 종교문제다. 그 사람들은 개 취급한다. 우리도 개 취급이지만 그 이상으로 거기서 학대를 받는다. ‘하나님이 밥 줬냐, 하나님이 무슨 밥을 줬냐면서 심하게 구타를 한다.’”(HR 09-081030, 2007년)

“남한에 와서 책을 읽어보니까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존재하는지 저는 의심하게 된다. 성경책만 있어도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데 그 것이 들키는 날에 아마 다 공개처형일텐데.”(HR 10-081031)

5) 집회, 결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낙서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내가 교원으로 있었던 학교가 아니라 친구가 있었던 학교였는데 화장실에 정치적 낙서가 있어서 보위부 검열이 내려온 적이 있었다고 한다.”(HR 17-081127, 2002년 친구 교원을 통해서)

“TV 채널을 고정시켜도 그걸 뽑지 않는 이상에는. 채널에 종잇장 같은 것을 붙인다. 종잇장 같은 것을 붙이고, 채널을 뽑는다 해도 우리 회령 같은 경우는 중국 전파가 너무 세 가지고 빼도 그걸 본다.”(HR 25-081226)

“요즘 TV는 다 리모컨을 하지 않나! 그래서 리모컨을 두 개를 준비한다. 하나는 고장 난 것으로 해서 검열 나올 때 보여주고, 진짜는 숨겨 놓다가 몰래 TV 시청을 할 때 사용한다.”(HR 29-090116)

“친한 사람들끼리는 김정일과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뭐 노골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정치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개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만 하지 그 외에는 못한다.”(HR 17-081127)

“친구들한테 내가 동원 갔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칠보산 동원 가서 도로건설을 했었는데, 그 도로는 순전히 관광도로인데, 이거 100원 투자했으면 100원 이상을 벌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 길이 김정일 혼자 다니는 길이다. 여기에 뭘 그리 많이 투자하나?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HR 23-081224)

“한국드라마 ‘쩨의 전쟁’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봤는데 신고에 걸렸다. 우리 아들이 친구들끼리 돌려서 보다가, 우리 집에서 봤는데 그것이 제기됐다. 검찰소 소장이 우리 집을 가택수색했다. 그게 나와서 지금 작년에 포고가 떨어졌다. 2007년 9월달 경에 포고가 떨어졌다. 그래서 남조선 출판물, 녹화물 이런 것들을 보는 경우는 추방, 교화, 단련대 이런 형을 내렸다. 그래서

내가 달아났다. 잡히면 추방 뿐만 아니라 나는 전과자이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도 없이 또 교화소를 가야했다. 그래서 달아났다.” (HR12-081112)

“CD를 통해서 많이 접했다. 오후 문 열고 문 닫아 놓고 누가 와서 노크하면 전혀 집에 사람 없는 것처럼 하고. 다 줄이고 우리는 이어폰이 없으니까 북한은 이어폰이 없으니까 그 소리를 줄여놓고 뭐 알아듣지 못하면 나중에 야 그 듣고 싶은데 다른 때 다시 조용할 시간 새벽시간 이런 시간에 딱 켜놓고... 완전 가슴 다 줄이면서 그거 이제 발각됐다하면 교도소 가야 되는데...정치범 교도소 가야 되는데...얼마나 가슴 줄이면서 봤는지 모른다.”(HR06-081023)

2. 사회권

1) 노동권, 단체결성권 및 단결권 실태

“우리 공장(일용품공장)은 80~90%는 출근을 했다. 제일 심할 때는 90년대는 70% 정도 출근을 하고... 공장에서 비누를 100개 만들었다 하면 한 70%는 창고에 있고, 30%는 다 도둑질 하고... 그것이 생계수단이니까. 출근을 해야 비누를 장마당에 내다 팔아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니까. 그런 일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 매수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이 우리 공장에서 1차적인 생계수단이었다.”(HR 23-081224)

“미공급(고난의 행군 시기) 때는 그냥 눈 감아 주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거의 뇌물을 고이고, 담배나 뭐 이런 거 고이고 시간 받고 그랬다. 북한은 거의 뇌물작전이다”(HR 25-081226)

“지방공장에서는 계획을 못하는 경우에는 8.3 인민소비품 생산을 통해 채우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어 내가 공장에 적을 두고 이 달에 15만원을 내면 한 달 동안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그 공장에서 신원을 보증해 준다.”(HR 06-081023)

“노동정책을 보면 노동자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있는데 실제 권리나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 또 행사한다고 자기한테 이롭게 돌아올 수 없다. 또 일반노동자들은 자기의 권리가 뭔지, 의무가 뭔지도 모르다. 과업은 북한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상에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대로 하자면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하여 시위 투쟁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기본 조직자부터 시작해서 참여한 사람들까지 전부 처벌받는다.”(HR 07-081024)

2) 사회보장권 실태

“어쨌든 한 달에 사회보장 한다고 해서 사회보장금이라는 게 우리 시어머니는 북한 돈으로 500원인지 400원인지 나왔어요. 사실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죠. 장마당에 나가서 별면 그것보다 더 별죠. 그래도 운영은 하지 않았어요. 매 달 사회보장금이라고 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지급됐어요.”(HR 08-081024)

“사회보장제도로서 1인당 사회보장비가 얼마 정도의 돈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방예산이 있을 때는 나오고 없을 때는 안 나온다.”(HR 07-081024)

“90년대 초반까지는 연로보장금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초급 당비서는 동사무소, 시청하고도 좀 많이 연계되어 있다. 나도 거기에 가서 장부를 본 적이 있는데 90년대 후반부터는 지급이 안 되고 있었다.”(HR 11-081112)

“공장에서 노동하다가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액수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못한다.”(HR 16-081126)

3) 건강권

“우리 남편이 비행 대대장이었고 해서 내 아이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료

받고 수술도 받고 정말 호강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거의 90% 이상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다. 병원은 오직 처방만 내리는 데다. 그리고 모든 약은 시장에서 구입해야 한다.”(HR 11-081112)

“처방은 다 무상이다. 그런데 진료소에 약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어떤 약을 시장에서 구해서 먹으라고 한다. 요즘에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지금은 공짜가 없다. 돈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HR 06-081023)

“병원에 약이 공급되기는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의사들이 그걸 빼내 팔아먹는다. 환자한테 처방을 하고 어떤 약을 복용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시장에는 가짜가 많으니까, 자기가 소개한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약을 팔아먹는다. 사실 시장에는 가짜가 가끔씩 있다고 한다.”(HR 03-081016)

4) 교육권

“내가 아이 가방을 들고 간다는 게 친구 집에서 술을 먹고 집에 오다가 잠깐 쉬다가 그만 아이 가방을 길거리에 두고 왔었다. 교과서도 없지, 공책도 없지. 시장에 나가 사야 하는데 당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한동안 못 간적이 있다.”(HR 03-081016)

“무상교육이라 하지만 북한에 제1중학교 체계, 수재학교가 생기면서 이상해졌다. 중앙대학에 갈 수 있는 펀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선적으로 제1중학교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다 거기를 보내려고 한다. 그런데 성적이 좋지 못하면 결국 교장에게 뇌물을 쓰게 된다. 수재학교에 입학한다는 자체는 중앙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그리고 대학에 갈 때도 뇌물을 쓴다. 내 아이가 2004년도에 김일성종합대학에 갈 때도 뇌물을 고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김일성종합대는 평양 학생들인 경우는 3천5백불, 지방학생은 2천불로 규정되어 그 돈이 간부과로 들어갔다.”(HR 09-081030)

“집안이 가난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북한은 무상교육이다. 그런

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국가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구가 나가면 1인당 얼마씩 내라 한다.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돈을 거둔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내지 못하면 선생에게 혼이 난다고 한다.”(HR 23-081224)

“최근에는 돈 없으면 탁아소나 유치원에도 못 보낸다. 공식적으로 돈을 내라고 하지 않지만, 설비를 산다든지 도색을 한다든지 하면 돈을 요구한다. 이러다보니 돈 없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맡기지도 못한다.”(HR 17-081127)

“유치원에서 돈이나 좀 가져다주는 집 아이들은 예뻐해 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미워하고 그러니까... 사실 없는 사람들은 유치원에 맡기지도 못한다. 요즘은 사설학원 비슷하게 변질됐다. 그러다보니 가난한 집안에서는 부부가 모두 돈벌이 하러 밖에 나갈 때 어린 아이를 집에 가두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애들이 집에서 불장난하다가 죽는 사건도 있었다. 동네에 일하지 않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으면 한 달에 일정 정도의 돈을 주고 아이를 맡기기도 한다.”(HR 03-081016)

“우리 고난의 행군 시기가 제가 중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대학을 가겠다고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수업이 끝나면 또 오후에 남아서 사서 같은데 남아서 공부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밤에 공부하고 했는데 4학년 때 고난의 행군 겪으니까 학교는 가긴 가는데 공부가 머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4학년 때부터는 실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 했어요 오후에는 학교에서도 무슨 오후 첫 수업 마치고 끝나면 집에 와가지고 산에 나물 캐러 다니든가 이런 일 하다가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운데 공부를 하면 뭐하나 잘 살아야지 이 생각이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 포기했었어요.”(HR08-081024)

3. 소수자 권리

1) 여성권 실태

“여성이 가정 일에서 해방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일은 너무 중노동이다. 처녀 때 그렇게 똑똑하고 잘 나갔다 하더라도 시집만 가면 부엌 운전수가 되고 만다. 처녀 총각 때는 다 평등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여학생들에게 ‘너 암만 그래도 시집가면 다 끝난다. 너무 우쭐거리지 마라. 지금 똑똑하고 공부도 잘 하는 것 같아도 시집만 가면 끝이다. 나라 일은 그래도 남자들이 하지’라고 말했다. 남성에게는 이렇게 남성 우월주의가 은연중에 교육된다.”(HR 03-081016)

“북에서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 잘 때까지 일체 집안 일 혼자 하고, 낮에는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한다. 남편은 도와주기는커녕 때리지만 않아도 다행이다.”(HR 06-081023)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여자가 한 번 시집 가면 그 집 사람이 되어야 했지만, 요즘은 여성들의 사고도 많이 달라져서 이렇게 살 바에는 갈라지자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탈북 하는 여성들 가운데 가정싸움으로 탈북하는 게 많다.”(HR 17-081127)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소득이란 게 없지 않은가. 여자가 다 벌어서 먹인다. 그런데 남자가 자존심이 있다. 그래도 집 문패는 자기 이름으로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생계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리면 남자가 아무래도 주먹으로 내리치게 된다.”(HR23-081224)

“여자들은 가정이 먹고 살아야 되겠고 하니까 힘들어도 열심히 생활하는데, 남자들은 할 일이 없다 보니까 보통 술을 먹게 된다. 술을 먹으면 부부싸움을 하거나 주정 형태로 부인이나 아이들을 때리는 경우가 많다. 탈북 여성 중에 남편이 때려서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HR02-081001)

“직장 내에서 남자가 여성을 때리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작업반장

이고 내 밑에 남자가 있다고 치자. 내가 일 관계로 정당하게 그에게 질책을 해도 그 남자가 자존심을 세우고 덤비는 경우가 생기고 심하게 언성이 오가게 되면 마지막에 남자가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HR25-081226)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강간 사건으로 보안성에서 조사를 받던 남자가 일관되게 ‘동료끼리 여흥을 즐겼다. 내가 왜 억지로 했겠는가’라고 주장하니까 단순 폭행으로 일단락됐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없는 여자는 이렇게 당하는구나’라고 말하면서 그 남자를 욕했다고 한다.”(HR06-081023)

“역전 주변에 가면 군인들이나 출장은 사람들에게 접근해 ‘꽃사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숙박 집을 안내하는 척 하면서 여자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북에서는 매춘하는 여성을 ‘꽃사시오’라고 부른다.”(HR25-081226)

“예전에는 속아서 중국에 팔려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본인이 팔려가도 좋으니까 나를 중국으로 데려다 달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내에서 인신매매하는 경우는 없다.”(HR02-081001)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 결혼을 했다고 해도 솔직히 부부가 살기도 힘든데 아이를 낳아서 남같이 기르지 못할 바에는 자식을 낳아서 뭘 하겠나라는 생각에 자식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다보니까 의도적으로 생긴 자식도 많이 없애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HR11-081112)

2) 아동권 실태

“90년대와 비교했을 때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굶지 않는다 해도 한참 먹고 자라야 할 시기에 강냉이밥을 먹고 별다른 것을 먹지 못하니까 키도 크지 않고 영양상태도 좋지 못하고 그렇다. 지금 북한에서 제일 불쌍한 건 아이들과 노인들이다.”(HR25-081226)

“90년대는 정말 모두 힘들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는 많이 개선됐다.

아동 영양 상태라는 게 부모 없는 애들은 힘들고 부모가 있더라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힘들고 그렇다.”(HR16-081126)

“저희 지역은 좀 잘 사는 동네에 속한다. 다른 지방에 가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인데 지역마다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다르다. 다시 말해 못사는 동네 아이들이 힘들어 보이고 그랬다.”(HR10-081031)

“학교에 내는 부담이 많고, 형편이 어려운 집안에서는 교과서나 학용품도 사줄 수도 없고 심지어 부모들이 돈을 버는 동안 집에서 동생들을 보살펴야 한다는 핑계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선생님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 교육에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한다.”(HR25-081226)

“교과서도 대물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교과서들이 알뜰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교좌서 질 자체도 나쁘니까 다음 사람이 그 교과서를 사용할 때 찢어진 것도 있고 그렇다. 그리고 학용품이 부족하다. 만약 내가 암만 공부를 잘 해도 내가 노동자 자녀고 돈이 없으면 대학에도 못 가는 형편이다.”(HR23-081224)

“출석률이 절반 정도라는 게 절반 정도가 고정적으로 안 나가는 것이 아니다. 고정적으로 안나가는 학생은 아마 20~30% 정도이고, 나머지는 오늘 이놈들이 나왔으면 내일은 저놈들이 안나오고 이렇게 되다나니까 학급에서 인원이 절반 가량 되는 것이다.”(HR03-081016)

“꽃채비들을 집단수용하니까 위생상태가 말이 아니고, 또 자유롭게 살던 아이들이 생활규율에 익숙하지 않고 또 배불리 먹지 못하고 노동을 해야 하니까 이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다.”(HR17-081127)

“방목하는 소를 우리에 가둬놓으면 갑갑증을 느끼지 않나. 꽃채비들도 몇 년 동안 방목하던 소처럼 조선 팔도를 다 돌아다니지 않았나. 그런 아이들을 수용소에 가둬둔다고 해서 적응하지 못한다.”(HR11-081112)

3) 장애인 권리

“내 동창생 자식 가운데 한 아이가 뇌성마비였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차별 없이 학교 다니고 그랬다. 아이들한테 놀림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하지만... 그래서 어른들이 불쌍하게 보고 그랬다.”(HR02-081001)

“예전에 난쟁이들을 집단수용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본 적은 없다. 그리고 맹인들의 경우에는 맹인들의 거주지역이 있고 공장도 있지만 그 이외의 일반 장애인들을 따로 집단수용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길거리에서 장애인들을 흔히 볼 수 없지만 가끔씩 볼 수 있었다.”(HR16-081126)

“평양시에서 장애인들을 다 모아서 지방으로 내보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렇지만 지방의 도시에는 그런 게 없다”(HR07-081024)

“평양시에서는 외국 사람들의 눈에 띄면 국가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다는 이유로 내보낸다고 한다. 미성년자는 가족까지 내보내고 성인인 장애인은 본인만 나간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 중심에만 없을 뿐이다. 말 그대로 평양시에 속하지만 평양 변두리에 해당하는 곳에는 아직까지도 장애인들이 있다”(HR11-081112)

“맹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니까 기본적으로 집단생활을 시키는 것 같다. 맹인학교에서부터 맹인공장까지 말이다. 그런데 병어리는... 학교는 있는데, 북에서는 병어리를 크게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HR11-081112)

“신체적으로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편의시설에 근무한다. 시계도 수리하고 도장도 새겨주고, 구두수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으니까.”(HR03-081016)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영예군인들의 경우에도 국가에서

보장하는 것이 없다보니까 시장에 장사하러 나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예군인증이나 내밀면서 보상해 달라, 양보해 달라 이런 식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짜증을 낸다.”(HR25-081226)

“시장에 군복 있고 목발 짚고 보란 듯이 훈장차고 나타나서 막무가내다. 술 먹고 행패부리고 싸움질이나 하고, 버스를 타도 자리 양보하지 않는다고 행패 부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게 인식하지 않는다.”(HR17-081127)

“돌발적으로 생긴 장애인들은 보면 동정이 안 간다. 장마당에 와서 노는 것도 그렇고. 너희 때문에 내가 병신됐다고 하면서 식당에 가서 돈 안내고 음식 먹고 안하무인이다. 도둑질도 하고, 버스를 타도 영예군인이기 때문에 버스 값도 절반만 내면 된다는 것도 있는데, 그 자체도 안내려고 한다.”(HR09-081030)